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014. 12.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2014. 12.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차 례 -

제1장 조류인플루엔자(AI)란 ?	1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15
1. 「관심」단계	19
2. 「주의」단계	23
3. 「경계」단계	26
4. 「심각」단계	30
5. 진정 및 종식단계	32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 협조업무	33
I.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35
II. 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36
1. 「관심」단계	36
2. 「주의」단계	38
3. 「경계」단계	40
4. 「심각」단계	42
제4장 평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45
1.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표준 행동요령	47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 행동요령	55
제5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63
1.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 요령	66
2.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요령	69
3.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76
4.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요령	83
5. 수의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	87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90
7. 발생확인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93
8.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105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112
10. 역학조사 요령	141
11.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	149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151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	160
14.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169
15. 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 근무요령	174
16.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176
17. 사료 공급요령	179
18.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처리요령	185
19. 알(종란·식용란)의 처리요령	192
20. 축사 외 장소의 방역조치 등	194
21. 축산농가 당부사항	198
22. 사후관리	200
23.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등	203
24.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205
25.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206
26.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	208
27. 단계별 언론 설명사항	210

부 록 247

I. 국가별 HPAI H5N1형 발생현황	249
II. AI 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251
III. 방역수칙	252
IV.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342
V.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351
VI. 방역기관 연락처	391

제1장

조류인플루엔자(AI) 란?

제 1 장 조류인플루엔자 (AI) 란 ?

I. 정 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HPAI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이다.

II. 병인체

1. 바이러스의 특성 및 항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는 Orthomyxoviridae 과(科, Family), A형 Influenza virus 속(屬, Genus)으로 분류되며, nega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다른 종류의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segm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혈구응집소(hemag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 6개의 내부유전자(internal gene)로 나뉘어진다.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부위에 특정한 병원성 관련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감염숙주 특이성과 관련이 가장 많은 유전자는 HA 및 NA 유전자이나 다른 내부 유전자들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3종(A, B, C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칠면조·야생오리·돼지·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 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총 144종($=16 \times 9$)의 아형이 존재하게 된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AI 바이러스의 아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조류에는 144종의 아형 모두가 감염될 수 있지만 조류의 종속에 따라 감수성과 질병 발현여부는 각기 다르다. 야생조류 중 특히 오리, 도요새 등의 물새류는 감수성이 높은 편이어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없이도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체외로 배출한다. 돼지에서는 H1 및 H3형이 주로 감염되며, 사람에게 감염되는 H 아형은 H1, H2, H3에 국한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H5, H7 및 H9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동일한 아형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에 따라 병원성 등 그 특성은 전혀 다를 수 있다.

2. 바이러스의 변이

서로 다른 두 아형의 AI 바이러스가 동일개체에 동시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복제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간의 유전자 재편성(genetic reassortment)으로 인하여 항원성의 대변이(antigenic shift)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외에 항원성 소변이(antigenic drift), 점변이(point mutation) 등에 의하여도 소규모의 변이가 일어나며, 항원성 소변이는 점변이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과거 3차례에 걸친 사람 독감의 대유행(pandemic)은 모두 대변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다른 2종의 AI 바이러스 간에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나면 이론적으로는 256종의 유전자 배열이 서로 다른 AI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3. 바이러스의 병원성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전파(interspecies transmission)가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또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어 왔을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멕시코에서 H5N2, 1999년 이탈리아에서 H7N1 그리고 2004년도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2에 의한 HPAI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감염으로 시작되어 이것이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순환감염 되면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이되어 고병원성을 나타낸 사례이다. 따라서 H5 또는 H7형의 AIV가 국내에서 분리될 경우에는 저병원성이라 할지라도 HPAI 바이러스에 준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야생조류에서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집오리나 거위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다.

IV. 잠복기간

닭에서의 HPAI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OIE에서는 최대잠복기를 21일로 정하고 있다.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진다.

V. AI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1. AI 바이러스에 대한 조류의 감수성

야생조류에는 이론적으로 144종의 A형 AI 바이러스가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AI 바이러스는 조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하여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순환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배출기간도 수일 이내로 짧고 배출량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리 등 감수성이 있는 일부 종류의 물새류는 개체별로 길면 한 달 정도 체외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야생조류에 대한 AI 바이러스 분리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 정도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오리 및 거위류에서는 15% 정도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이나 칠면조는 HPAI에 감염되면 70~80% 이상 폐사할 정도로 감수성이 높다. 메추리, 타조 등도 AI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오리, 거위, 메추리 등은 야외 AI 바이러스의 변이나 가금류에 대한 감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AI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가능성

AI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에서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97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직접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03년의 네덜란드, '04년 베트남과 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적으로 조류로부터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3년 분리주의 경우는 포유동물에 있어서 저병원성의 특성을 나타내었던 것과 달리 2006년 분리주는 포유동물에 있어서 고병원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 분리주의 경우 2006년 분리주에 비해 병원성이 페렛에서 다소강하고, 마우스에는 다소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실험 결과와 유전자 분석결과는 실제 인체감염시 숙주 특이적인 요소들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06/'07년 분리주가 속하는 'Qinghai-like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이집트에서 37명이 감염되어 이 중 15명이 사망한 예가 있으나 2008년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2.3.2 clade)속하는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인체에 감염이 된 사례가 없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HPAI 발생기간 중 HPAI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사망한 예는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조기에 근절되지 않고 토착화되거나 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간에 순환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새로운 변이형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조기박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경로

현재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97년도 홍콩 조류독감의 예에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경구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감염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닭이나 오리나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사람간의 전염 우려

국제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된 예는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태국의 어떤 사람이 인체독감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감염되었을 경우,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교환되어 재편성됨으로써 사람간에도 전염되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WHO에서는 발생국가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에 임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만약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전역에 이 질병이 만연된다면 그만큼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VI.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1. 임상증상

닭이나 칠면조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다. 야생조류나 야생오리류 등은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닭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수 있다.

처음 감염이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닭의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로 이어지는데, 이때 폐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뚜렷이 관찰되며 보통 폐사 시작부터 50%의 폐사율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육형태에 따라 다르나 약 4~5일이 소요된다.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될 수 있다. 심급성(peracute)으로 폐사할 경우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육용오리의 경우도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동시에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면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2008년 국내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어린 육용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5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2010년 및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닭에서 일령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폐사율, 종오리의 경우 폐사는 거의 없으나 급격한 산란율 저하, 육용오리는 주로 20~40일령에서 발생하여 높은 폐사율이 나타났다.

2. 부검소견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통상적으로 안검의 충·출혈, 기관내 발적소견, 점액 또는 카탈성 삼출물의 저류, 폐의 충·출혈, 심장의 점상출혈 및 선상의 백색 괴사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선위 점막의 경미한 출혈소견, 신장 종대 및 요산염 침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장의 심한 유약과 작은 괴사반점, 그리고 췌장의 흰색 괴사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HPAI와 달리 국내의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골격근의 반상출혈 소견이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 산란중인 닭에서는 심한 난포의 파열과 충·출혈이 항상 동반된다.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도 닭과 같이 난포의 파열, 위축, 충·출혈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며, 난포파열에 따른 난황의 복강내 저류로 복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육용오리에서는 간장의 종대와 유약, 폐의 충·출혈, 비장의 종대와 흰색 괴사반점, 췌장의 다발성 괴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VII. 진 단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으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항원검출 방법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후 동물체내에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있다.

항원검출을 위한 시료로 기관이나 총배설강의 면봉채취 시료, 분변 또는 폐사한 동물체의 조직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시료를 전처리하여 9~11일령의 발육란에 접종한 후 37℃에서 4~7일간 배양하면서 폐사 유무를 관찰하고 장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 여부를 검사한다.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 동정을 위해서는 혈구응집소(HA, hemagglutinin)에 대한 표준혈청 16종과 뉴라미니다제(NA, neuraminidase)에 대한 표준혈청 9종을 이용하여 각각 혈구응집억제반응과 뉴라미니다제 억제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분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한 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접종하여 정맥내 병원성지수가 1.2 이상 또는, 4-8주령의 닭에 접종하여 폐사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또한, H5 및 H7 바이러스 경우, 혈구응집소(HA)의 병원성관련 단백질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염기가 확인된 경우 고병원성으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기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검출 및 동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장 검사방법인 종란접종 후 혈구응집반응 검사 및 혈청형 동정, 병원성 규명 등 항원검출 방법과 병행하고 있다.

혈청학적 진단방법으로는 한천-겔 침강반응(AGP)과 혈구응집억제반응(HI)이 사용되고 있으며, ELISA를 이용한 진단방법이 있다. 한천-겔 침강반응을 통하여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공통 항체를 검출할 수 있으며, 각 혈구응집소(H1~H16)을 항원으로 하여 혈청형에 대한 특이적인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특정 혈청형에 대한 항체존재 유무를 검사한다.

VIII. 방역대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을 위한 전략으로는 조기신고에 의하여 발생농장의 감염 동물 살처분 등 신속한 오염원 제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리·보호·예찰 지역의 설정(zoning) 및 오염요인에 대한 강력한 이동통제, 오염 대상 물건 및 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실시와 함께 감염축을 신속히 검색하기 위한 능동예찰(active surveillance) 등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 정책 등을 핵심개념으로 들 수 있다.

초동방역이 실패하여 HP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만연되거나 방역체계가 허술하여 살처분 정책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또는 홍콩과 같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에서 HPAI가 전파되어 오는 것과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살처분 박멸정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가 위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이다.

※ 용 어 정 의

조류인플루엔자(AI) :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닭·오리 등 조류의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안면, 벼슬, 다리의 부종, 출혈반 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급작스러운 폐사율 증가와 함께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산란율 저하 등 증상이 다양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OIE 의무 보고 질병이다.

감수성동물 :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적용대상 동물 : 닭·칠면조·메추리·오리(생물의 분류체계에 따라 오리과에 해당되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돼지·개·고양이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다만, 현장방역관이 감수성동물 중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의 경우 적용대상동물에 포함시킬 수 있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동물질병 방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1924년 28개국의 참여로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를 창설한 이래 2003년 5월에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OIE라는 약자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1년 10월 현재 17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발생농장 : 조류인플루엔자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가축의 사육시설(축사)이 있는 농장

발생지 :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관리지역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7)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보호지역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7)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예찰지역 : 관리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 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7)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방역지역 :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말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신고 :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가축방역기관에 유선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사환측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AI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병성감정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이외의 가축질병으로 의심되어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예방적살처분 검사 :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어, 고병원성 AI의 추가확산 또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기관의 판단에 따라 농가의 가금류를 미리 살처분 할 때 고병원성 AI가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학관련 검사 :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또는 고병원성 AI 오염시설과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고병원성 AI 오염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예찰 검사 : 정부 가축방역관이 가축 방역프로그램(상시예찰검사)에 따라 가금류 등에 대해 고병원성 AI가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입경계상황 : 중국·대만·홍콩·일본·북한 등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지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

의심축 신고상황 : 축주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가축방역기관에 유선 등을 통하여 신고된 상황을 말한다.

의사환축 발생상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즉 의사환축이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 의사환축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확인상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동물의 확진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국가방역역량을 총집결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반드시 초기에 차단하도록 힘써야 한다.

발생확산상황 : 인근지역 및 전국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국가 및 전 국민이 합심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에 힘써야 한다.

의심축 :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의사환축 :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가축을 말한다.

환축 :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한다.

잠복기 : 특정병원체가 동물에 침입한 후 그 질병의 최초 임상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살처분 :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질병의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이는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살처분된 동물의 사체 혹은 생산물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체 등은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소독 : 전염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뜻하며, 소독은 동물, 배설물 또는 동물유래 생산물 등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병원체에 오염될 수 있는 동물, 사람, 시설, 운반차량 및 기타 대상물에 대해 실시한다.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제 2 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

발생상황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
주변국 발생 시 (평시)	관심	•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추진 • 일제 소독·예찰 등 국내방역 추진 • 유사시 대비, 비상방역태세 점검
①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4월)	주의	• 방역상황실 운영 • 전국 방역기관 비상 방역태세 점검 • 해외동향 정보 수집, 분석 • 축산농가 등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침입 방지 등)
② 의사환축 발생		• 방역상황실 운영 강화 •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 • 발생 대비 각종 방역조치 준비 • 발생농장 이동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국내 발생	경계	•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살처분 • 전국 Standstill 실시 검토 •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신속한 역학조사 • 정부합동지원반 파견 • 발생 및 인접 시·도에 통제·소독장소 설치 •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 강화 • 필요시 인접 재래시장 폐쇄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심각	• 전국 Standstill 실시 확대 검토(전국 가금류 판매 재래시장 폐쇄 포함) • 전국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 설치 •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 긴급 백신접종 등 검토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위기경보 하향	•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소독·예찰 등) • 종식 및 복구 추진

1. 「관심」단계 - 주변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평시)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농림축산식품부	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달 및 점검 ②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련부처·지자체 등에 상황 전파 ③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협조 요청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중요성과 국내 유입방지요령 홍보(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항공기·선박 등을 통한 축산물 불법 반입단속(관세청) - 해안을 통한 밀수 단속 및 감시(해양경찰청) - 공항내 및 기내방송, 남은 음식물 소독처리 등(건교부) - 발생국 현지 대사관에 여행객의 발생농장 방문자제 요청(외교통상부) ④ 전국 방역기관의 비상 방역태세 점검 ⑤ 중앙단위 가상 방역훈련 실시(매년) ⑥ 가축질병 기동방역기구 구성 ⑦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추진
농림축산 검역본부	① 국제기구(OIE, FAO)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동향 수집 전파 ②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여행객, 수입축산물 등 국경검역 강화 -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금지 안내 - 공항만 검역(불법 휴대육류 반입검사 등) 강화 - 유관기관(세관 및 해양경찰청 등) 협조로 밀반입 동물 및 축산물 강력 단속 - 여행객 신발 소독, 발생국 노선 집중 검색, 남아 있는 음식물 폐기관리 등 - 해외여행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등의 출국 시 신고접수, 검역 절차 안내 및 지도 - 입국 시 신고·소독 및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조치 - 외국인 근로자(연수생) 입국시, 소독·방역교육 ③ 축산농장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 점검 및 방역 지도 ④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소독시설 및 소독 실시여부 점검 -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을 실시, 위반자를 지자체에 통보 ⑤ 중앙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활동과 소독 등 방역지도 추진 ⑥ 중앙차원의 예찰업무 강화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⑦ AI 진단체계 강화 및 정밀검사체계 점검 ⑧ 유입 우려지역 사육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⑨ 전담방역관(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정기 교육 실시
시 · 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행 ②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세부실행계획 점검·보완 ③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금지 안내 - 축산인·축산관련 종사자 등 출국 시 검역본부 사전신고 홍보 안내 ④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실시 ⑤ 관내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1회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 축산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월1회이상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위반자 행정처분 ⑥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 ⑦ 축산농가, 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⑧ 시·군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AI SOP 정기 교육 : 연1회이상 - 가축방역관 임무 교육 및 숙지여부 점검 ⑨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신고 강화 ⑩ 지방단위 가상방역 훈련(매년, 도별 3개 시·군 이상) ⑪ 관련 기관·축산단체·농가 등 역할분담 체계 확립 ⑫ 유사시 대비, 시·군의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⑬ 지방경찰청 등에 협조체제 구축
시 · 도 방역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행 ②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및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③ 철새도래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 예찰업무 강화 ④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⑤ 도축검사시 의심증상 및 병변 검색 강화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⑥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 및 역학조사 실시 ⑦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실시 ⑧ 축산농가, 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예방수칙 교육·홍보 ⑨ 유사시에 대비한 인력·장비 확보계획 마련 등 비상 방역태세 확립
시·군	①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금지 안내 - 축산인·축산관련 종사자 등 출국 시 검역본부 사전신고 홍보 안내 ②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실시 ③ 관내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1회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 축산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월1회이상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위반자 행정처분 ④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체계 확립 : 농가 교육·홍보 강화 ⑤ 감수성 동물 축종별 사육현황 및 도로현황 파악 ⑥ 시·군별 관할지역내 매몰지 확보 ⑦ 소독약품 등 비상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⑧ 관내 동원가능 인력(수의사, 경찰, 행정지원 및 방역지원 인력) 확보 계획 수립 ⑨ 살처분 가축 운송차량, 장비확보 계획수립(계약체결 및 동원가능 운송회사 명단 확보) ⑩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 등 관리 ⑪ 축산농가, 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⑫ 시·군 가축방역관 임무 교육 및 숙지여부 확인 - 시·군(읍·면·동 포함)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AI 긴급행동지침 정기 교육 : 반기 1회이상 ⑬ 유사시 대비, 시·군의 살처분·이동통제, 긴급백신 등을 위한 인력· 장비 및 매몰지 확보
가축소유자,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단체 등	①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농립 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 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② 축산관련단체는 회원 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발생국가 여행 금지 권고,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홍보 및 교육 ③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④ 의심가축 검색 및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조치 ⑤ 축사·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실시 철저 -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 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소독 후 출입토록 농장 차단방역 철저 ⑥ 축산 관련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⑦ 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⑧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⑨ 회원농가·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인 및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홍보 ⑩ AI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2. 「주의」단계 - 의사환축 발생시, 철새 이동시기(10~4월)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확인시 현장 조치사항 	○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를 받은 시·군(읍·면·동 포함) 또는 시·도 가축 방역기관은 ① 신고를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의사환축 및 동거축 이동금지, 가축·외부인·차량 등의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사항 우선 통보 ② 시·도 가축 방역기관은 “의심축 신고 접수서”를 작성하여 시·도(시·군 포함) 및 검역본부에 상황 보고 ③ 상황 보고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신고 농장에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을 파견 [의심축 신고·보고체계 : 가축의 소유자 등→시·군(←읍·면·동)→시·도 가축방역기관→시·도(시·군) 및 검역본부→농식품부]
	○ 의심축 신고 농장에 도착한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① 해당 농장의 모든 가금류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 실시 - 가축방역관 1인은 의심축이 있는 축사, 다른 1인은 나머지 축사에 있는 가축을 관찰 * 농가의 일반 질병 또는 폐사축 신고 등 일상적인 예찰과정에서 의심축 발견시 가축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후 의사환축 발생과 동일한 방역조치 추진 ② 임상관찰 등 검사결과, 의사환축 발견시 발생 사실을 유선으로 소속 기관장 및 시·군에 유선 보고(시료채취받은 검역본부에 보고) - 해당농장에 대한 소독 및 가축·사람·차량·물품의 이동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는 정밀검사 판정시까지 유지 ③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 및 검역본부에 송부 [의사환축 신고·보고체계 : AI 전담 가축방역관(시·도 가축방역 기관 소속)→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시·도 및 검역본부→ 농식품부]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시·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시·군은 해당농장에 가축·사람·차량 등의 출입금지 및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각종 방역조치사항 준비 완료 ①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 ②환축 판정에 대비,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현장 통제초소 설치 ③방역대(보호, 예찰,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설정 준비 및 방역대별 농장현황 조사 ④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준비 - 모든 시·군은 주요 장소에 통제초소, 소독장소를 설치(전국) ⑤살처분·사체 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매몰지 등의 조달 준비 ⑥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전국) ⑦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시행에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전국)
시·도 방역기관 	◇ 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①시·도 및 검역본부에 “의심축” “의사환축” 발생 신고서 송부 ②의심축 신고시부터 검역본부에 보고 ③의사환축 발생시 현장 과견중인 가축방역관을 통해 기본적인 역학조사 실시 ④의사환축 발생농장 반경 500m내의 가금류 농장 임상관찰 실시 ⑤해당 농장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조치 ⑥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준비(전국 가축방역기관)
시·도 	◆ 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시·도는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상황 전파 및 각종 방역조치사항 준비 완료 ①발생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및 타 시·도에 전파(보고) * 의심축 신고단계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등에 상황 전파 ②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준비 ③살처분·사체 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매몰지 등의 조달 준비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 발생지역 소재 군부대,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④ 전국의 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준비 - 시·군별로 거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준비 ⑤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⑥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전국) ⑦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시행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⑧발생 시·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준비
농림축산 검역본부 	①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보고 ※ 방역대(발생지, 보호, 예찰, 야생조수류예찰지역)내 개괄적 농장 현황 포함 ②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기관장) 설치 준비 ③기동방역기구 파견대비 관계관 준비(초동대응팀 포함) ④ 시·도에서 역학조사 기술지원 요청시 역학조사반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①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②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시행에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전국) ③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 각종 조치사항 준비 ④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 ⑤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준비

3. 「경계」단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농림축산식품부	①“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가축방역협의회를 자문을 받아 결정 ②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 시행 : 48시간 이내(필요시 연장) - 전파대상 : 관계부처, 관련 기관,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 -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 관련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일시 이동금지 조치 ※ 다만,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하여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적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발생 시·도 등 모든 방역기관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전달 ④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가동 ⑤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⑥발생 시·도에 정부합동지원반 파견(행정자치부 협의후) ⑦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농림축산 검역본부	①“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사항 추진 ②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 전파 - Standstill기간내 역학관련농장의 방역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요청 ②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기관장) 가동 ③신속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배치 및 운영 ④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시 소속 관계관 파견
시·도	①농식품부의 지시 및 “경계”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관리 매뉴얼 등 참조 ②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 시행상황 전파 및 이행상황 점검 - 관내 모든 가금류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작업장 종사자 등에 대해 SMS 및 마을방송을 통해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전파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③모든 시·도(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④발생 시·군에 방역 지원을 위한 시·도 관계관 파견 ⑤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결과 통보시, 역학관련 농장·작업장·사람·차량 등에 대해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⑥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시·군간, 시·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⑦필요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의 가축시장 폐쇄 조치 ⑧필요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⑨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⑩시·도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⑪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⑫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소독 및 예찰 철저, 외부인(축산종사자 등)·차량·가축의 출입통제 등
시·도 가축방역기관	①시·도의 지시 및 “경계”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관리 매뉴얼 등 참조 ②모든 가축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기관장) 가동 ③발생 시·군에 방역 기술 지원을 위한 소속 관계관 파견 ④발생농장 조사와 역학 관련농장에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사항 추진 - 발생농장 조사와 역학조사반으로부터 통보받은 역학 관련농장(작업장 등 포함)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확인 - 추가 확인된 농장에 대해 농장 관할 시·도 및 검역본부에 역학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보고 ⑤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강화
시·군	①시·도의 지시 및 “경계”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관리 매뉴얼 등 참조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②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 시행상황 전파 및 이동제한 명령 공고 - 관내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종사자,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및 마을방송을 통해 이동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전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일시 이동제한 명령 공고 ③발생 시·군은 방역대 설정 및 살처분·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 추진 - 방역대 : 발생지, 보호지역, 예찰지역 - 살처분 : 발생농장 가금류 등 ④발생 시·군은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기차역, 버스 정류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발판 소독조 설치 운영 ⑤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설치 및 운영 - 거점별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를 별도 설치, 소독후 소독필증을 발급 - 통제초소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휴대여부를 확인 후 이동 허용 - 시·군간, 시·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⑥모든 시·군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및 축산 관련단체장 선거 연기 ⑦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⑧축산관련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홍보 및 점검 강화 ⑨지방경찰청 및 관할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⑩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관내 양축농가 홍보 강화 -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발생지 방문금지 등 ⑪시·군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⑫가축 매몰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추진
가축소유자, 축산종사자 축산단체 등	①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②농협·축종별 단체·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Standstill 발령 및 준수 사항을 전파 - 특히, 가축시장·도축·사료·동물약품·분뇨·기차재 등 모든 축산 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 ③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 - 특히,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철저 ④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최소화, 부득이 하게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 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⑤발생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⑥임상관찰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⑦가축전염병예방법령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4. 「심각」단계 - 여러지역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농림축산식품부	①“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관계부처·지자체·단체 등에 전파 - 관계부처, 지자체 등 모든 방역기관에 긴급방역조치사항 시달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행정자치부 등과 사전 협의(통보) ②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 언론 발표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보 ③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④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가동 ⑤국무회의 등에 발생, 방역상황 및 대책 보고 및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⑥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⑦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 ⑧피해농가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 ⑨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 또는 수매처리 방안 수립 ⑩대국민 홍보 강화 ⑪확산 우려시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
농림축산 검역본부	①“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사항 추진 ②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기관장) 가동 ③신속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배치 및 운영 ④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시 소속 관계관 파견 ⑤해외 여행객, 수입 축산물 등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시·도	①농식품부의 지시 및 “심각”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 관리 매뉴얼 등 참조 ②모든 시·도(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③발생 시·군에 방역 지원을 위한 시·도 관계관 파견 ④검역본부 및 시도방역기관의 역학조사결과 통보시, 역학관련 농장·작업장·사람·차량 등에 대해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⑤필요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 군부대와 협력, 방역인력 및 장비 등 확보 ⑥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⑦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기 관 명	긴 급 조 치 사 항
	⑧시·도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역할분담 확립 ⑨축산관련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홍보 및 점검 강화 ⑩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소독 및 예찰 철저, 외부인(축산종사자 등)·차량·가축의 출입통제 등
시·도 가축방역기관	①시·도의 지시 및 “심각”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관리 매뉴얼 등 참조 ②모든 가축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장 : 기관장) 가동 ③발생 시·군에 방역 기술 지원을 위한 소속 관계관 파견 ④검역본부과 협력,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농장에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사항 추진 - 발생농장 조사와 역학조사반으로부터 통보 받은 역학 관련농장(작업장 등 포함)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확인 - 해당 농장관할 시·도 및 검역본부에 역학조사결과 통보 ⑤관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강화
시·군	①시·도의 지시 및 “심각”단계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사항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가축위기관리 매뉴얼 등 참조 ②모든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③모든 시·군은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및 축산 관련단체장 선거 연기 ④축산농장, 작업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⑤축산관련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사항 홍보 및 점검 강화
가축소유자등 · 축산단체	①정부, 지자체, 관련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②농장주는 소독·예찰 강화, 외부인·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 방역 철저 - 특히, 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철저 ③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최소화, 부득이 하게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 전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④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축산관련단체장 선거 연기 등)

5. 진정 및 종식단계

5.1. 진정단계

- 5.1.1 일정기간동안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 감소,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 등 상황이 진정되면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경계”>“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 5.1.2 다만,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실(국가위기 관리센터) 및 행정자치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그 외 위기경보단계에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한다.
- 5.1.3 위기경보 조정 시 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다.

5.2. 종식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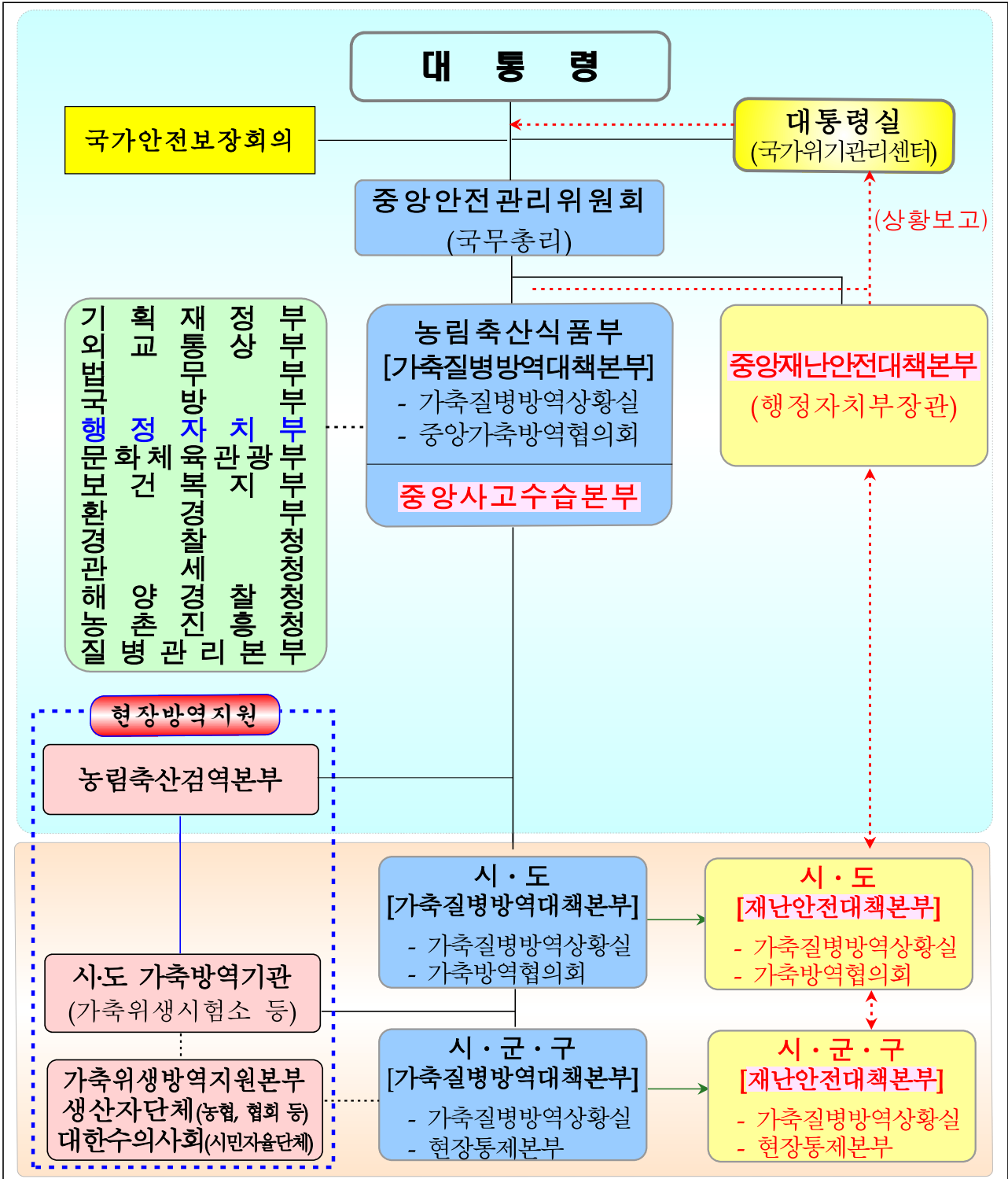
- 5.2.1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이 종식된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주의” 또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 협조업무

제 3 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 협조업무

I.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 범례 : _____ 지시/보고/협조(“관심·주의·경계” 단계), <-----> 지시/보고/협조(“심각” 단계),
..... 유관기관(중앙부처, 협회·단체)간 협조

II. 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1 「관심」단계

1.1. 상 황

○ 주변국 발생(평 시)

1.2. 유관부처별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관심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해외 여행객,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실시 ■ 전국 방역기관의 비상 방역태세 점검 ■ 중앙단위 가상 방역훈련 실시(매년) ■ 가축질병 기동방역기구 구성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추진
		□ 국제기구(OIE, FAO 등) 및 해외공관 등을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수집 전파 □ 해외여행객,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 여행 금지 홍보 - 여행객 신발소독, 발생국 노선 집중검색, 음식물쓰레기 폐기 등 - 해외여행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공·항만 소독 및 방역지도 - 외국인 근로자(연수생) 입국시 소독 및 방역교육 실시 □ 중앙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활동과 소독 등 방역지도 추진 □ 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대통령실	○ 위기정보·상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안전 행정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전파 ○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 발생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검토
	법무부	○ 가축질병 발생국 방문농가에 대한 검역본부 신고 협조
	국방부 경찰청	○ 긴급 방역조치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 등 준비
	환경부	○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계획 지침 통보(지자체 등)
	관세청 해양경찰청	○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협조

2 「주의」단계

2.1. 상 황

○ 의사환축 발생

2.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Standstill 시행에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 전국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 등의 일시 이동제한(48시간 이내 : 필요시 연장) 조치 준비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 ○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준비 ○ 방역대(발생지, 보호, 예찰)내 개괄적 농장 현황 파악 ○ 발생 시·도 등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시달 ○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 축산정책관) 가동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구 분		내 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 관리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발생과 동시에 투입)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법무부	○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지원 협조
	국방부	○ 현장 방역인력·장비 지원 ○ 발생지역 보호지역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자제 협조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시달(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 ○ 관계부처 협조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 협조 강화(이장단 마을방송을 통해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등)
	환경부	○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추진 ○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경찰청	○ 현장 방역인력 지원 협조 - 관리·보호·예찰지역 이동통제초소 인력지원
	관세청 해양경찰청	○ 공항·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

3 「경계」단계

3.1. 상 황

○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시

3.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경계”단계 위기경보는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받아 결정 ○ 전국 Standstill(일시이동제한) 시행 : 48시간(필요시 연장) * Standstill 기간내 방역대 설정, 통제초소, 소독장소 설치 및 역학 관련농장·작업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 완료 ○ 발생 시·도 등 모든 방역기관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시달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가동 ○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발생 시·도에 정부합동지원반 파견(행정자치부 협의후)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 배치 및 운영 ○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시 소속 관계관 파견 ○ 발생사실 언론 발표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통보 ○ 피해농가 및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 ○ 대국민 홍보 강화

구 분		내 용
	대통령실	○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 관리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강화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강화
	법무부	○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지원 강화
	국방부	○ 현장 방역 인력·장비 추가 지원 - 발생과 동시에 이동통제 인력 등 투입 협조(필요시 가축 매몰 지원) ○ 발생지역 예찰지역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자제 협조
	행정자치부	○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침(안) 마련(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환경부	○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추진 ○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경찰청	○ 현장 방역인력 지원 증원 - 이동통제초소 등 인력지원 ○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
	관세청 해양경찰청	○ 공항·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

4. 「심각」단계

4.1. 상 황

- 조류인플루엔자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4.2 조치사항 및 절차

구 분		내 용
기관별 임무/역할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축산 검역본부)	○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 “심각”단계 위기경보는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계부처(안전 행정부 등)사전 협의(통보) ○ 국무회의 등에 발생, 방역상황 및 대책 보고 및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 ○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 발생 시·군에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 파견 ○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가동(행정자치부)
	대통령실	○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 관리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 위기관리 대응정책 총괄·조정 강화 및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조정 강화 - 주관기관의 “심각”단계 발령 후,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건의하는 경우에 검토 후 설치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강화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강화

구 분		내 용
	문화체육 관광부	o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협조(TV 자막 광고 등)
	법무부	o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추적 관리 강화
	국방부	o 현장 방역 인력·장비 지원 - 발생과 동시에 이동통제 인력 등 투입 협조(필요시 가축 매몰 지원) o 발생지역 관리지역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자제
	행정자치부	o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확대
	환경부	o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추진 o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경찰청	o 현장 방역인력 지원 확대 -이동통제초소 인력지원 o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
	관세청 해양경찰청	o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

제 4 장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제 4 장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표준행동요령

1. 방역기관 및 가금사육 농가는 AI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조기발견·신고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을 위한 각 방역기관별 방역기구 구성 및 운영요령 숙달
- 나. 가금사육농가(소유자 등)는 AI의 중요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차단방역 등을 적극 실천하여야 함

2. 유관기관별 공조체계 구축

-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발생시 전과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
-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3.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가. 농식품부장관의 조치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달, 교육·홍보·훈련 및 확인·점검

- 가) (야생조류 위치추적) 위치추적기 추가 부착 및 해외 체류하는 개체의 위치추적으로 AI 발생지역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파악
- 나) (야생조류 상시예찰 검사) 계절적으로 여름철새가 번식을 하는 기간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및 폐사체 검사 중심의 예찰검사 실시
- 다) (가금 상시예찰 검사) 가금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AI 예찰검사 실시
- 라) (유사시 대응체계 마련) 상황실은 운영하지 않으나 AI 방역담당자들의 비상연락망을 1개월 단위로 현행화 하여 유사시 비상대응체계 마련
- 마) (방역점검) 중앙기동점검반(8개반 16명)의 전국단위 농가 일제점검 및 상시 점검 실시
- * 전국 방역기관의 비상 방역태세 점검 및 지도

바) (축산시설 일제소독 실시) 농가, 전통시장, 부화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매달 1회)

사) (방역관계자 관련 규정 교육) 방역관련 규정 개정사항 및 신규 AI 담당자에 대한 SOP 교육

아) 중앙단위 가상방역훈련 실시(도상, 현장 각 1회 이상/년)

* 현장 가상방역훈련(CPX) 계획수립 : 현장 가상방역훈련(CPX)의 대상지역, 일정 및 훈련 시나리오 마련 등

자) (농가 교육·홍보)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가금협회 등 주관의 교육 계획 작성 및 실시 후 결과보고토록 조치

(1)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추진

* AI 방역대책 및 관련규정, AI 특성 및 대책, AI 방역 및 성공 사례 등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우수 가금 축주를 강사로 적극 활용

차) 방역관련 정보 관리

* KAHIS 시스템 정비 및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과 함께 최종 현행화된 자료 활용 가능토록 준비)

카) 해외 AI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2) 방역대책 상황 평가 및 대책 마련

가) 농식품부, 환경부간 철새 예찰협의체 구성·운영

* 야생조류 대응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

* 야생조류 예찰검사 위한 포획물량, 시기,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및 위치추적 데이터 분석 및 향후 부착계획, 국내 이동시 경보발령 기준(대상, 지역 등)

나) 농식품부·지자체 AI 방역대책 실시 결과 평가

* 가금 및 가금관련 축산시설 방역실태 및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

다) AI 특별방역 T/F팀 운영 결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나. 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1) 국제기구(OIE, FAO)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동향 수집 전파

2)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여행객, 수입축산물 등 국경검역 강화

- 가)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 나) 공항만 검역(불법 휴대육류 반입검사 등) 강화
- 다) 유관기관(세관 및 해양경찰청 등) 협조로 밀반입 동물 및 축산물 강력 단속
- 라) 여행객 신발 소독, 발생국 노선 집중 검색, 남아 있는 음식물 폐기관리 등
- 마) 해외여행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등의 출국 시 신고접수, 검역절차 안내 및 지도
- 바) 입국 시 신고·소독 및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조치
- 사) 외국인 근로자(연수생) 입국시, 소독·방역교육
- 3) 축산농장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 점검 및 방역 지도
- 4)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소독시설 및 소독 실시여부 점검
 - 가)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을 실시, 위반자를 지자체에 통보
- 5) 중앙예찰협의회 운영 등 예찰활동과 소독 등 방역지도 추진
- 6) 중앙차원의 예찰업무 강화
- 7) AI 진단체계 강화 및 정밀검사체계 점검
- 8) 유입 우려지역 사육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 9) 전담 가축방역관(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정기 교육 실시.
- 10) 농가 교육·홍보 총괄
- 1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유지 관리
- 12) 위기대응 관련 비상연락망 구축·정비(매월)
 - 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담당자와 연락망 구축
- 13) 발생대비 검역본부 위기대응체계 정비 등
 - 가) 기동방역기구 인력 편성·유지, 위기대응 상황실 운영 대비태세 점검

다.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 1) 농식품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행
- 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세부실행계획 점검·보완
- 3)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 가) 축산인·축산관련 종사자 등 출입국 시 검역본부 사전신고 안내
- 4)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실시
- 5) 관내 계열사,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 가) 계열사 : 방역프로그램 이해여부 등
 - 나)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1회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 다) 축산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 월1회이상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위반자 행정처분

- 6)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
- 7) 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 8) 시·군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AI SOP 정기 교육 : 연1회이상
 - 가) 가축방역관 등 관계관 임무 교육 및 숙지여부 점검
- 9)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신고 강화
- 10) 지방단위 가상방역 훈련 실시(매년, 도별 3개 시·군 이상)
- 11) 관련 기관·축산단체·농가 등 역할분담 체계 확립
- 12) 유사시 대비, 시·군의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비상체계 점검
- 13) 지방경찰청, 군부대,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

라. 시·도 방역기관장의 조치사항

- 1) 농식품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시행
- 2)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및 운영
 - 가) 검역본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에 참석토록 조치
- 3) 철새도래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 예찰업무 강화
- 4) 지역예찰협의회 개최(분기 1회이상)
- 5) 도축검사시 의심증상 및 병변 검색 강화
- 6)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 및 역학조사 실시
- 7)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실시
- 8) 축산농가, 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예방수칙 교육·홍보
- 9) 유사시에 대비한 인력·장비 확보계획 마련 등 비상 방역태세 확립
- 10) AI 정밀검사반 운영 및 담당자 사전 교육

마.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1) 농식품부 및 시도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행
- 2)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금지 안내
 - 가) 축산인·축산관련 종사자 등 출국 시 검역본부 사전신고 홍보 안내
- 3)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실시
- 4) 관내 계열사,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가) 계열사 : 방역프로그램 이행여부 등

나)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1회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월1회 이상 정기 점검(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위반자 행정처분

5) 의심축 발견시 신속 신고체계 확립 : 농가 교육·홍보 강화

6) 감수성 동물 축종별 사육현황 및 도로현황 파악

7) 시·군별 관할지역내 매몰지 확보

8) 소독약품 등 비상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9) 관내 동원가능 인력(수의사, 경찰, 행정지원 및 방역지원 인력) 확보계획 수립

10) 살처분 가축 운송차량, 장비확보 계획수립(계약체결 및 동원가능 운송회사 명단 확보)

11)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및 지도 등 관리

12) 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13) 시·군 관계관 임무 교육 및 숙지여부 확인

가) 시·군(읍·면·동 포함)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AI 긴급행동지침 정기 교육 : 반기 1회 이상

14) 유사시 대비, 시·군의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및 매몰지 확보

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가금사육농가 임상증상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전화예찰 실시

2) 전화예찰 및 농가방역실태 점검 시 축산농가 방역준수사항 등 홍보

3) AI 상시예찰 검사용 시료채취 및 임상예찰 실시

가) 야생조류 분변채취 및 포획, 전통시장 가금류 등 시료채취

4)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및 현장방역 조치 사전 대비

5) 시·군 행정통계 등 농가현황을 확보하여 농장정보 현행화 추진

6) 가축방역사 양성·보수교육 추진

7) 초동방역팀 긴급출동 태세 유지

8)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AI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사. 농협

1) 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가축의 소유자, 축산작업장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교육 실시

2) 가금농가 예찰, 소독시설 및 장비 설치여부 지도 및 지원

3)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활동 실시

- 가) 농식품부 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소독대상 가금농가 주기적 소독지원
- 나) 소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역용품(예, 방역복, 장갑 등)은 1회 사용 후 교체하고 이동하며, 사용한 방역용품은 해당농가에서 소각하도록 지도
- 다) 공동방제단 사업은 매년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소독활동을 실시

4) 전국 9개 권역에 “초동대응용 방역용품 비축기지” 운영

- 가) 적정 수량의 방역복, 소독약, 생석회를 전국 9개 권역에 보관
- 나) 소독약품은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을 조사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유통기한이 도래한 소독약품은 지역축협에 지원하여 사용
- 다) 생석회 재고를 분기 1회 이상 파악하고 보관이 적절한지 지역본부에서 점검하여 축산건설청부로 보고

5) 의심축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 내용을 지역본부 경유하여 계통보고

6) 차단방역에 대한 계통조직 지도

- 가) 축사내부의 벽, 바닥, 울타리, 토지 등과 축사외부, 분뇨, 분뇨구, 오수구 및 습윤한 토지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
- 나) 축사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하도록 지도
- 다) 축사내부에 대한 주기적인 분무소독 지도
- 라)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시 준수사항 지도(AI 발생국을 여행 할 시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철저히 따르고 귀국 후에는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아. 생산자 협회

- 1) 회원 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AI 발생국가 여행 금지 권고,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홍보 및 교육
 -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 2)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수칙 교육·홍보 및 소속 농가에 방역상태 모니터링 점검 및 지도
 - *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교육 및 홍보
- 3) 국가 및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 4) 농가 등의 주기적인 소독실시 홍보
- 5) 사육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토록 교육·홍보
- 6)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확인
- 7) 홈페이지, 소식지, SMS를 통한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토록 홍보
- 8) 한국토종닭협회는 회원농가 뿐 아니라 전통시장 등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수칙 교육·홍보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소독 실시

자. 계열화 사업자

- 1) 소속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AI 발생국가 여행 금지 권고,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홍보 및 교육
 -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 2) 소속농가에 대해 정기적(연 2회 이상 등)으로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 실시
 - 가) 방역전담수의사 등을 통해 상시예찰, 모니터링, 질병관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계약농장 방역실태 점검
- 3)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 4) 소속농가 등의 주기적인 소독실시 홍보
- 5) 계열화사업자 소속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 6)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확인
- 7) 축산 관련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교육 및 홍보
- 8) 방역추진상황(방역실태 점검 결과 등) 및 계약농장 사육현황*등을 해당 시·군에 정기 보고(분기 1회 이상)
 - * 농가·부화장별 입식계획 및 실적, 계약농장별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등
- 9)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체제 구축
 - 가) 살처분 매몰을 위한 인력조달 및 매몰지 선정계획 수립후 시군에 보고

차. 가금 농가

- 1) 축산농가는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2)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3) 의심가축 검색 및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가) 시·군·구 및 읍·면·동(☎ 1588-4060)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입구는 항상 단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5)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외부신발과 내부신발이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6)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7) 축사·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실시 철저

가)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8) 축산 관련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9)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10) 사료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11)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내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
철저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12) 외출 후 신발·의복 환복, 세수 후 작업복으로 환복 등 기본수칙 준수

1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교육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표준행동요령

1. 방역기관 및 가금사육 농가는 AI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 가. 방역기관 및 가금사육 농가는 평시 차단방역을 포함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조기발견·신고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을 위한 각 방역기관별 방역태세를 유지하여야 함
- 다. 가금사육농가(소유자 등)는 AI의 중요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차단방역 등을 적극 실천하여야 함

2.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운영 강화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와 공조를 통해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방역관련 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나. 시·도지사는 철새 관련 정보를 농가에 상시 제공하여 철새 이동경로 주변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야 함

3. 기관 및 단체별 조치사항

가. 농식품부장관의 조치사항

- 1) 특별방역대책기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시달 및 교육·홍보·훈련 및 점검

특별방역대책시기의 방역대책 방향

겨울철새의 국내 이동으로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전국단위, 지역단위 및 농가단위의 차단방역망을 견고히 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2) (AI 관련 타부처에 정보제공) 위기단계 격상(관심→주의)에 따른 대응태세 통보
- 3) (야생조류 위치추적) 기존 부착개체 중 국외 AI 발생지역을 체류(또는 경유)한 개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및 국내 유입개체에 대하여 위치추적기를 추가 부착하고 위치이동정보를 지자체 및 관련협회 제공
- 4) (야생조류 상시예찰 검사) 계절적으로 여름철새가 남쪽으로 회귀하고, 겨울철새가 국내로 유입하여 월동을 하는 시기로, 야생조류의 포획검사를 강화하고, 분변 및 폐사체 검사 확대
- 5) (가금 상시예찰 검사) 가금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및 AI 예찰검사 물량확대

- 6) (유사시 대응체계 마련) 방역관련 기관에 AI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AI 방역담당자 비상연락망 1개월 단위로 현행화
- 7) (방역점검) 중앙기동점검반 확대 편성(24개반 48명) 및 전국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 대상 점검강화
 - 가) 지자체 방역대책 수립 및 실시상황 점검 추가
- 8) 축산시설 일제소독 실시 : 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매주 1회)
- 9) AI 현장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CPX 훈련 예시

- 의심축 신고시 행동요령,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행, 방역대·살처분 범위 설정, 살처분 방법, 매몰지 확보 및 인력 확보 등 현장대응 위주 실시
- 발생에 대비한 방역장비·시설·인력 등 사전 준비사항 및 계획 등 점검
 - 시·군별로 방역장비(방역복 등 개인방역, 살처분·매몰, 이동통제 초소 등) 창고 마련 또는 발생 즉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 확인
- 기타 기동방역기구 편성 인원 참여 및 임무 숙지여부 확인 등

- 10) 농가 교육·홍보 : 검역본부, 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가금협회 등 주관의 교육(가급적 집합교육은 10월까지 종료토록 하고, 이후에는 전화, SMS, 홍보물 등 간접 매체를 활용)계획 작성 및 실시 후 결과보고토록 조치

나. 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 1)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종합상황반 등 5개반 편성
- 2)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3) 농식품부 주관 가상방역훈련(CPX) 참여
 - 가) 도상 및 현장훈련 시 KAHIS 활용, 상황 메시지 전파 및 대응현황 분석
- 4) 유사시 기동방역기구 인력 등 위기대응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 강화
- 5) 농가 교육·홍보 총괄

다.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매년 10월~익년 5월)
 - 가)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기발견·신고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태세 유지
 - 나) 시군 및 협회 시달회의 개최(시·도 가축방역협의회,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 2) 긴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점검 강화
 - 가) 초동대응팀(도), 현장 기동조치팀(시군), 거점소독소 선정
 - 나) 방역인력, 물자확보 등 실태파악
- 3)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에 위기상황 전파 및 홍보
- 4) 시·도가축방역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의 AI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 발견시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
- 5) 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 6) 경찰청, 군부대 등과 사전 협조체계 유지
- 7)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를 집중관리하고, 특히 과거발생지역 및 전통시장 등 위험도가 높은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주 2회) 및 예찰 강화
- 8) 관내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강화
 - 가)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2회 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 나) 축산관련 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소독점검 강화(정기 점검 월1회 → 월2회,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 위반자 행정처분
- 9) 기관별 신고전화 1588-4060 정상작동 유무 점검
- 10)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 방역관리(월 1회 이상)
- 11) 축산농가, 작업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 (월 1회 이상)
 - 가)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신발소독조, 출입통제 안내판,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등
- 12) 계열업체별 가금류 입추경로, 종란 이동경로, 도축장 이동 등 상황 파악

라. 시·도 방역기관장의 조치사항

-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매년 10월 ~ 익년 5월)
 - 가)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기발견·신고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태세 유지

- 2)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검사 강화
 - 가)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계획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강화
 - 나) 필요시 방역취약농가(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과거 발생지역 등) 및 종오리농장, 육용오리농장(필요시 산란계농장)에 대한 일제검사 계획수립 및 검사 실시
- 3) 본지소별 전담가축방역관(현지조사반) 상시대기 및 의심축 신고처리
- 4) 취약지역 소독지원 및 AI 홍보 강화
- 5) 도축검사시 임상증상 및 병변 검색 강화
- 6)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교육 지원
- 7) 지역예찰협의회 개최(분기 1회)

마.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매년 10월~익년 5월)
 - 가)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조기발견·신고체계 유지 및 초동대응을 위한 방역태세 유지
- 2) 시·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광판에 홍보 및 현수막 게시
- 3) 시군별 기동방역기구 편성 강화 및 거점소독 장소 운영준비(3개소 이상)
- 4) 방역동원 인력 및 방역 물자 등 파악 및 수배
- 5) 전통시장 판매 닭에 대한 관리 및 정기 소독 지도
- 6) 축산인 대규모 집합 행사시 가금이동 차단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7) 잔반급여, 방생농가, 특수가축 등 방역취약 농가 사전 파악
- 8) 철새도래지 주변 및 과거 발생지를 집중관리하고, 특히 과거발생지역 및 전통시장 등 위험도가 높은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주 1회 → 주 2회) 및 예찰 강화
- 9) 관내 축산농장, 관련 작업장의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점검 강화
 - 가) 축산농장 : 소독시설 및 소독(주2회 이상) 여부, 외부인·차량 통제 등
 - 나) 축산관련 작업장 : 소독시설 및 외부인·차량 등 소독 및 통제 등
- 10) 신고전화 1588-4060 정상작동 유무 점검
- 11) 관내 축산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실시
 - 가) 의사환축 발견시 신속 신고체계 확립 : 농가 교육·홍보 강화
- 12)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월 1회 이상)
- 13) 농가, 전통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홍보(월 1회 이상)

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가) 상황반 편성 및 긴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비상 방역태세 확립

2) 시·군으로부터 의심축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투입요청 시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방역 임무 수행

3) 전화예찰 및 농가방역실태 점검 시 축산농가 방역준수사항 등 홍보

4) 가금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가)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주 1회이상 전화예찰 추진

나) 해외여행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입국일 기준 7일, 14일째 주기적 전화예찰 실시

5) 질병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순회교육

가)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하였거나 가축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나) 축산단체·기관의 가축질병·방역정책 교육지원

6) 가금농가에 AI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등 AI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7) 초동방역팀 긴급상황대비 교육 및 가상훈련(CPX) 추진

가) 분기별 1회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 및 반기 1회이상 현장 실습훈련 추진

나) 초동방역 운영 장비 점검 및 기자재 비축

8) 철새도래지 등 우려지역에 대한 시료채취·임상예찰 강화

사. 농협

1) 초동대응용 방역장비 점검 및 방역용품 비축

가) 전국 9개권역에 생식회, 소독약, 방역복 등 비축

나) 방역용품 비축기지는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축산컨설팅부에 사용현황을 보고

다) 축산컨설팅부는 지역본부 요청에 따라 적정량의 방역용품을 재비축

2) 기동방역팀 동원 장비의 주기적 파악을 통한 현황자료 작성 비치

3) 임직원 및 축산농가 비상연락망 재정비(매월 현행화)

4) 농협 계통조직 회의, 교육, 행동요령 전파

가) 방역결의시 어깨띠 착용 및 결의문 낭독으로 차단방역에 대한 의지 표명

5) 소독활동 시연을 통한 차단방역 홍보

가) 철새도래지 인근 또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나) 공동방제단 소독차량과 지역축협 보유 송풍식 소독차량으로 소독활동 시연

다) 언론 및 방송 홍보자료 제공을 통한 축산농가 차단방역의식 고취

6) 방역 SOP에 대한 계통조직 지도 및 관련 홍보물 작성·배포

7) 농협 전 계통조직에 AI 차단방역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 설치

가) 본부, 지역본부, 농·축협, 축산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 통일된 문구의 현수막 게시

나) 설, 추석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도록 지도하고 차단방역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홍보

아. 생산자 협회

1)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2) 농가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방역실태 점검 및 상시 전화예찰활동 실시

3) 축산농가 모임 등 자체 홍보 등

4) 협회 홈페이지 AI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

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자체 비상연락망 재정비

6) 철새 도래지 등 보호지역 소재 농가 전화예찰 강화

7) 의심가축 발견 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조치

8) 해외 AI 발생 현황, 방역조치사항 등 홈페이지 및 회원농가에 홍보

* 기관 홈페이지 게재, 소식지 발간 및 SMS 발송 등 AI 발생국가 안내 및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9) 계열화사업자 및 소속 사육농가·축산관련 종사자 등 출국 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사전신고 홍보 안내

10) AI 수급동향 점검(가격, 소비)

11) 양계협회

가) 양계농가대상 교육 실시 -전국 질병세미나 및 순회 교육

나) 종계DB에 따른 종계이동상황 상시 모니터링

다) 협회내 질병방역위생대책위원회 개최

12) 토종닭협회

가) 전통시장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

자. 계열화 사업자

- 1) 농식품부, 지자체, 관련 단체의 긴급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 2) 소속농가 대상 교육·홍보 강화
- 3) 소속농가 등 비상연락망 재정비
- 4) 철새 도래지 등 보호지역 소속 농가 전화예찰 강화
- 5) 소속농가 모임 등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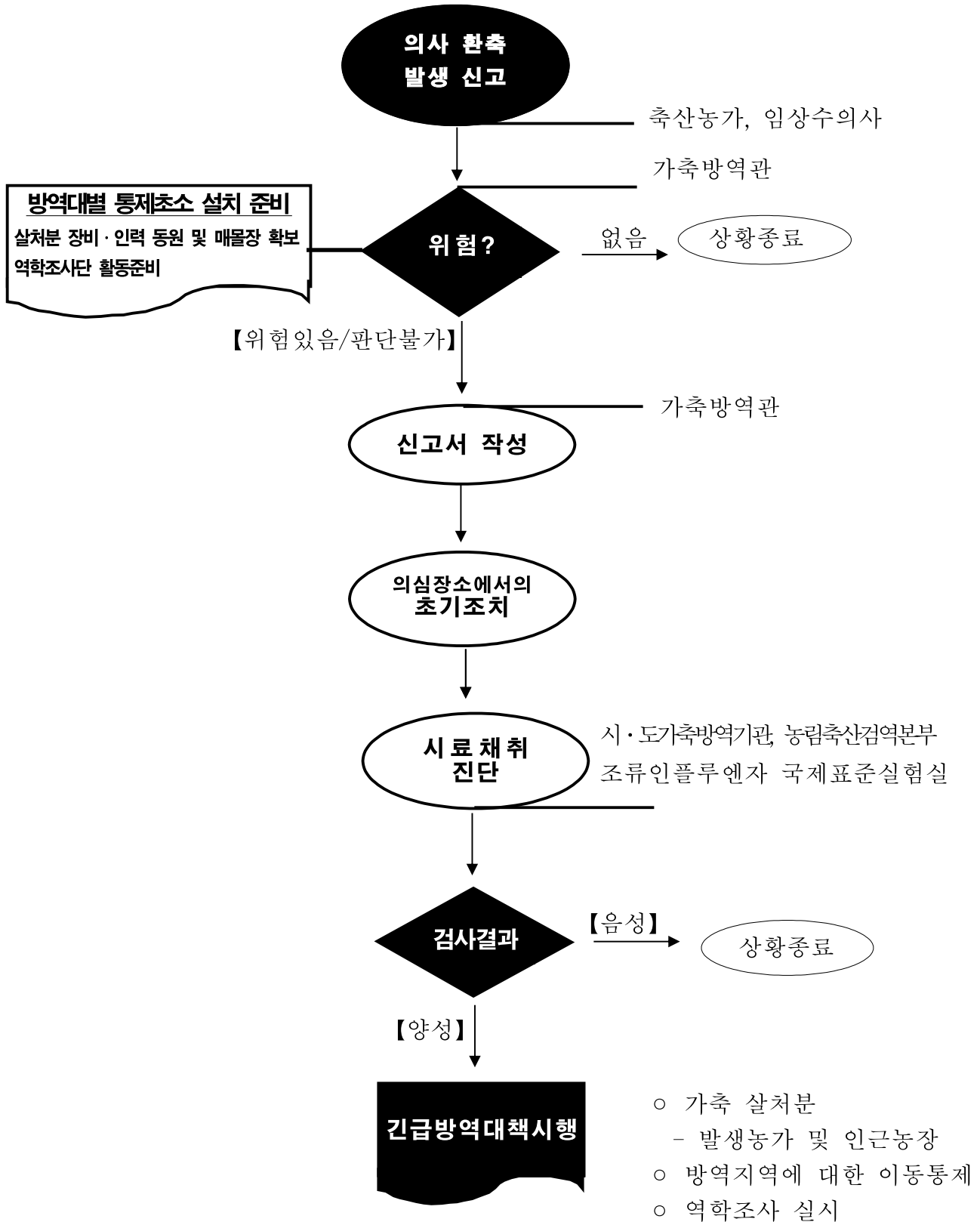
차. 가금 농가

- 1) 가금 농가간 모임 또는 방문 자제
- 2) 차량, 사람 등 농장출입 최소화 및 소독 여부 확인
- 3) 철새 도래지, 농경지 방문 금지
- 4) 야생조수 출입 방지 그물망 설치
- 5) 축사주변, 사료 보관 장소, 매일 청소·소독(생석회 살포)

제5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제 5 장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1.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 요령

1.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정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 및 시간 등에 대하여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적용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령 시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Standstill을 발령한다.

3.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기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발령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유지하되 필요시 발생 지역 등에 대해 연장 조치 할 수 있다.

4.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적용 대상

- 전국의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Standstill 적용 세부 대상(예시)]

구분	Standstill 적용 세부대상(예)
축산농장	닭, 오리 등 가금류 농가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 등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방역요원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상기 적용 세부대상(예시) 외에 모든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

5.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전파

5.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확인되는 즉시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5.2 검역본부장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한다.

5.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다.

* SMS 예시 : ○○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 이동금지 발령

-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는 사전에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확보하여 정리한다.

5.4 농협·축종별 단체·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Standstill 발령 및 준수사항을 전파

- 특히, 도계·사료·동물약품·분뇨·기차재 등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한다.

※ 기관별 Standstill 전파대상

기관명	Standstill 전파대상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
검역본부	KAHIS에 등록된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시·도지사 (시·도 방역기관) 및 시장·군수	관내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SMS 및 마을방송 등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는 사전에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확보
농협·단체·협회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사항 전파 - 농협중앙회(회원조합),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특수가축협회 등

6.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이행상황 점검

- 지자체에서는 주요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 가금류·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출입 금지여부를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7.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 기간동안 방역조치사항

- 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 등 긴급방역조치를 해당 시·군 등에 KAHIS를 통해 요구한다.
-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역학관련농장을 통보 받은 시·군에서는 해당농장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KAHIS를 통해 보고한다.
- 시도지사는 긴급방역조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KAHIS를 통해 보고한다.

8. 전국 Standstill(일시 이동제한) 명령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농장의 역학조사에 따른 역학관련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료되면 일시 이동제한 명령을 해제한다.
- 필요시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제는 발령절차와 동일하게 전파한다.

2.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요령

1.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1.1 구성 : 중앙 초동대응팀과 현장 기동조치팀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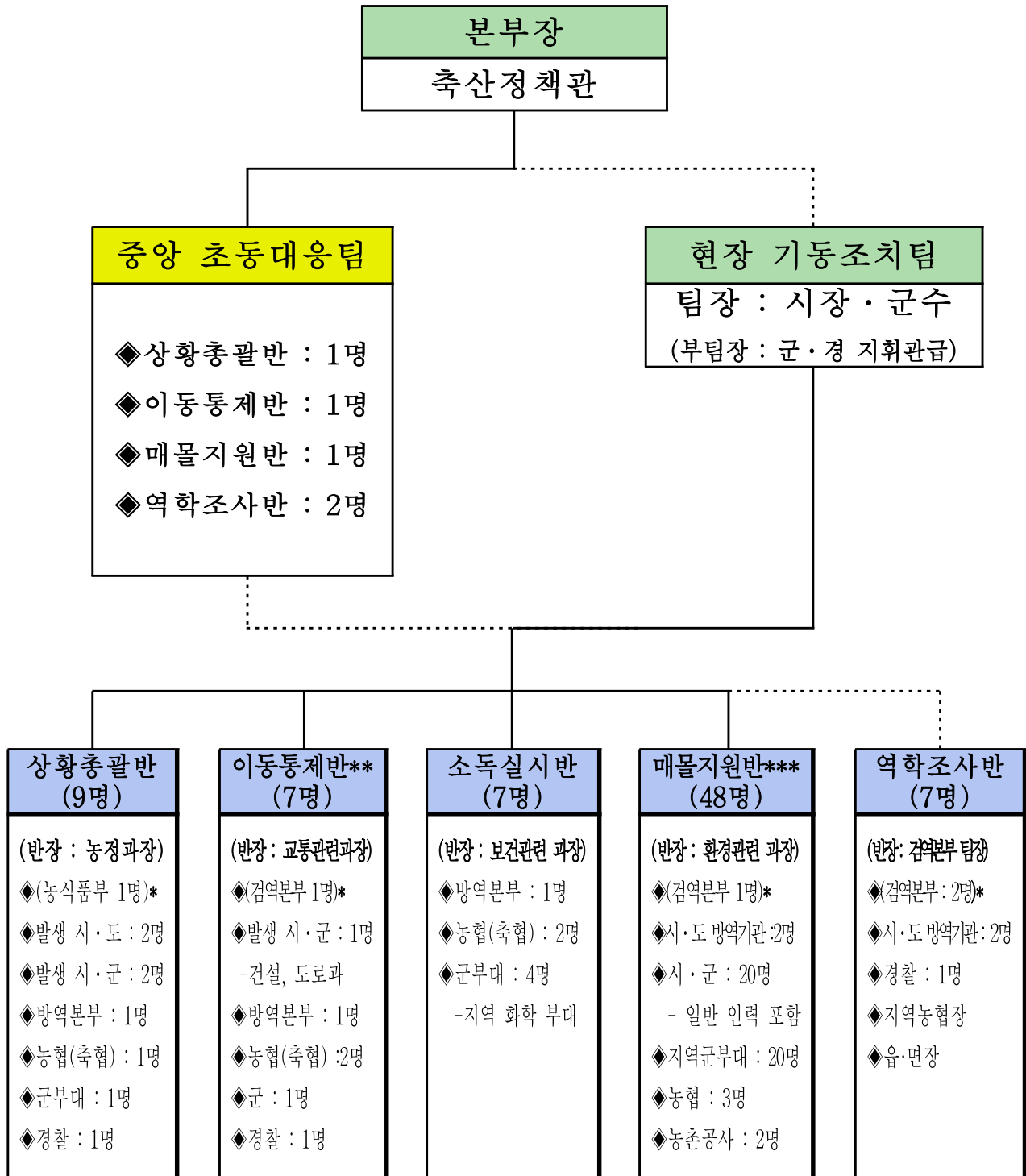
1.1.1 중앙 초동대응팀 : 4개반, 5명

구 분	구성 및 주요 임무
상황총괄반 (1명)	◆구성 : 농식품부 과장급 1명, 사무관급 1명 ◆임무 : 기동방역기구 총괄 및 발생 시·군의 초기 방역조치 총괄
이동통제반 (1명)	◆구성 : 검역본부 사무관급 1명 ◆임무 : 이동통제·통제초소 설치 및 소독 지도·지원
역학조사반 (2명)	◆구성 : 검역본부 역학조사 인원 2명 ◆임무 : 역학조사 실시(시·도 역학조사팀과 공동조사)
매몰처리반 (1명)	◆구성 : 검역본부 과장급 1명, 사무관급 1명 ◆임무 : 매몰지 선정 및 매몰요령 등 현장 매몰 지도·지원

1.1.2. 현장 기동조치팀 : 5개반, 78명

구 분	구성 및 주요 임무
상황총괄반 (9명)	◆구성 : (농식품부 1명), 시·도 2, 발생 시·군 2, 군부대 1, 경찰 1, 농협·지역축협 1, 방역본부 1명 ◆임무 : 기동방역기구 총괄 및 발생 시·군의 초기 방역 지휘
이동통제반 (7명)	◆구성 : (검역본부 1명), 시·군 1명, 경찰 1, 군 1, 방역본부 1, 농협·지역축협 2 ◆임무 :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지원
소독실시반 (7명)	◆구성 : 농협·지역축협 2명, 방역본부 1, 군부대 4 ◆임무 : 발생농장 및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실시
역학조사반 (7명)	◆구성 : (검역본부 2명), 시·도 가축방역기관 2명, 경찰 1명, 읍면장, 지역조합장 ◆임무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 합동 조사
매몰처리반 (48명)	◆구성 : (검역본부 1명), 시·도 가축방역관 2명, 시·군 20, 군부대 20, 농협3, 농촌공사 2 ◆임무 : 매몰지 선정 및 매몰요령 등 현장 매몰 지도·지원 *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터파기팀, 마취팀, 매립팀), 사후처리팀 구성

1.1.3. 기동방역기구 조직도



* 현장기동조치팀 구성은 중앙초동대응팀이 포함된 것이며, 구성인원은 AI 발생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이동통제반은 통제초소 운영 인원은 별도 구성

***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터파기팀, 마취팀, 매립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

2. 기동방역기구 운영 요령

2.1 평시 기동방역기구 구성 및 운영 요령

2.1.1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1.2 각 기관은 시·군 단위로 1.1.3. 기동방역기구 조직도에 따른 인원 편성 후 관리하며, 편성된 인력은 평시 개인별 일상 업무 수행하고, 상황 발생시 발생현장에 투입한다.

2.1.3 각 기관은 각 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반원을 편성한다.

- 각 시·군은 지역 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반원 명단을 받아 기동방역기구를 편성하고 총괄 관리한다.
- 관계기관은 기동방역기구 자체 반별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관할 시·군에 명단을 제출한다.
- 각 기관은 인원 편성시 예비로 2개 팀을 추가로 작성한다.

2.2 기동방역기구의 교육 및 훈련

2.2.1 기동방역기구의 특성상 전체 집합 교육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시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2.2.2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각 반별 편성된 소속 인원에 대하여 소독·이동통제 및 살처분·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3 기동방역기구의 투입

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소집 및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2.3.2 기동방역기구는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 현장 방역 조치 지도·지원 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을 준수한다.

2.4 기동방역기구의 철수

2.4.1 기동방역기구는 초동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 시 관할 시·군에 상황 인계 후 철수한다.

2.4.2 그 이후 방역조치는 발생한 시장·군수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기동방역기구의 기관별 업무

3.1 농림축산식품부

3.1.1 초동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발생 시·군에서의 초동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한다.

3.2 농림축산검역본부

3.2.1 방역기술 지원, 소독장비 운영, 이동통제 초소설치·운영 및 사체처리작업 지원 등 기술자문을 실시한다.

3.2.2 현장의 소독 실시와 통제초소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2.3 중앙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시·도 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Standstill 기간(48시간내) 동안 역학조사와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실시한다.

3.4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3.4.1 가축방역관·수의사 등 전문 인력과 방역장비 및 비품 등을 동원하고, 살처분·매몰 작업에 기술 지원을 한다.

3.4.2 인근 시·군의 통제초소의 설치를 지도하고 지원하며, 장비를 파악한다.

3.4.2 인력 및 장비의 동원계획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한다.

3.4.3. 중앙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3.5 시·군

3.5.1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몰대상 농가의 현황 등 관련 축산현황을 파악한다.

3.5.2 소독 및 이동통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소속 인력의 업무분담과 배치를 하며, 기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5.3 살처분 보상금 평가와 매몰지의 선정 및 살처분·사체처리 조치를 한다.

3.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6.1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방역기술을 지도하고 현장 지원을 총괄한다.

3.6.2 시·군의 지시에 따라 신고농장에 대한 초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3.6.3 소독, 이동통제 및 살처분·사체처리를 실시한다.

3.7 농협(축협)

3.7.1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소독 및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3.7.2 지역조합장은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3.8 군

3.8.1 소독, 이동통제 및 사체처리 조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시 장비를 지원한다.

3.9 경찰

3.9.1 이동통제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3.10 농어촌공사

3.10.1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지원한다.

4. 기동방역기구의 반별 세부업무

4.1 상황총괄반(반장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시·군 농정과장)

4.1.1 상황실 설치를 지도하고 기관별 업무분장 등 초동조치 업무를 총괄한다..

- 시장·군수를 면담하고 상황실 업무분담과 시·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매몰대상의 농가 현황과 관할 가축사육 현황 등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 중앙정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4.1.2 시·군의 인력·장비의 확보와 행정지원 업무를 협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논의 하여 결정한다.

- 시·군의 통제초소 운영·소독실시·매몰처분 관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협조한다.

* 인력 동원은 시·군 총무과장, 장비 동원 : 시·군 건축 관련 과장

- 시·군의 물품 조달과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의료구호품 비치 등 일반 행정지원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 군,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1.3 기동방역기구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방역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 각 반별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4.2 이동통제반(반장 : 시·군 교통관련 과장)

4.2.1 발생농장 입구에서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통제한다

- 발생농장 입구는 3명(시·군 직원과 가축방역사2)의 통제팀을 구성하여 상주하면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로 하여 발생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4.2.2 방역지역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한다.

- 소독장비 및 통제초소 장비 및 운영 인력은 시·군에서 확보한다.
- 통제초소는 시·군 공무원 및 방역본부, 군, 경찰 및 농협(지역축협)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기동방역기구는 통제초소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4.3 소독실시반(반장 : 시·군 보건관련 과장)

4.3.1 발생농장 및 발생지 주변 소독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이동 통제팀과 협조하여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하여 소독 등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인근 발생지(500m 내외)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4.3.2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시·군 및 농협의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기타 주요 소독실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4.4 역학조사반(반장 : 중앙역학조사반 팀장)

4.4.1 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시·도 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4.2 필요한 경우 경찰, 축협조합장 및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4.3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요청 등 필요시 상황총괄반과 협조한다.

4.5 매몰지원반(반장 : 시·군 환경관련 과장)

4.5.1 평시 살처분 인력(수의사 등 공무원, 군인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편성하고 AI 발생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은 상시 학습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방역매뉴얼에 따른 보상·평가방법, 매몰지 선정방법, 매몰요령 등 업무별 사전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4.5.2 매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은 시·군에서 확보하고 필요시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장비를 활용한다.

- 현장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몰처분 지휘 및 농가별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상황총괄반에 통보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요령을 준수한다.

3.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 신고

1-1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이 급작스럽게 폐사율이 높아지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을 발견한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 등은 즉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 시·군·구 및 읍·면·동(☎ 1588-4060)

▷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1.2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심축 신고를 받은 기관은 축주 등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즉시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장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될 때까지 이동제한 조치
- 모든 차량의 출입 제한
- 농장내 모든 사람의 외출 금지

1.3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의심축을 신고한 경우 4장.5 “수의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체계 : 읍·면·동→시·군→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사항 접수 및 조치(시·도 가축방역관)

2.1. 의심축 신고(통보)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검역본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의심축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의심축 신고상황을 통보받은 검역본부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심축 신고상황을 보고한다.

2.2.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 및 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후 해당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 2명 이상을 출동시킨다. 다만, 발생이 확산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심축 신고상황을 통보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의심축 신고상황을 통보하고, 시료채취반을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전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2.3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이 의심장소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계관으로 하여금 신고농장에 먼저 도착토록 하여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2.4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전담 가축방역관은 의심장소로 출발할 때에는 의심축 신고서 사본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및 별표1의 “초기 검진시 긴급방역용 용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농장 도착 후의 조치(시·도 가축방역관)

3.1 현장에 도착한 가축방역관은 타고 온차량은 농장 밖에 주차시키고, 위생 작업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하고 소독 등 개인방역 조치한 후 농장에 들어간다.

3.2 가축방역관 등은 의심축 신고농장내 모든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 등을 한다.

- 1명은 의심축이 있는 축사, 나머지 1명은 의심축이 없는 축사의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한다.
-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는 별표2의1의 “간이항원진단키트 사용방법”에 따라 하며 검사결과는 의사환축 판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3 농장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초기임상관찰 결과에 따른 조치

4.1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4.1.1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에 따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추후지시를 받는다.

4.1.2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상황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받은 가축방역관은 이를 축주(신고자)에게 통지한다.

4.1.3 농장에 대하여 취했던 가축·차량·사람의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조치를 해제한다.

4.1.4 관할지역 시장·군수는 긴급방역조치를 해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상황종료 사실을 보고한다.

4.1.5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 필요시 병성감정을 할 수 있다.

4.2 “위험유무의 판단이 어렵거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4.2.1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감수성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시킨다.
-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시킨다.
-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는 자체진단)를 의뢰한다.

4.2.2 보고를 받은 시·도 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신고서”에 의거 당해 동물 등에 대한 검진과 가축의 이동상황, 분뇨의 이동, 출입자현황 등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시·군)에 보고(통보)하고 이를 KAHIS에 등록한다.

-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한다.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감수성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시킨다.
-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시킨다.
-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KAHIS를 통해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가축방역관이 시료를 직접 송부하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송부 될 수 있도록 시료 취급요령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시킨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의사환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5.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5.1 발생농장(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생지)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를 한다.
- 5.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감수성 동물의 사육현황을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5.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에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한다.
- 5.4 방역지역의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의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5.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5.6 상황실장은 대책반별 일일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지원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한다.

5.7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 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5.8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에 대비하여 사전 방역조치 지시가 있는 경우 관리지역안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일 임상관찰, 소독지도 수행, 이동제한 등을 시행한다.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의 조치사항

6.1 시장·군수로부터 초동방역팀 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6.2 초동방역팀은 해당농장에 투입 전 휴대가 필요한 기자재를 확인한다.

6.3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임무를 지원한다.

6.4 초동방역팀의 임무 등에 대하여는 제4장.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을 참고한다.

7.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사항

7.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가축의 임상관찰을 위하여 소속 가축방역관을 파견한다.

7.2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7.3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하여 소속 가축방역관을 상주시키고, 시·군의 가축방역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한다.

7.4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는 정밀검사 실시)한다.

8.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8.1 의심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및 검역본부에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KAHIS에 입력한 상황을 확인 등록한 후, 타 시·도에 통보한다.

8.2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사항을 시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8.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대 설정 등 아래의 방역 조치사항을 준비한다.

-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준비
- 살처분·사체 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매몰지 등의 조달 준비
- 발생지역 소재 군부대,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 전국의 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준비
- 시·군별로 거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준비
-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및 상황실 설치 준비(전국)
-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시행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 발생 시·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준비

9. 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9.1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보고시 방역대(발생지, 보호, 예찰, 야생조수류예찰지역)내 개괄적 농장현황을 포함한다.

9.2 채취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KAHIS에 등록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 및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에게 통보한다.

9.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동물방역부장) 설치를 준비한다.

9.4 기동방역기구 파견대비 관계관의 출동을 준비(초동대응팀 포함)한다.

9.5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사항

10.1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주의”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전파한다.

- 10.2 전국 Standstill 시행에 대비, 상황 전파체계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 10.3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도(시·군)에 관리지역 안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 배치, 보호지역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일 임상관찰, 소독지도 및 이동제한 (AI 유전자 검사결과 H5/H7 형 확인단계에 한한다) 등 사전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10.4 의사환축의 발생상황·발생지의 축산업 형태·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부의한다.
- 10.5 농림축산식품부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및 설치 및 기동방역기구 파견을 준비한다.
- 10.6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를 확인·점검한다.
- 10.7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한다.
- 10.8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한다.

4.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1. 시·도 가축방역기관 병성감정반의 출발

- 1.1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를 팀장으로 하여 적어도 1인 이상의 관계관과 동행하도록 하며, 별표 2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과 병성감정 용구 및 소독장비를 갖추어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발한다.
- 1.2 차량은 의심장소의 밖에 주차하고, 차량과 축사간의 왕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한다.
- 1.3 의심장소로 들어갈 때에는 보호장구 착용 등 적절한 개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의심장소 내에서의 역학조사 및 조치

- 2.1 의심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의심장소 밖에서 위생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한다.
- 2.2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임상관찰은 건강한 동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발생 의심동물로 진행한다
- 2.3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채취할 대상시료, 실험실로의 시료송부 및 감염된 동물의 폐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2.4 의심되는 질병에 대하여 시·도 가축방역관 및 축주에게 설명하고, 방역조치를 취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또한 최종 검사결과가 공표될 때까지는 가축전염병명을 예단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 2.5 아래의 3. 시료채취 및 송부 절차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송부한다.

3. 시료채취 및 송부

- 3.1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서 “가축병성감정실시요령”에 따라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검 및 가검물 채취 후 남은 사체는 반드시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3.2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실험실 진단을 위하여 다음의 시료를 채취한다.
 - 3.2.1 병리해부검사를 위하여 최소 5수 내지 최대 10수 정도의 폐사축을 확보한다. 다만, 폐사축이 없을 경우에는 졸고 있거나 침울한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축을 우선적으로 채취한다.

3.2.2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응고된 혈액 1ml 이상)를 축사별로 20수씩 채취한다.

3.2.3 채혈한 동일개체 인후두, 분변 swab 20개이상 채취한다.

3.2.4 분뇨는 농가별 축사당 20개 시료를 채취한다.

3.3 분뇨 채취요령

3.3.1 분뇨의 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료는 은행 씨알 크기로 채취하되, 50ml 코니칼 튜브 1개에 5개 지점의 시료를 투입, 축사당 시료 튜브 수는 4개가 되도록 한다.
- 생식회가 살포된 경우에는 생식회를 걷어내고, 분뇨 표면에서 2~3cm 깊이에 있는 분뇨를 은행 씨알 크기로 채취한다.
- 시료는 축사 내 일부분에 편향되지 않도록 골고루 채취한다.

3.3.2 시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닫고, 용기 외부를 소독한 다음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인편으로 직접 송부한다.

3.4 타 축종(돼지 및 개)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

3.4.1 관리지역 내 돼지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육성사 및 비육사로 구분하여 비강 swab 및 혈액 각 20점 이상씩 채취한다.
- 사육단계별 돈사가 다수일 경우 돈사당 균등 할당하여 채취한다.

3.4.2 발생농장 및 그 외 역학관련으로 개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할 경우 시료 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강 swab 및 혈액을 케이지당 1-2두씩 채취하되 농장 당 20두 이상 채혈한다.(20두 미만일 경우 전두수 채혈)

3.5 시료 포장 방법

3.5.1 농장 내에서 포장하되, 감염동물로부터 떨어져서 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료를 시료용기에 담은 후 시료용기의 뚜껑을 닫고 외부를 소독한다.

3.5.3 시료용기의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한 후 시료용기의 외부에 시료 번호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고 포장용기에 담는다. 깨지기 쉬운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포장을 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3.5.4 포장용기 내에 아이스팩을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시료를 얼리지 말 것), 시료용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빈 공간을 솜 등으로 채운 후 포장용기의 뚜껑을 닫고 외부를 소독한다.

3.5.5 채취한 시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에 의거 정확히 기록한다.

3.6 시료의 송부

- 3.6.1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필요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우선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 3.6.2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관 또는 관계관(안전수송에 대한 교육 실시 할 것)이 직접 시료를 수송하도록 한다.
- 3.6.3 포장용기가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파손 시에는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3.6.4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장소를 벗어난 후 포장용기를 별도의 운송 상자에 담는다.
- 3.6.5 포장용기 또는 운송 상자 외부에는 위험물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3.6.6 수송직전에 검역본부장(AI방역대책상황실장 및 질병진단과장)에게 가검물의 내용·수량, 수송경로, 출발시간, 도착예정시간, 검체번호, 축주명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병성감정반의 철수

- 4.1 발생장소를 나오기 전에 위생작업복 및 장화를 벗고, 목욕 또는 샤워를 실시한 다음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벗은 위생작업복 및 장화를 발생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아니 된다.
- 4.2 갈아 신은 신발을 현장에서 적절히 소독하고, 차량의 바퀴, 외부 및 내부바닥을 깨끗이 세척한 후 소독한다.
- 4.3 세척·소독을 마친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생장소를 떠난다.
- 4.4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관계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경우 최소 7일 동안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

- 5.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은 검역본부에서 병리검사·바이러스 분리·혈청형동정·정밀조직검사를 실험실내(모든 검사수행은 준차폐시설 이상)에서 검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의 경우는 자체진단을 한다.

- 5.1.1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 될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1차 검사(HA, HI) 및 H형(H5, H7, H9) 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KAHIS를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5.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 감정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 5.1.3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2 발생농장으로부터 수송된 포장용기 또는 운송상자는 밀봉한 채로 지정된 실험실 내로 운반되어야 하며, 실험실내에서 개봉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5.3 해부검사시 검체별로 각각 4개의 시료를 채취하며, 최대 5마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5.3.1 해부검사시 채취대상 시료
- 바이러스 분리를 위하여 맹장편도, 폐장, 신장, 분변(장조직 포함)을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SPF 종란내 접종, 유전자진단(PCR)의 재료로 사용한다.
 - 병리조직검사용 재료로 뇌, 기관, 폐장, 간, 췌장, 심장, 신장 등을 채취한다.
 - 응고된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한천겔침강반응과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유무를 검사한다.
 - 실험실진단 전문연구원은 시료의 접수와 함께 지체없이 진단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5. 수의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

1. 기본원칙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축주로 하여금 해당농장에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분뇨 등의 이동을 못하도록 하고,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 후 농장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방역요원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의 의심축 발견 시 신고 및 대응요령

2.1 수의사

2.1.1 환축을 발견한 경우 축주에게 환축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관찰지 시·읍·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 전화 등으로 신고한다.

2.1.2 임상수의사는 시·도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동력분무기나 휴대용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또한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시킨다.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알, 사료, 퇴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배수구를 폐쇄한다.

2.1.3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가능한 한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 2.1.4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의복·신발·안경 및 진료 기구·가방 등 휴대한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한다.
- 2.1.5 귀가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신발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목욕을 한 다음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 2.1.6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 2.1.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최종 접촉일 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한다.

2.2 축산관련 종사자의 의심축 발견시 조치사항

- 2.2.1 축주에게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하였음을 설명하고, 즉시 관할지 읍·면장,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한다.
- 2.2.2 축산관련 종사자는 시·도 가축방역관이 도착할 때까지 농장에 대기하고 농장주에 대하여는 아래의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동물(개, 고양이, 닭 등 포함)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시키지 않는다. 동력 분무기나 휴대용 분무기가 있으면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축사의 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독약을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AI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료 등 불가피하게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장입구에서 대기토록 한다.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밖으로 사료, 퇴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배수구를 폐쇄토록 조치한다.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시료 채취 등에 협조한다.

2.3 현장에 도착한 시·도 가축방역관의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치사항

2.3.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진시를 대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가 의심축 신고농장을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4일전까지 방문한 가금류 농장 현황을 조사한다.

2.3.2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축산관련 종사자가 농장 내에 대기토록 조치한다.

- 부득이 농장을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등 휴대한 기구·장비에 대하여 폐기 또는 소독을 실시하고,
-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내외부에 대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균 후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토록 한다.

2.3.3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도록 조치한다.

2.3.4 정밀검사 판정 시 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 및 관계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3.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7일간 가축 사육농장의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동물약품·사료업체 등의 질병 컨설팅 관계자

3.1 동물약품·사료업체 등의 질병 컨설팅 관계자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임상수의사의 조치사항을 준용하여 신고 및 현장에서의 방역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시·군별로 1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 2.2 개인별로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 3.1 의심축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투입요청자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 3.3 방역본부장은 의사환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사환축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 4.1.1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사환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3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설치·운영한다.
-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 및 축사 내·외부 바닥에 소석회(생석회)를 살포한다.
-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1.6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축의 사육현황조사, 21일 이내 출입한 모든 차량(가축, 사료, 분변 등) 및 사람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4.2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 판정 시에는 기동방역기구 투입이 종료된 후 철수한다.
- 5.1.1. 초동방역팀의 철수와 관련하여 검사진행사항 등에 따라 조기철수가 필요시에는 시·군 및 시·도 방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5.1.2. 조기 철수 시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5.2 초동방역팀은 철수 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투입 가능)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취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7. 발생확인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사항

- 1.1 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수급대책반 등으로 구성되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조치할 사항을 지시한다.
- 1.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확인되는 즉시 Standstill을 발령한다.
 - 1.2.1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 1.2.2 전국의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1.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확산방지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3.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공표하고, 살처분 범위 및 예방접종 여부, 방역인력 동원계획, 소독약 공급계획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3.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3.3 살처분·이동제한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3.4 긴급방역예산을 시·도 등에 지원한다.
- 1.4 국무회의 등에 발생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한다.
 - 1.4.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축산물수급안정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요청한다.
- 1.5 세계동물보건기구(OIE)과 관련국가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및 필요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의뢰를 지시한다.
 - 1.5.1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검역본부장에게 지시한다.
 - 1.5.2 검역본부장에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원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 1.5.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속히 통보하고, 이후 수행하는 병성감정 결과도 통보한다.
- 1.5.4 주요수출국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출검역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킨다.
- 1.6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1.6.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조치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주요증상 및 이상증상 발견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한다(축산농가 당부사항 참조).
 - 1.6.2 육류소비 위축방지를 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한다.
 - 소비자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시식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 살처분·매몰 장면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한다.
- 1.7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1.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발생 등에 따라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시설) 사용제한·폐쇄·소독, 가금류 유통상인의 닭·오리 수송 차량 소독 및 실시여부 확인, 도축장 출하 닭·오리의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을 조치할 수 있다
- 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2. 검역본부장의 조치사항

- 2.1 검역본부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실에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검역대책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되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2.2 전국의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Standstill)하는 조치를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한다.
- 2.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을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진단체계를 구축하며, 바이러스 특성(부검소견, 임상증상 등)에 대한 사진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일선수의사 등에 신속히 전파한다.

- 2.3.1 필요한 경우 OIE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표준연구소로 시료를 긴급 송부하여 혈청형 등에 대한 확인검사를 의뢰한다.
- 2.3.2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원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4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방역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 2.5 중앙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발생원인, 유입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2.5.1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앙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다.
 - 2.5.2 국내 최초 유입시기, 유입경로 및 발생농장 밖으로의 전파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의 출입자, 출입차량 및 가축이동 상황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추적을 실시한다.
 - 2.5.3 국내유입경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 도래하는 야생철새에 대한 예찰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진단반과 협조하여 예찰을 실시한다.
- 2.6 검역대책반으로 하여금 유입경로의 추적 등을 위한 해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검역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2.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강화조치, 밀수방지, 남은 음식물 처리, 해외여행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7.1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 2.8 수출검역물의 반송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검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9 대국민·축산농가 대상 신고 및 방역요령 등 홍보를 강화한다.
- 2.10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한다.

3.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 3.1 ○○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3.2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 3.3 시장·군수에게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사람·차량·동물 등의 이동통제 및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방역기술을 지원하도록 지시한다.
- 3.3.1 예찰지역은 시·도지사가 설정을 지도하고,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7)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 3.3.2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관리·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 관리·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한다.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화 등을 통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 3.3.3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한다.
 -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한다.
- 3.4 사람·차량·가축 및 축산물 등의 출입·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하여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한다.
- 3.5 지역방송망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의심축 발생시 신고요령 및 방역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한다.
- 3.6 방역지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및 설치류에 대하여는 살처분 또는 구서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3.7 관리·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내 이동제한 및 방역실시에 따른 사료·가축분뇨·알·식육·부산물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8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내 가축의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축산물의 수매 등을 실시한다.

3.9 보호지역내 사료공급차량은 고정 배치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사항

4.1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4.2 시·도 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중앙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의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을 추적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의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및 방문자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을 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의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포함)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을 추적하여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 살처분 대상가축 및 보호·예찰지역 오리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를 채취한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발현일이 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을 추적 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4.3 추가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4.4 필요한 경우 야생조류(철새, 텃새류 포함)를 포획, 분변·혈액 등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로 송부한다.

5.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5.1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다.

5.2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방역활동에 참여하도록 비상 동원령을 발동한다.

5.2.1 시장·군수는 부시장·부군수·국장·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역대책협의회를 소집하여, 방역지역의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력·동원장비·물품 등을 점검한다.

5.2.2 『4장. 8.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을 참고하여 ○○시·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방역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 종합상황반,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교육·홍보반, 소독지원반, 인력·장비보급반 등 시·군 조직·업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보호지역내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살처분 진행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관할 면장 등 권장)을 지정하여 현지에 파견한다.

5.2.3 현장통제본부는 발생농장의 살처분, 소독, 매물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차량,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세척, 소독과 탈의실, 샤워장, 소독기구(장비) 설치·운용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통제본부는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대한 살처분·소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발생농장 입구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3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살처분하고, 폐사체 또는 살처분한 가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다. 구체적인 살처분 및 소각·매몰절차는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의한다.
-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사, 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 처분한다. 소독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폐기 처분 시에는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이용하여 관리지역(500m이내) · 보호지역(반경 500m~3km) · 예찰지역(반경 3~10km)의 방역지역을 설정, 방역지역내 감수성 동물(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포함)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을 명하고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방역조치를 한다.

- 시장 · 군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 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 안에 도로 · 하천 · 철도 등이 있어 질병전파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도로 · 하천 · 철도 등의 안쪽만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 · 도지사 및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분석(별표7)의 세부요소를 감안하여 관리 · 보호 ·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 · 도 소속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 · 도관계관, 시 · 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가상방역훈련(CPX)을 활용하여 방역대 설정에 대한 집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역지역을 설정 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http://www.kahis.go.kr/>)을 이용하면 방역대내의 개략적인 농가위치 · 사육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3.1 발생농장 또는 발생지에는 이동통제초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관리지역 안에 사육되는 돼지 포함)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 · 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명령서의 개별통보(SMS 문자메세지 병행이용) 및 공고 실시한다.
- 발생농장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통제 하에 세척 ·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한다.
- 발생농장의 살처분, 소독, 매몰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장비, 차량, 물품 등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출입자 · 출입차량 · 관련 장비 등에 대하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5.3.2 방역지역내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 가축 도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 이동통제초소 근무자는 **14.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에 따라 이동을 통제한다.

5.3.3 해당 가축 및 축산물 등의 불법이동 및 반출 관련자 적발과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한다.

5.3.4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이용하여 방역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지역에 관계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파악하여야 한다.

5.3.5 방역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 관리·보호·예찰지역내의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5.4 시장·군수는 방역지역 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다만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4.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한다.

5.4.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재설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5.5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한다.

5.6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방역조치에 필요한 공무원 등을 말함)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5.7 방역대외의 가금농가 등이 이동할 때는 최소 1주일 전에 가금류 출하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7일간 임상검사를 실시하되, 3회 이상 임상검사서를 작성하고 3회중 2회는 축주가 1회는 반드시 가축방역관이 작성한 후, 가금류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우리의 경우는 최종 출하 일에 PCR검사를 실시한다.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

구 분	축종	관리·보호지역(3km)	예찰지역(10km)
가금	닭 등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오리를 제외한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PCR검사, 시료는 인후두 및 분변) 후 음성인 경우 반출·입 허용
	오리	반출·입 금지(도태, 수매, 출하 제외)	반출·입 금지 다만, 출하 3일전 관할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PCR검사, 시료는 인후두 및 분변) 후 음성인 경우 지정도축장에 출하 허용
	공통	보호지역내 출하일령이 된 가금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이 출하이전 7일간 임상관찰을 실시 출하시 AI 검사(항원·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가장 인근에 위치한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다만, 방역대내 지정도축장이 없는 경우 지역별로 발생지역 인근 도축장을 지정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도축 출하 허용	

구 분	축종	관리·보호지역(3km)	예찰지역(10km)
돼지 등	돼지 등	관리지역 내외로의 반출·입 금지 다만, 관리지역 내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출하 허용	-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 돼지, 발생농장의 가축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가축은 2주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항원(AI 바이러스 검출 또는 AI 유전자검사)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동조치	
분뇨	공통	농장내 매물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 허용, 농장 밖 반출은 금지	농장 밖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사료·깔짚·왕겨	공통	농장 밖 반출금지, 관리·보호지역안 운행 전용차량 이용에 한하여 사료의 반입 허용	깔짚·왕겨는 농장 밖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실시후 농장내 반입
부화장	닭	폐쇄(부화란 폐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부화 및 부화 병아리 반출
	오리	폐쇄(부화란 폐기)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병아리는 방역대 밖으로 반출
도축장	닭등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허용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 도축 허용
	공통	다만, 관리·보호지역 도축장 및 예찰지역 오리도축장은 관리·보호지역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실사단 파견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중앙 가축방역관을 현지에 파견 후 방역대 외부 닭·오리의 도축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축종	관리·보호지역(3km)	예찰지역(10km)
종란	닭등	가공용 가능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 허용
	오리	폐기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고, 타농장으로부터 종란유입이 없으며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경우 미폐기
식용란	닭등	가공용 가능	예찰결과 이상없을 경우 식용허용
	오리	폐기	가공용 가능
출입자	공통	통제초소 및 가금류 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 후 통행 허용	-
차량	공통	가금류 · 생산물 · 사료 · 동물약품 · 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 · 바닥 · 바퀴 · 운전석 등 소독 후 통행허용 다만, 닭 · 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운반차량 통행 금지	가금류 · 생산물 · 사료 · 동물약품 · 왕겨 등 운반차량은 차량외부 · 바닥 · 바퀴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 · 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운반차량은 소독 후 이동허용
사료공장	원료 사료	이동제한(가금용 이외의 사료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 유통 허용) ※관리지역의 경우 이동제한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의 협의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공통	닭 · 오리 분뇨로 생산하는 시설 폐쇄	-

<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요령 >

□ 기록서식

구분	연번	성명	농가주소 (전화번호)	축종	사육수수	산란율			폐사			소독 여부	담당자 (소속)
						평소	오전	오후	평소	오전	오후		
보호 지역	1	홍길동	면 리	산란계	20,000수	18,000개	정상	++	5수	정상	+		
예찰 지역													
역학 관련 농장													
일반 지역													

* 구분란에는 보호·예찰지역, 역학관련, 산란계·육계 밀집지역, 방역취약지역 등을 기록하고, 예찰 결과 5%이상 산란저하나 폐사증가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관 농장방문 조사 실시

《기록예시》

평소대비 산란율		평소대비 폐사율	
구 분	기록방법	구 분	기록방법
정 상	정상	정 상	정상
5~10% 감소	+	5~10% 증가	+
10~20% 감소	++	10~20% 증가	++
20~30% 감소	+++	20~30% 증가	+++

□ 전화예찰 내용

안녕하십니까? ○○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일일 예찰을 위하여 번거롭더라도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① 오늘 축사에 들어가서 닭(오리) 상태를 관찰하였습니까?
- ② 관찰결과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알을 몇 개나 낳았습니까?
- ③ 평상시보다 죽은 닭(오리)이 많습니까? 알 숫자는 얼마나 적습니까?
⇒ 평상시 죽은 닭의 숫자와 산란수는 얼마인지 확인
- ④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닭(오리)이 죽기 전 증상이나 죽은 후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사료섭취가 줄었다. 벼슬이 파랗다. 머리와 안면에 부종이 있다.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인다. 낳는 알 숫자가 크게 줄었다. 알 껍질이 말랑말랑하다 등
- ⑥ 오늘 축사내부 및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8. 발생장소에서의 방역요령

1. 발생장소에서의 긴급방역

- 1.1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 발생장소에 대한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통제본부 설치 전 조치사항

- 2.1 발생지역의 가축방역관은 제4장 3.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에 의하여 취한 초기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현장통제본부가 설치될 때까지 다음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
- 긴급방역에 대해 축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추가적인 역학 정보를 수집한다.
 - 살처분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
 - 소독을 실시한다.
 - 그 동안 취한 방역조치 및 경과를 기록한다.

3.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조치사항

3.1 종합상황반

- 각 반의 방역업무 총괄 및 업무 조정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신고 접수
- 시·도/시·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및 현장통제본부와의 연락체계 확보 및 상황보고(통보)

3.2 역학조사반

- 발생장소내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 축주·수의사·관리인 등과의 접촉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인접한 축사 및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 보호지역·예찰지역 내에서의 역학조사 활동

3.3 정밀진단반

-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송부
- 역학관련농장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방역지역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

3.4 방역지원반

- 살처분·매몰 등 방역기술 지도
- 발생농가 및 통제초소에서 소독실시 요령 지도

4. 시·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4.1 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교육·홍보반, 사후관리반, 인력·장비 보급반 등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한다.

4.2 본부장(또는 부분부장)은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며, 구체적으로 반별 업무를 배정하고 조정한다.

4.3 종합상황반

- 각반의 반별업무 총괄
-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신고 접수
- 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일일보고, 상황보고
- 예산(예비비) 집행관리
- 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 및 현장통제본부와 연락체계 확보

4.4 이동통제반

-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 개별통보(SMS 문자메세지 병행) 및 공고
-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방역관련공무원 배치 및 지정
- 발생농장 출입구 통제 및 외부인 출입 차단
- 방역지역내 통제초소 설치 운영관리 및 초소 근무조 편성·운영
- 군인, 경찰 인력지원 요청
- 이동제한지역내 축산물의 불법유통 감시
- 기계정비반을 구성하여 소독기 정비수리

- 소독장비 전기시설 정비
- 통제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장비의 물공급(소방서 협조)

4.5 살처분반

- 살처분 계획수립(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살처분 실시에 따른 인력, 장비를 인력·장비 지원반에 요청
- 살처분 작업추진(시·도 가축방역관의 기술협조)
- 살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 가축방역관, 살처분(소각·매몰·소독을 포함한다) 감독관(시·군관계관) 및 작업 인부로 구성하며 인원은 살처분 및 소독물량에 따라 조정
- 제4장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동물 등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 실시
-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축사, 기구 및 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

4.6 교육·홍보반

- 축산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등 교육·홍보
- 조류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배포
- 언론 홍보 및 대응

4.7 사후관리반

- 소독 약품 확보 및 배포
- 발생농장 및 발생지 소독
- 소독차량의 동원 및 방역지역별 일일 소독 실시 계획 수립
-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에 의거 분뇨처리

4.9 인력·장비 보급반

- 살처분 실시에 따른 인력동원 및 필요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
- 각종 물품 보급 지원
- 살처분 현장 투입인원에 대한 식사 등 보급
- 살처분 동원인력의 목욕과 농가 출입방지 등 인력관리

5. 현장통제본부의 임무

5.1 시장·군수는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한다. 현장통제본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구성원의 수는 발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방역지역의 출입 및 이동에 관한 통제원칙 설정
- 가축방역관을 반장으로 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출입구 통제지점과 소독대상 범위 설정
- 방역지역 내외로의 출입을 통제, 방역구역 밖으로의 반출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 및 물품, 적절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등의 반출 금지
- 방역지역내 위험시설 및 사람 등의 방역대상 목록 파악
- 정해진 소독대상 물품 등에 대한 소독실시
- 발생농장 축주 및 가족은 타농장 방문 금지
- 이동제한지역내 거주자 타농장 방문 자제

< 시·군 방역대책본부 운영시 착안사항 >

- ☐ 대책본부에 출입하는 자(특히 방역지역을 다녀온 근무자)는 출입시마다 손과 신발을 철저히 소독할 것
- ☐ 발생지역 축산농가는 대책본부에 출입금지 조치(AI 확산 요인이 될 수 있음)

6. 현장방역 조치

- 6.1 발생장소로 출발하기 전 현장통제본부 요원은 별표 4의 긴급방역용 용구를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2 발생장소의 주변에 울타리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눈에 띄는 색깔의 줄로 경계를 표시하고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별표3.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6.3 비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감염동물 또는 오염장소와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계류시킨다.
- 6.4 발생장소의 입구에 별표 5의 개의 및 세척·소독시설의 설치요령에 따라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한다.

- 6.5 발생장소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급한 조치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자는 현장출입을 금지하고,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때 시설내의 갱의실에서 세척·소독이 용이한 조치확인증이 부착된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갈아입을 작업복은 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포한다.
- 6.6 발생장소 밖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때 사용한 작업복 등은 수거통에 담아두어야 한다.
- 6.7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장비는 반드시 세척·소독한 다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6.8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세척·소독 실시는 이동제한 해제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6.9 병원체의 전파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장소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 6.10 주변에 야생동물이나 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장 방역팀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7. 감수성 동물에 대한 살처분 실시

- 7.1 살처분 및 소각·매몰 방법과 장소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 7.2 살처분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살처분 기준 및 절차는 **제4장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의한다.
- 7.3 살처분 즉시 매몰하고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발굴을 금지하여야 한다.

8. 사체의 이동·처리 요령

- 8.1 사체를 먼 곳으로 이동시켜 소각·매몰할 경우에는 혈액·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반 전·후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 8.2 살처분된 사체는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 8.3 **제4장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 조치한다.

9. 세척 및 소독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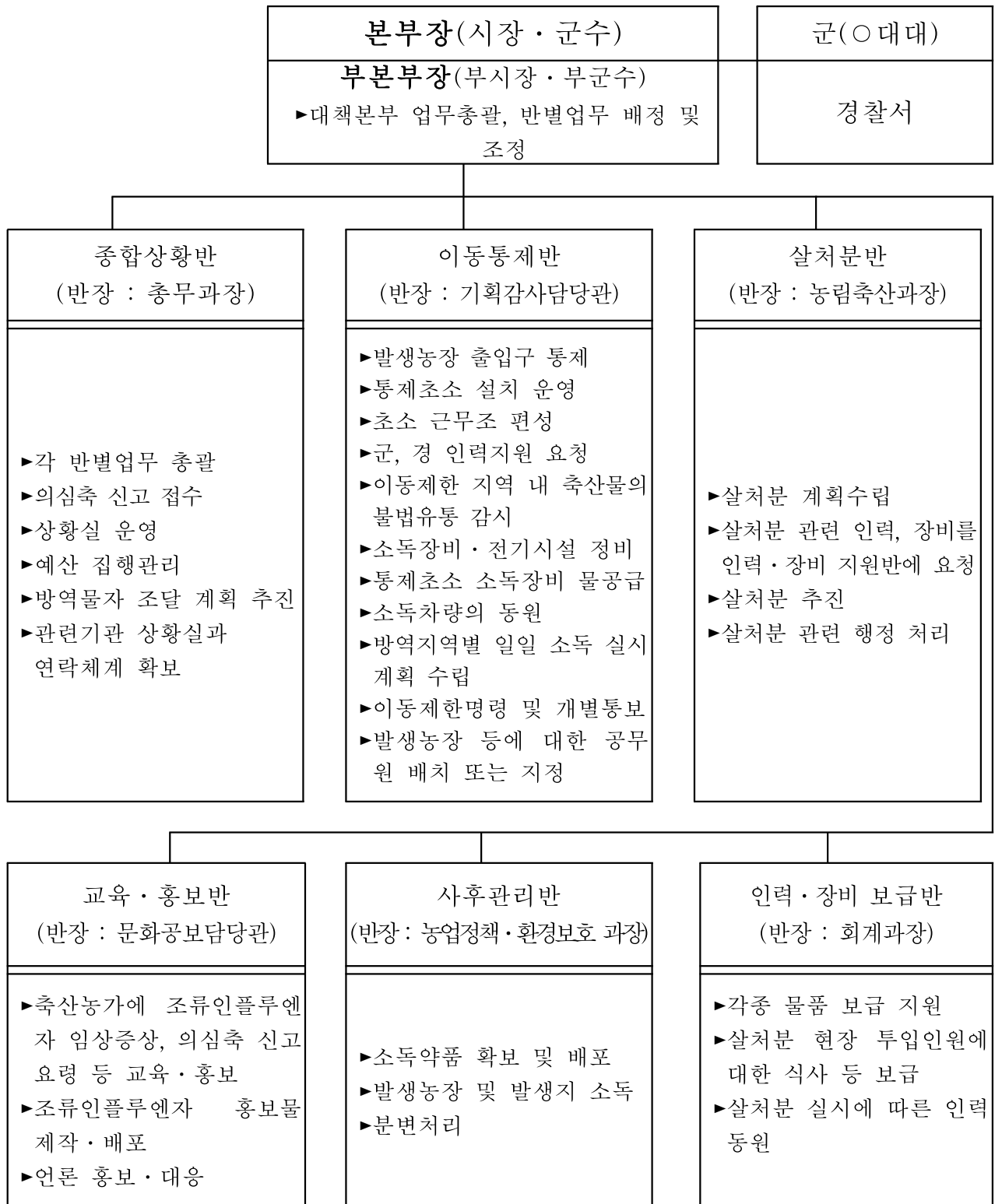
세척 및 소독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0. 현장방역조치의 종료

- 10.1 발생장소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한 경우 방역활동 참여자는 목욕·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2 세척·소독시설 및 장비를 해체 또는 정비한 다음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10.3 세척·소독시설 및 장비가 있었던 장소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10.4 발생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추가 방역조치를 취한다.
- 10.5 통제본부장은 현장 방역조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도/시·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10.5.1 시장·군수는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10.6 시·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시)



근무시간 : ○○:○○~익일 : ○○:○○까지 (24시간 근무)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1. 살처분 및 폐기범위의 결정

1.1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1.1.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종란·식용란(이하 “알”이라한다) 등 그 생산물은 24시간 내 신속히 살처분 및 폐기 처리해야한다.

1.1.2 다음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세부요소(별표7)를 감안하여 시·도 소속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담당관과 협의하여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 그 밖에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

1.1.3 살처분 사체처리의 기본원칙

- 살처분된 사체는 농장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살처분된 사체는 FRP 등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등 친환경적 매물처분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3.2.2의 매물지 선정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물장소에 매물한다.
- 매물시에는 사체의 신속한 분해, 악취 제거 및 침출수 증발 등을 위해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등) 처리를 권장한다.
- 사체 처리시 농장내 오염물 및 오염우려물(사료, 깔짚 등)에 대해 함께 처리한다.
- 사체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한다.

1.2 살처분 범위 확대

1.2.1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세부요소(별표7)를 감안하여 시·도 소속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담당관과 협의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2.3. 현지실사단 구성 및 임무

1.2.3.1 인적 구성

-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가금관련 임상수의사, 철새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지실사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파견

1.2.3.2 현지실사단 임무

- 지자체의 살처분 범위 설정의 타당성 평가
- 살처분 확대를 건의한 지자체의 방역수준 평가
- 살처분 확대 요건인 지리적 및 역학적 특성의 타당성 여부
- 살처분 확대시 매몰지 확보여부 및 매몰방식 파악
- 살처분 대상 가금농가에 대한 수용여부 등 현지조사
- 살처분 확대시 사체처리팀, 사후처리팀 구성여부
- 살처분 시 살처분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행여부
- 살처분을 위한 준비물(SOP 명시) 확보 여부

2. 살처분 절차

2.1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 등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2.1.1 시장·군수는 평시에 사체처리팀, 사후처리팀 등 살처분 사체의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한다. 필요시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는다.

2.1.2 사체처리팀은 살처분된 사체를 처리하며, 전문가를 포함하여 팀을 구성한다.

2.1.3 사후처리팀은 발생농장의 사료, 볏짚, 분뇨의 처리 등 사후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1.4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 사체의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은 마스크·1회용 방역복·장화·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 시장·군수는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업 전·후 반드시 방역수칙 교육(사체처리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안전 사고 예방 등)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한다.

2.2 반 구성 및 임무

2.2.1 인적구성

-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및 작업인부로 구성하며 인원은 살처분 작업 물량에 따라 당일에 살처분이 완료되도록 조정한다.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 20세 미만, 65세이상
 - 임신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 38℃이상 고열 등의 감기증상이 있는 자
 -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 만성간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 ※ 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발췌

2.2.2 가축방역관의 임무

- 살처분 등 준비상황 사전점검
- 살처분 등 절차지시 및 소각 또는 매몰 감독
- 소각·매몰 장소 점검
-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유전자원 확보용 시료 채취
- 살처분 참여인력의 소독 등 방역관련 지도·감독
- 살처분 후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2.2.3 감독관(시·군 관계관)의 임무

- 살처분 및 소각 또는 매몰 현황파악
- 살처분 등에 필요한 작업인원, 준비물, 소각·매몰 장소, 살처분 방법 등의 제반 사항 사전준비

- 구성원에 대한 역할분담
- 살처분 등 집행
- 살처분 후 발생농장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 살처분 등 결과보고 및 소각·매몰 장소 사후관리

2.2.4 사체처리반 구성 및 팀별 업무

- 사체 처리는 사체처리팀, 사후처리팀의 순으로 투입하며, 보상금평가가 완료되면 살처분 실시팀과 동시에 투입한다.
- 사체처리 인력은 작업물량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원을 투입한다.

※ 소요인력 예시(매몰기준) : 가금 10,000수 기준(40~50명)

팀명	반원	임무
사체처리팀	· 시·군 관계관, 축협, 읍면동장 등 · 가축방역관, 포크레인 기사, 사체운반, 작업인력(군인 등), 매몰시 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포함	· 사체 처리장소 선정 · 사체의 처리
사후처리팀	시·군 관계관, 작업인력(군인 등)	사료, 볏짚, 분뇨 등 사후처리

2.3 준비물

- 살처분 기구(CO₂가스, 전살기 등), 마대 등
- 보호복(방수용), 장화, 마스크, 보호안경, 헬멧, 장갑 등
- 작업자에게 투여할 약물(항바이러스제제, 예방약 등)
- 소독약, 생석회 등(살처분장소 등 소독용)

2.4 살처분 방법 결정

- 사살·전살·약물사용·CO₂가스 등의 방법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5 살처분 사전조치 및 우선 조치 사항

- 살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농가 및 주변지역에 살서제를 뿌리는 등 구서대책과 까치·까마귀·참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살처분하는 때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을 먼저 살처분하여야 한다.

2.6 이산화탄소(CO₂)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

2.6.1 오리의 안락사 방법

2.6.1.1 오리 및 오리사의 특성

- 오리는 물러다니는 특성이 있으며, 날지 못하므로 0.5~1m이상의 높이로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넘어가지 못한다. 또한 오리는 야간에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
- 대부분의 오리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원치커튼 형식의 환기) 형태이다.

2.6.1.2 준비물(오리 1,000수 기준)

- CO₂ 가스 3통(7 m³)
- 폭 10m의 롤 비닐(시판 비닐은 폭 5m 2중으로 되어 있음)
※ 필요한 비닐(1,000수)은 약 폭 10m 길이 20m 임
- 마스크가 부착된 산소(O₂) 가스통 1~2통(CO₂ 가스중독에 대비한 응급조치용으로 소방서, 보건소 등에 협조요청), 산소 모니터(산소량 측정기)

2.6.1.3 안락사 시키는 방법(주간 및 야간작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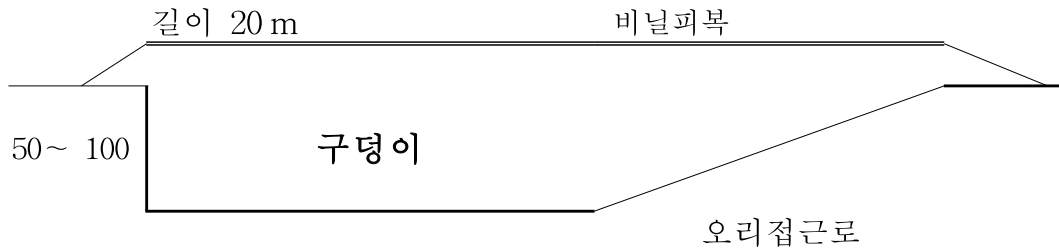
□ 비닐하우스내 평사에서의 안락사

- ① 길이 2m × 높이 50cm의 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준비된 비닐 폭 넓이에 맞추어 □ 자 형태로 만든다.
- ② 오리를 높이 50~1m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막는다.(□)
- ③ 한곳에 모인 오리는 특성상(군집성) 조용히 있게 된다.
- ④ 오리가 놀라지 않게 하면서 준비된 비닐을 덮은 다음 주변의 흙 등을 이용하여 비닐을 덮어 밀폐시킨다.
- ⑤ CO₂ 가스통과 연결된 주입 호스를 3곳에서 비닐하우스 내로 넣는다. 이때 가스통은 주입밸브가 지면과 가까이 되도록 옆으로 누인다(세우면 가스가 잘 주입되지 않음).
- ⑥ CO₂ 가스를 천천히 주입한다(가스 한 통 주입시간 약 20~30분).
급격히 주입하면 오리가 놀라서 요동을 치기 때문임
- ⑦ 오리는 CO₂ 가스 주입 후 약 10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되는데 가스통을 비울 목적으로 30분 이상 기다린다.
- ⑧ 오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호흡, 눈동자 움직임, 근육운동 등이 없음) 비닐 덮개를 제거하고 매몰시킨다.
※ CO₂ 가스 흡입 후 죽게 되는 과정 : 오리는 바닥에 드러누우며, 항문이 열리고 배설물이 나오며, 머리와 목은 등 쪽으로 꺾임

□ 구덩이를 이용한 안락사

① 구덩이 준비 : 길이 20 m, 폭 5~7m, 깊이 50~100 cm의 구덩이를 오리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포크레인 등으로 준비한다.

○ 구덩이 입구는 오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한다.



② 오리를 높이 0.5~1 m 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비닐하우스내 평사에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CO₂는 조류에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억압하며, 일정량의 CO₂ 흡입시 5분 이내에 안락사 시킬 수 있음

○ 단, 안락사 유도시에는 밀폐면적과 CO₂ 노출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고농도 CO₂ 주입이 필요함

- 오리의 경우 밀폐공간에서 60% 이상의 CO₂를 신속하게 주입할 경우 5분 이내에 죽음
- 닭의 경우 5%, 오리의 경우 산소 2%이하일 경우 수분내에 죽음

2.6.2 닭의 안락사 방법

2.6.2.1 닭 및 계사의 특성

- 닭은 매우 잘 놀라고 날개 짓을 통하여 1m이상 비상이 가능하며, 빛이 없을 경우 조용해지지만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생산물 목적에 따라 무창계사, 완전계사, 간이계사 등으로 다양하며 사육형태 또한 케이지 사육 (주로 산란계)과 평사 (주로 육계)로 구분된다.

2.6.2.2 계사별 살처분 방법

구 분	무창계사	완전계사	간이계사
사육형태	케이지 사육, 평사	케이지 사육, 평사	케이지 사육, 평사
지붕단열재	갈바륨 + 우레탄 100 mm + 골드폼 50 mm	보온덮개+비닐+타이론 5mm+비닐+천막	보온덮개+비닐+천막
환기시설	터널+크로스혼합식 강제환기	윈치커튼, 자연환기	윈치커튼, 자연환기
급온기	가스 육추기	열풍기+가스 육추기	열풍기
단순질식	○ 환기팬의 전기를 차단 - 산소공급중단	○ 열풍기의 산소 공급 파이프 (에어통로)를 계사 내로 방향전환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 열풍기의 산소 공급 파이프 (에어통로)를 계사 내로 방향전환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CO ₂ 가스 혼용	환기팬의 전기 차단하여 산소공급중단 및 CO ₂ 농도 증가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및 CO ₂ 농도 증가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및 CO ₂ 농도 증가
예상소요 시간	단순질식 : 1-2시간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단순질식 : 1시간 이내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단순질식 : 1시간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 빛이 없는 야간(저녁 7시경 움직임이 없는 시간대)에 작업시 효과적임

2.6.3 밀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스 살처분

- 산란계용 계사 등의 밀폐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전용 밀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가스를 이용 살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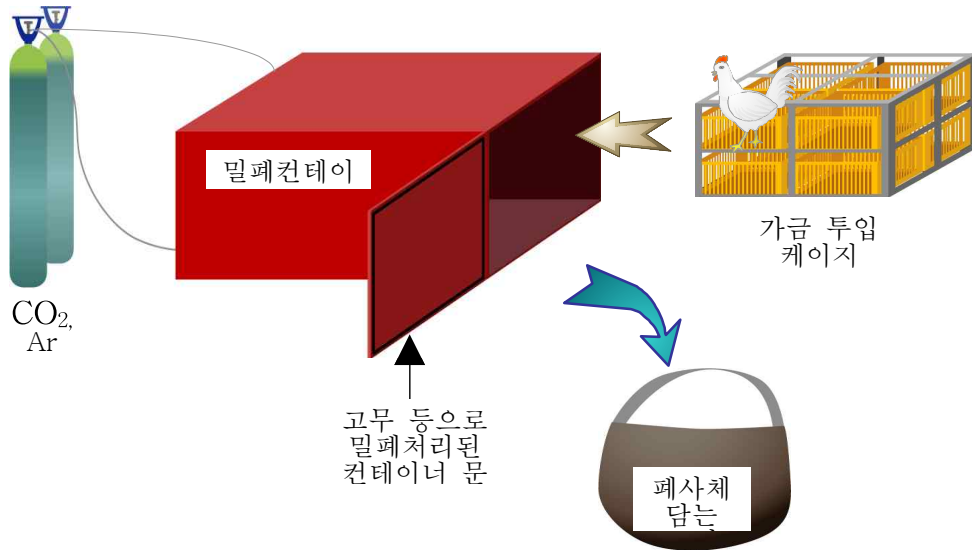
2.6.3.1 준비물

- CO₂ 가스 및 혼합가스 사용시 아르곤(Ar), 가스통,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텐트 (가스통과 연결), 가금 투입 케이지, 폐사체 담은 포대

2.6.3.2 밀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스 살처분 방법

- 케이지에 살처분 가금을 넣는다.
- 가축을 담은 각 케이지를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텐트에 투입한다.
- 가스주입 밸브를 열어 가스를 주입하고 산소 5% 미만으로 유지 시킨다.
- 일정시간 후 가금의 움직임 없어지면 컨테이너 문을 연다. 이때 방독면을 착용하여 CO₂ 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폐사된 가금이 완전하게 폐사되었는지 재확인한다.(호흡 · 근육 · 동공의 움직임)
- 사체를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한다.



2.6.4 살처분 완료 후 조치사항

- 운반된 사체는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한다.
- 살처분 작업에 사용한 기구류 및 장비 등과 발생농장에 대하여 세척 · 소독을 실시한다.
- 살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제4장 12. 청소 · 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의 축사 내외, 케이지 등에 대하여 청소한 후 세척 ·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내 분변은 『18. 닭 · 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 조치한다.

2.6.5 살처분시 주의사항

- CO₂가스는 사람에게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복한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두통, 피로, 가쁜 호흡(호흡수 증가), 헛구역질, 딸국질 등의 “사람에서 CO₂ 가스 중독시 초기 주요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준비된 산소 마스크를 이용, 신선한 공기를 흡입시켜 주어야 한다.

■ CO₂가스의 주요 특성

-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 지면으로 깔림(비중비교 공기:CO₂ = 1:1.5)
-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일산화탄소(CO) 보다는 안전함
- CO₂ 가스는 만들기 쉽고 가격이 저렴함

3. 매물 절차

3.1 매물시 준비물

- 포크레인, 트랙터, 수송차량, 사체운반기구, 삽, 빗자루, 고압세척기나 물호스, 소독차량, 소독약, 물통 기타 소독관련 기구,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 매물작업 소요자재{차수재(0.2mm이상 비닐, 비닐커버, 부직포, HDPE 등), 가스배출관, 침출수배출 유공관, 톱밥 }등
-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용 테이프

※ 매물처리시 준비물(예시)

품명	수량	비 고
포크레인	2대	○ 대형(6W), 소형(02) 각 1대
사체운반기	1대	○ 스키드로더
수송차량	2대	○ 덤프트럭 5톤, 15톤
계근전자저울	1대	
덮개용 비닐	3박스	○ 15m × 50m, 0.9mm(비닐하우스용)
생석회	2ton	
톱밥	400kg	
침출수 배출 유공관	1개	
가스배출관	3개	
U자관	3개	
주변관측정	1개	
배수로셀	1셀	
경고표지판	1개	
출입금지띠	3롤	

<기타>

- 땔나무, 보조연료, 철골 등(소각시)
- 소독수(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생석회, 물통 기타 소독관련 기구

3.2 매물절차

3.2.1 매물대상

- 살처분한 모든 사체, 사료 및 기타 오염물건

※ 살처분 가축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처리하고, 소각 및 매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3.2.2 매몰장소의 선정

3.2.2.1 매몰지 규모의 산정

- 매몰 축종, 매몰수량, 복토량 등을 감안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매몰장소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깊이, 폭, 길이 등 매몰지 크기를 사전 결정한다.
- 매몰지 깊이는 5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하수위·관정·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로 설정한다.
- 매몰수량이 많은 경우에 1개소당 규모가 500m³(5m×5m×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매몰지를 조성하며, 한 지점에서 매몰구덩이를 여러개 설치할 때 매몰 구덩이간의 거리는 사람과 장비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6m 이상 간격을 둔다.

* 매몰지 50m³ 크기의 매몰 두수 : 닭 5,000마리

3.2.2.2 매몰장소의 선택

- 시장·군수는 농장 내에서 매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장 내에서 매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 발생농장이 하천 등에 위치하는 경우 액비 저장조, 간이 FRP 저장조, 랜더링, 이동식 소각시설 등을 활용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

- ㉠ 하천·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 ㉡ 매몰지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지하수위로부터 1m이상 이격)
- ㉢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 ㉣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 ㉤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 ㉧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 공유지로서 매몰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매몰 장소로 부적합 장소]

- ㉧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염지하수관리구역 및 샘물 집수구역
-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3 매몰방법

3.3.1 구덩이 파기

- 매몰 구덩이는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하며, 바닥면은 침출수 흡입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2%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3.3.2 매몰지 바닥 및 측면 비닐 설치

- 매몰 구덩이의 바닥 및 측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서 비닐 훼손을 방지한다. 다만, 비닐이 아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비닐은 환경 친화성 제품을 권장하며, 매몰지의 부피보다 큰 규격으로 사용한다.(두께 0.2mm 이상으로 2중 비닐, 고강도 방수재질)
- 바닥의 비닐부터 1m 높이의 흙을 투입하되 흙의 중간 부위에(약 50~60cm 구간)에 생석회(5cm)를 투입하되, 비닐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3.3.3 매몰지 내부 침출수저류조 및 유공관 설치

- 매몰지내 바닥에는 침출수 내부저류조와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 상부에는 개폐장치)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배출관 하부(매몰지 바닥)에 침출수를 집수할 수 있는 침출수 집수시설(1m³)설치하여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매몰(살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침출수 배출용 내부저류조는 PVC 재질의 통(1m³ 크기 내외) 등을 설치하며, 내부저류조는 매몰지 벽면과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 내부저류조는 매몰지 바닥과 평행하게 하단부 유공관(PVC 재질 구경 200mm 이상)을 설치하고, 내부저류조에서 지상으로 상부유공관(PVC 재질 구경 200mm 이상)에 설치한다. 설치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유공관 상부에 빗물유입방지를 위한 마개 설치한다.
- 하부 유공관 주위에는 보온덮개 및 자갈 등을 둘러쌓아 유공관의 막힘 방지한다.

3.3.4 사체의 투입

- 매몰지 설치가 완료된 후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하며, 필요시 발생농장의 오염 물건(사료 등)을 함께 매몰한다.
- 사체 투입 완료 후 사체위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사체위에 지표면까지 1.5m 이상 복토를 한다.(가스배출관 설치 고려)
- 지표면에서 1m 이상 성토하고, 마지막에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3.3.5 가스배출관의 설치

- 가스배출관 바닥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하고, 배출관의 자재는 직경 100mm 이상의 유공연관 또는 유공직관을 사용한다.
- 가스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 시키되,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장치(“∩”자 형, 정화조 송풍기 등)를 설치한다.
- 설치개수는 매립 당시 20m² 기준으로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며,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 용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숫자를 늘리도록 하며, 매몰지의 안정화에 따라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한다. 다만 소규모 매몰(살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6 배수로 및 외부 저류조(간이탱크)의 설치

-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오염방지 및 우천시 빗물에 의해 매몰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매몰지 주변여건에 맞게 배수로 및 외부저류조(용량은0.5m³ 이상)를 설치한다. 다만, 침출수를 수시로 뽑아내어 처리하는 경우는 외부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배수로는 외부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 외부 저류조는 경사 아래쪽을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7 경고표지판 설치

-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에는 매몰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매몰작업 책임자 및 매몰지 책임관리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매몰장소에 대한 정보를 KAHIS에 등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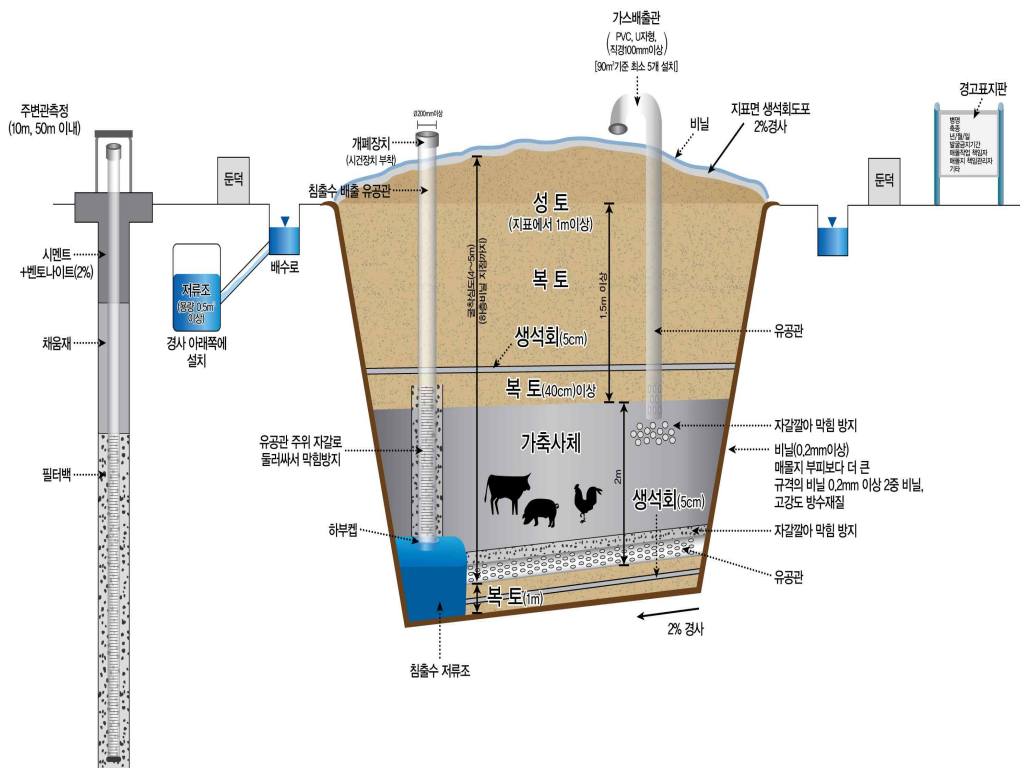
3.3.8 관측정의 설치

- 지자체장은 매몰지 조성완료 후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측정을 설치한다.
- 관측정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한 지점 등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한다.
- 관측정은 매몰지 내부는 유공관을 활용하고, 매몰지 경계외부에서 5m이내의 떨어진 지점에 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설치한다.
(직경 75mm,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PVC 재질 등)

3.3.9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

- 지자체는 매몰작업의 단계별로 차수막, 침출수 배출 유공관, 가스배출관, 관측정, 매몰작업 완료 등의 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매몰지 현황카드를 작성한다.

[매몰지 설치 모식도]



* 매몰지 상부의 비닐은 비가 오는 경우에만 덮고 비가 갠 후에는 벗긴다.

3.3.10 매몰지 관리요령

- 가축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장·군수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리자(담당공무원)를 지정·운영하고 KAHIS에 등록·관리한다.
-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이후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 KAHIS에 등록한다.
- 매몰지 책임관리자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용기여부를 관찰한다. 이상을 발견한 경우 당해 매몰지 책임관리자 등은 매몰지 성토보완 또는 구덩이를 확대하여 용기된 사체는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매몰지 관리용 톱밥은 매몰지 개소당 10m³이상을 확보하며,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하고 가장자리는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눌러 고정한다.
 - 다만 침출수를 별도처리(하수종말처리장 등)하여 톱밥이 필요치 않은 경우나 소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톱밥 비축량을 축소할 수 있다.
- 매몰지가 안정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
-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오는 경우나 집중호우(6~9월)에 의하여 매립지가 유실되거나 붕괴우려가 있을시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하고, 비가 그칠 경우 비닐을 벗겨낸다.
-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복토층에 재매몰 또는 침출수 처리요령에 따라 소각·하수처리장 등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침출수 배출관 및 가스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소독약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3.3.11 침출수 처리요령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유공관을 통해 흡입한 침출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한다.
- 침출수는 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내어 pH 5.0 이하 또는 pH 10.0 이상으로 처리하고, pH-paper를 이용하여 pH 조건표에 따라 측정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이송 후 처리한다.

- 고농도의 침출수 처리시 축산분뇨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관리형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총질소 및 총인 오염부하량 10%이내 범위에서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 유분 등이 많은 침출수는 톱밥과 섞어 소각시설(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침출수의 처리와 동일하게 pH 처리한다.
- 수거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및 처리시설이 없거나, 침출수양이 많아 침출수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몰지에 외부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외부 저장탱크에 저장된 침출수는 소독하고 수분제거(톱밥 등) 후 매몰 처리한다.

3.3.12 매몰지 악취방지요령

- 악취제거를 위해 사체 매몰시 발효제 및 탈취제 또는 호기성·호열성 미생물 등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 추가적으로 살포한다.
- * 최초 15일간은 수시로 살포하고, 이후 6개월간은 악취가 나타날 경우 살포
- 매몰지 함몰로 인한 균열 부위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복토를 실시하고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 가스배출관 및 침출수 배출 유공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 조치를 한다.
- 매몰지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시 호알카리성 바실러스균, 또는 활성탄 등 냄새제거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3.3.13 매몰지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경계외부(5m이내)의 조사관정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침출수 유출 방지, 침출수 정화 등 오염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매몰지와 40~50m 떨어진 위치에 조사관정을 추가 설치(깊이 10m 내외)하여 침출수 확산 여부를 검사한다.
- 기타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을 따른다.

3.3.14 발생농장 이외의 장소로 옮겨 매몰하는 경우 방역조치

- 살처분·매몰은 살처분 농장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가 없어 옮겨 실시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매몰을 실시한다.
 - 닭·오리는 축사 내에서 CO₂로 안전하게 질식사시킨다.
 - CO₂ 작업시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른다.
 - 폐사된 닭·오리를 마대에 담는다.
- 매몰지로 운송하는 경우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 운송한다.
- 닭·오리 운반지정 차량(스티커 부착)만 사용한다.
- 닭·오리 운반차량에 가축방역관 탑승 운행하고, 닭·오리 운반차량 뒤에는 소독 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며 운행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에는 혈액 등이 운송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은 후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는다.
 - 차량은 사체를 넣은 마대가 보이지 않도록 화물칸을 높게 한다.
-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적재 완료되면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매몰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이 매몰지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매몰지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매몰지에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작업완료 후에는 소독차량을 이용, 흠뻑 젖도록 차량소독 실시 후 다른 장소로 운행하도록 한다.
 - 살처분 농장에 차량이 출입하기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15 매몰지를 이전하는 경우 조치방법

- 시장·군수는 매몰지의 붕괴우려, 심각한 환경영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몰지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 매몰지의 이전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고,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 시·군은 기존 매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AI 정밀검사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이전 한다.
 - 매몰지 유공관을 통해 채취한 침출수(1점, 15ml 코니컬 튜브에 10ml)와 매몰지 상층에서 약 30cm하부 지점의 흙(3점, 50ml 코니컬 튜브에 1/3)을 채취하여 코니컬 튜브에 담아 외부를 소독(채취된 시료를 직접 소독하지 말 것)하고, 검역본부에 의뢰한다.
 - 검역본부는 매몰지 이전을 위한 시료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 매몰지 이전 작업 시 방역조치는 아래에 따라 실시한다.
 - 작업 전에 소독과 분진 방지를 위해 매몰지 및 주변에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 매몰지 유공관을 통해 침출수를 흡입하고, 매몰지를 개장한 후 액상부분을 별도 수거하여 침출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pH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처리한다.
 - 사체 등을 운송하는 차량은 적재함 바닥이 침출수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된 차량을 이용하고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적재함 바닥을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가축사체 및 오염가능성이 있는 흙 등 전체를 차량에 적재한다.
 - 사체 등을 차량에 적재한 후 차량 상부를 소독약으로 충분히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차량덮개로 덮는다.
 - 적재를 완료한 후 기존 매몰지는 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 후, 매몰지를 복토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독을 실시한다.
 - 기존 매몰지의 이전과 복토가 완료되면 기존 매몰지의 상층 흙(3점 이상)을 채취하여 코니컬 튜브(50ml)에 담아 검역본부으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기존 매몰지는 정밀검사 결과 판정 시 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새로운 매몰지로 사체 등을 운송시 아래의 요령에 따라 운송한다.
 - 시장·군수는 이전할 새로운 매몰지의 구덩이파기 등 매몰지에 사체를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면 사체를 이송한다.
 - 운송 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은 운송 중 침출수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 휴대용 소독장비를 비치, 차량 이동시 이동경로에 대하여 소독 실시한다.
 - 운송차량이 새로운 매몰지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하고, 매몰지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시장·군수는 이전된 매몰지를 KAHI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4 소각 및 이동식 소각시설

3.4.1 소각방법 및 장소의 선택

-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는 농장 내에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일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 * 이동식 소각시설함은 사체에 직접 열을 가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소각시설을 차량 등에 탑재하여 이동식으로 만든 시설을 말하며, 처리용량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다.

3.4.2 장비 및 준비물

- 이동식 소각시설,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3.4.3 이동식 소각시설의 처리요령

- 사체의 소각 시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후 소각 처리한다.
- 이동식 소각시설은 농장 내에서 소각을 실시하고, 해당 이동식 소각시설의 사용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사체를 소각 후 남은 잔존물은 매몰처리한다.

3.4.4 공공 소각시설로 이동하여 소각 시 차량적재 및 운송요령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한 후 사체를 소각장소로 운송한다.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소각 처리·사후처리를 실시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지정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운송하며,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이 소독시설 입구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소독시설 내에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3.4.5 공공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요령

- 소각시설에 도착한 사체는 지체 없이 처리한다.
- 사체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시설로 운반한다.
-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 장소에서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체를 운반한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하는 등 방역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소각 시설에서는 처리공정에 대한 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각 시설에서는 작업전후 및 휴식 중에 작업기구, 운송차량, 처리장 내 외부를 소독을 실시한다.
- 공공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소각처리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소독한다.

3.4.6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운송자는 마지막 운송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가금류 가축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각처리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각처리를 사용된 차량·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 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3.5. 이동식 열처리시설

3.5.1 이동식 열처리시설의 원칙

- 발생농장의 살처분 사체는 농장내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원칙한다. 불가피 할 경우 농장의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한다.
- 처리장소는 농장내 퇴비장 및 분뇨처리장과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에서 실시한다.
- * 이동식 열처리시설은 사체를 고온·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멸균처리 한 후 남은 잔재물은 퇴비 또는 매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5.1 장비 및 준비물

- 이동식 열처리시설,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3.5.2 이동식 열처리시 주의사항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열처리·사후처리를 실시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열처리를 실시한다.
- 처리장비의 1회 용량 이상으로 사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열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은 처리전의 사체(또는 오염물)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처리 중 방역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3.5.3 이동식 열처리시설 처리요령

- 열처리요령은 처리장비에 따른 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장비의 유압 받침대를 활용하여 처리장소에 장비를 설치 및 고정한다
- 장비내 물을 채운후 중장비를 이용하여 살처분 가축을 장비내 적재한다
- 장비내 압력($4\text{kg}/\text{cm}^2$) 및 온도(250°C)와 적재용량에 맞춰 처리시간(3~5시간)을 조정 한 후 장비를 가동한다
-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비내 액상물 저장탱크에 수거 후 분뇨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출하고, 고형물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퇴비장에 이송·적재 후 농장내 퇴비와 교반처리한다.

3.5.4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처리에 사용된 장비·차량 등은 마지막 처리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가금류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식 열처리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열처리에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차량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 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3.5.5 이동식 랜더링 방식(예시)



3.5.6 이동식 소각장치(예시)

<소형>



<중형>



<대형>



3.6. 랜더링 처리

3.6.1 랜더링 처리장의 선택

- 랜더링 처리장은 발생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시설을 이용한다.
- * 랜더링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3.6.2 장비 및 준비물

-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3.6.3 차량적재 및 운송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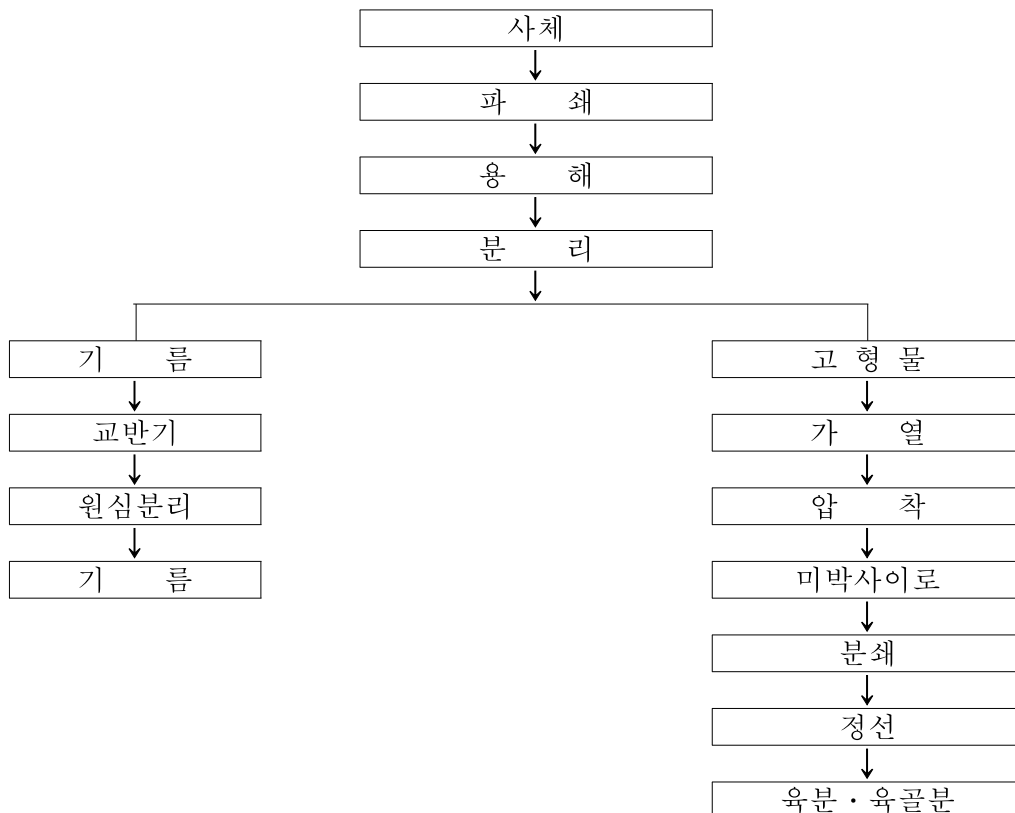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랜더링 처리·사후처리를 실시되어야 한다.
- 랜더링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 운송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중 오물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에는 혈액 등이 운송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은 후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는다.
-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적재완료되면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이 랜더링 처리장 입구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하고, 처리장 내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랜더링 처리장에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3.6.4 랜더링 처리장에서의 주의사항

- 랜더링 처리장에 도착한 사체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사체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장내의 작업장으로 운반한다.
- 랜더링 처리장 1회 용량 이상으로 사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랜더링 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은 처리되지 않은 다른 사체(또는 오염물)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체를 운반한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하는 등 방역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랜더링 처리장에서는 사체와 사체처리 후 남은 부산물을 허가 받은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처리공정에 대한 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록사항 : 작업일시, 내용(축주명, 주소, 처리두수 등), 운송차량번호·기사명 등
- 랜더링 처리장에서는 작업전후 및 휴식 중에 작업기구, 운송차량, 처리장 내외부를 소독을 실시한다.

3.6.5 랜더링 처리 공정(예시)



3.6.6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운송자 및 차량 장비 등은 마지막 운송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가금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랜더링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랜더링 작업에 사용된 차량·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은 제4장 12. 발생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3.7. 액비 대형 저장조 및 간이 FRP 등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

3.7.1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내에 저장조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할 경우 농장의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조를 설치한다.

※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는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저장조를 설치하여 생석회와 석회수 등을 활용하여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처리장소는 가급적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 설치한다.

3.7.2 장비 및 준비물

- 액비 대형 저장조, 석회수, 생석회, 포크레인(저장조 시설설치장소 평탄작업),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3.7.3 액비 대형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시 주의사항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처리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처리한다.

3.7.4 액비 대형 저장조 설치 및 사체 처리요령

- 저장조 설치 부지에 대한 평탄 작업을 실시한다.

살처분 저장조 시설전 토목평판작업



- 저장조를 설치한다.(외부 강판, 내부 방수 처리된 특수 천막)

외벽체 철판세우기



외벽체와 내벽체의 방수천 작업완료



- 사체를 저장조내에 넣는다.

저장조 내부에 쌓여있는 사체



- 생석회, 소석회를 투입한다. 다만, 사체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할 경우 생석회는 투입하지 않는다.

생석회+를 투입



- 저장조를 지붕으로 밀봉한 후 가스 배출관을 설치한다.

트라스를 올린후 지붕완성



- 내용물이 액상으로 변할때까지(약 6개월 소요) 보관한다.
- 액상으로 변한 내용물은 소독 처리 후 매몰지 침출수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7.5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 저장조 처리방식

- 처리장소는 지반이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 변형 등을 방지한다.
- 사체처리시, 포크레인(저정조 시설 설치장소 평탄작업),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 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준비한다.
- 사체처리하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처리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처리한다.
- FRP 용기가 빗물에 잠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준비한다.
- 사체투입량은 FRP 용량의 70%내로 투입한다.
- 가스배출관은 FRP 내 빈공간에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 사체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할 경우 생석회는 투입하지 않는다.
- 내용이 액상으로 변할 때까지(약 6개월 소요) 보관한다.
- 액상으로 변한 내용물은 소독처리후 매몰지 침출수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3.7.6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처리에 사용된 장비·차량 등은 마지막 처리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가금류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차량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참고]

매몰후 호기성(好氣性)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사체의 처리요령(예시)

1. 호기성 · 호열성 미생물 배양토 및 배양액과 쌀겨를 왕겨에 혼합하여 사체와 매몰하여, 미생물의 번식에 의하여 가축을 분해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하는 방법이다.
2. 호기 · 호열성 미생물 처리요령
 - 가. 땅파기
 - 나. 미생물 배양토 및 배양액 살포
 - 매몰과정 중 비닐파손 시 누출물의 분해를 목적으로 살포(10Kg × 2포)
 - 다. 비닐깔기
 - 라. 공기주입관(브로어) 만들기
 - 공기가 통하는 관(비닐소재)의 양 끝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한다.
 - 관의 양끝에서 불어 넣어진 공기는 관의 중간에서 만나 공기압을 형성함
 - 마. 공기주입관 깔기
 - 비닐위에 공기주입관을 C 형태로 배치시킴
 - 공기는 한쪽에 분당 80L가 공급되어 분당 총 160L의 공기를 주입
 - 바. 미생물 배양토 및 배양액 살포(2차)
 - 비닐위에 2차 살포
 - 사. 혼합왕겨 준비
 - 왕겨 10m³에 쌀겨 3톤, 배양토 10포, 배양액 2톤 혼합
 - 쌀겨는 미생물의 초기 활성화에 쓰이며, 배양액은 왕겨의 수분 조절에 쓰이며 미생물 성장 조건 임
 - 아. 혼합왕겨 깔기 1차
 - 사체 투입전 30Cm 두께의 혼합왕겨 깔기
 - 자. 사체투입 1차
 - 차. 왕겨 2차 깔기
 - 1차 투입된 사체위에 혼합왕겨 2차 깔기
 - 카. 사체 2차 투입

다. 혼합 왕겨를 $\wedge$ 형태로 투입

- 혼합왕겨를 최종 $\wedge$ 형태로 투입
- 사체와 혼합왕겨 투입시 지속적으로 배양토와 배양액 살포
- $\wedge$ 형 매물은 미생물 성장의 표면적을 늘려주며 열보존에 유리함

파. 침출수 관찰관 및 온도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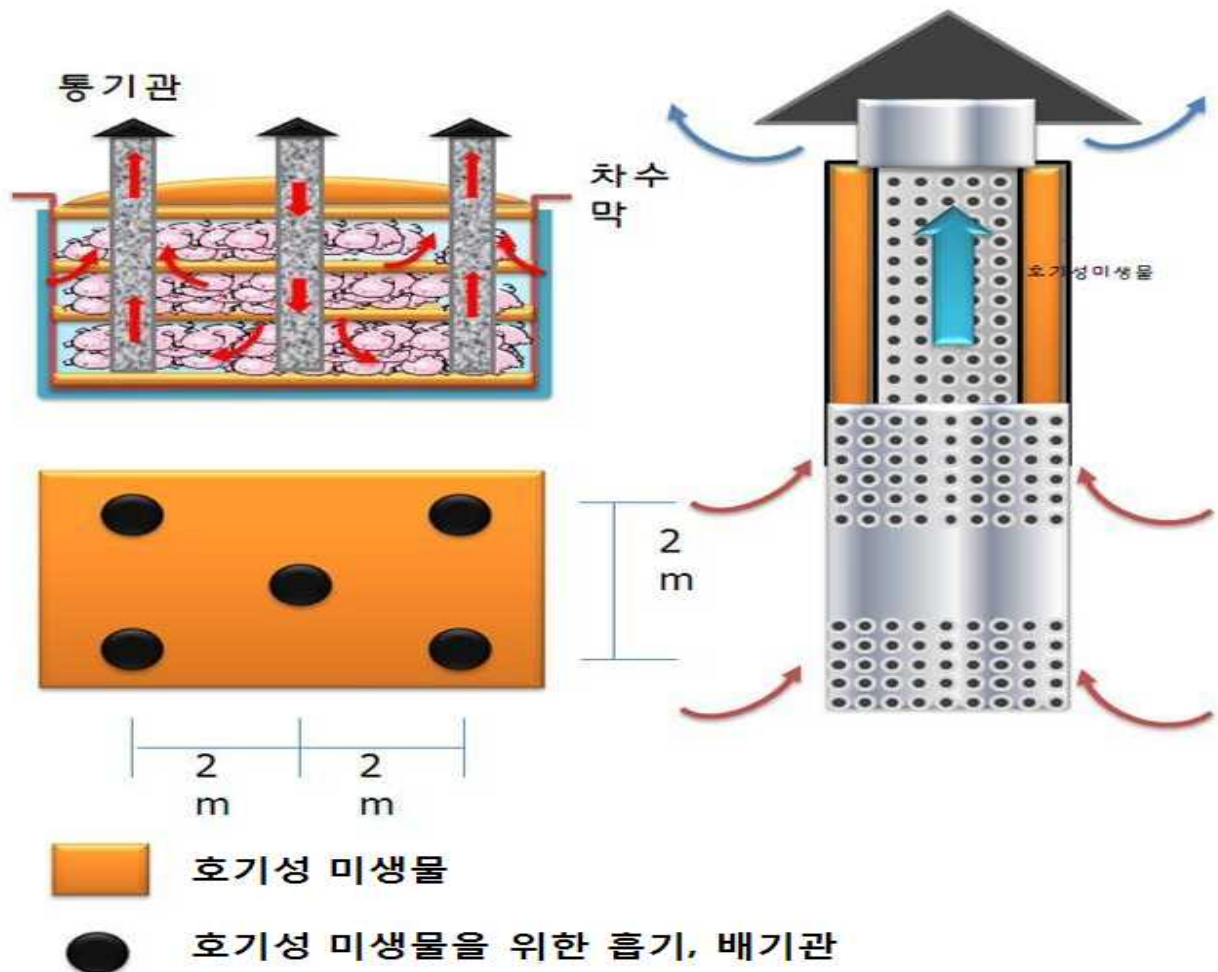
- 관찰관 및 온도계는 매물지 점검을 위하여 설치

하. 비닐하우스 설치

- 우천 대비 비닐하우스 설치

거. 6개월 후 내용물이 분해되었는지 확인한다

□ 미생물 처리방식



10. 역학조사 요령

1. 역학조사 기본체계

- 1.1. 시·군별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에 대해 시도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중앙역학조사반에게 1차 조사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 1.2. 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3 필요시 지역 경찰관, 지역축협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2.1. 역학조사반 구성

- 2.1.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시·도 역학조사반을 구성한다.
- 2.1.2 필요시 지역경찰, 축협, 생산자단체장, 읍면동장 등을 참여시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2. 역학조사는 다음 내용에 대해 실시한다.

- 2.2.1 의사환축 또는 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현황
- 2.2.2 의사환축 또는 환축 발생농장의 농장 일반현황
- 2.2.3 가축의 사육환경·분포
- 2.2.4 감염원인 및 경로
- 2.2.5 발생농장의 전과확산 가능여부(차량·사람·물품 등)
- 2.2.6 발생농가의 방역수칙 등 준수여부
- 2.2.7 그 밖에 해당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된 사항
 -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그 밖에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 등

2.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1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 운영 및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2.3.2 중앙역학조사반 반장은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 검역본부 역학조사과·가축방역센터 직원 및 타부서 직원
- 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 학계 및 관련부처 전문가
-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
- 필요시 지역경찰, 축협, 생산자단체장, 이장 등

2.4. 시·도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2.4.1 시·도 역학조사반은 비상근무체제 운영 및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2.4.2 시·도 역학조사반 반장은 가축방역기관의 방역담당 과장으로하고 다음과 같이 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담당부서 등 가축방역관
- 시·도별 방역기관장은 본소·지소별로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2인 이상 지정 운영
- 시·도 역학조사위원, 학계 및 관련부처 전문가
- 시·도 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자
- 필요시 지역경찰, 축협, 생산자단체장, 이장 등 활용

2.4.3 시·도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이 도착하기 전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6호 서식을 작성한다. 중앙역학조사반이 도착한 후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2.4.4 「환경시료 채취대상 및 채취요령」을 참조하여 다양한 오염 제공원에 대한 시료를 확보한다. 시료 채취시 농장 모식도 등을 통해 채취장소를 기록해야 하며,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5. 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속 역학조사반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역학조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역학조사반 편성 및 임무 등

3.1. 역학조사반장은 발생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조사반을 현장역학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3.2. 현장 역학조사팀

3.2.1 발생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담당

3.2.2 발생 농장의 현장 조사는 발병 원인과 전파경로 파악의 중요한 단서 확보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전파원인 파악의 기본이 되므로 최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

3.2.3 현장조사팀 편성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1조로 구성하며, 필요시 개별 임무 분담

3.2.4 현장 역학조사 전 준비사항

1. 정보수집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이용해 발생농장 기본사항 - 발생농장 기본사항(사육규모, 주변농장 현황)을 KAHIS을 이용 파악 - 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정보 등을 KAHIS을 이용 파악 · 발생농장에서 보유한 출하기록 등과 교차 확인 필요 ② 현장 정보수집 - 마을이장, 축산관련 단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발생농장주의 활동사항 등을 파악 ※ 필요시 추적조사팀에서 사전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2. 출동준비물	① 개인장비 - 신분증(역학조사만원증, 특별사법경찰관지명서 등) - 기록장비(디지털카메라, 노트북, 펜, 기록용 용지, 책받침 등) - 지침서(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질병별 긴급행동지침, 역학조사서 양식) - 연락장비(이동전화 등) - 줄자 등 계측장비 ② 방역장비 - 모자, 1회용 방역복·장화·덧신, 마스크, 멸균장갑, 휴대용소독기(소독약 포함 ; 소독제는 소독 효과가 수분 이내에 빠르게 발휘되는 것을 선택한다), 투명지퍼백(대, 소), 비닐봉투, 기타 필요도구 등

3.2.5 조사방법 등

- 현장 역학조사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발생농장 원인분석 세부 역학조사서」를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수시 추적조사팀과 상호 협조하여 신속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현장상황을 고려, 가축이동 등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조치사항을 선정하여 조사
- 농장주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사육관리인 등 관련 종사자 등과 면담. 다만,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농장주의 재확인을 받음
- 면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즉 역학조사의 중요성, 조사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자를 안심시켜 최대한의 협조를 구함
- 병원체의 유입 및 전파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채취(환경시료 채취대상 및 채취요령 참조)

3.3. 추적조사팀

3.3.1 현장역학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이동사항, 인공수정사, 수의사,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의 인적 및 물적 요인의 타농장 방문 등 이동사항 등 추적조사를 담당

3.3.2 현장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현장역학조사팀에 연락 등의 업무 수행

3.3.3 추적조사팀 편성

-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 질수 있도록 추적조사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추적조사 대상을 부여(가급적 발생농가별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조사)

3.3.4 조사 방법 등

- 현장조사팀이 조사한 출하·사료운송 차량,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의 발생 농장 및 타농장 방문내역을 차량 기사 또는 관련 사업장 담당자에 유선 등을 통하여 조사
- 유선 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문 요청 또는 현장조사팀에 연락하여 직접 방문 조사 등을 실시
- 추적 조사하여 확보된 자료를 현장 역학조사서와 교차 확인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KAHIS에 등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환측발생신고서 등을 참고하여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적조사팀에서 현장조사 실시

3.4. 역학분석팀

3.4.1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경로를 추정하여, 전파 범위 등을 예측하고 확산 상황을 분석

3.4.2 KAHIS에 등록된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참고1에 따라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검역본부 및 시·도 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3.5. 검역본부 또는 관할 시·도 종합상황실에서는 역학관련농장에 대해 시·도에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3.5.1 시·도에서는 역학관련농장에 대해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통보)한다.

<참고 1>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적용 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오리 등 부화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 기간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부화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화장에 대한 종란, 부화중인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

- 1) 동 기간 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하고,
- 2) 오리 병아리는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당해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보관 중인 종란이 있는 경우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종란은 폐기하지 않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병아리 출하를 제한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쳐 병아리 반출 가능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출입구 및 이동통로를 달리하는 시설에 부화·보관 중이며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닭의 경우 임상검사 필요시 혈청·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성된 알(식용란)의 수집·보관 장소 등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나. 식용란수집판매장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 유통가능

6. 발생농장의 환측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식용란운반·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출하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출하 금지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
 -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이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가금
 - 가축방역관이 도축·출하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

4. 역학조사 실시 및 범위

- 4.1.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의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4.2.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
- 4.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감수성 동물
- 4.4. 살처분 대상가축 및 보호·예찰지역 오리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 4.5. 상기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4.6.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 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세부지침에 따른다.

11.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

1. 지급목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산지 시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긴급방역조치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있음

2. 지급대상

2.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주사·주사 표시·약물목록·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조치를 명한 경우)

2.2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하여 살처분한 가축

2.3 법 제23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로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 사료, 알 등(이하 “오염물건”이라 함)

3. 지급요령

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평가금액을 지급하되, 신고지연 또는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3.1.1 살처분 가축 : “보상금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함)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

3.1.2 오염물건 :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 다만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

3.1.3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름

3.1.4 지방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일부 부담

- 매몰보상금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2 지급절차 :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보상금 신청 → 시·도에 전달 → 보상금 지급

- KAHIS를 통해 관련 사항을 등록하는 등 전산 관리한다.

4. 평가반 구성(반장 포함 5명 이내) 및 임무

4.1 반장 : 살처분 농장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과장

4.2 반원

-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1명
-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 1명
- 지역축협 또는 업종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축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
-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1명

4.3 임무(인력부 족으로 다른 공무원이 대행하는 경우 포함)

- 매몰전 살처분 대상 가축의 확인 : 개체수 및 개체별 특성 조사, 개체식별번호(이표) 확인 등
- 보상평가 증빙자료 확보
 - 살처분 대상가축 사진 : 계사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2장 이상 촬영(계사 등을 표시하여 촬영)
 - 살처분 대상가축 동영상 :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 보상평가 근거자료 확보 : 사육일지, 사료구입실적 등 확보가능한 모든 자료
- 차등지급요건 해당여부 조사 : 소독기록부 등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5.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함

12. 청소 · 세척 및 소독요령

1. 반구성 및 임무

1.1 인적구성

- 시장·군수는 소속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하거나, 관할 시·도 방역기관장에게 소속 가축방역관 파견을 요청한다.
-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및 작업인부 등으로 구성하며 소독 지원반을 구성 시 인원은 작업물량에 따라 조정한다.

1.2 가축방역관의 임무

- 소독제 선정, 소독절차에 대한 기술적 자문
- 청소·세척·소독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기술적 보완 검토

1.3 감독관(시·군 관계관)의 임무

-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현황 파악
- 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준비, 소독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
- 구성원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지휘·감독
- 세척 및 소독 집행
- 소독약품 살포시 주의사항 교육

2. 기구 및 장비

- 장비·차량 등 : 스키로더, 포크레인, 리어카, 삽, 곡괭이 등
- 세척기구 : 고압세척기나 물 호스, 브러시, 수세미
- 소독제, 생석회
- 살포기구, 소독용구, 소독조, 소독통(드럼통), 바가지 등
- 피복, 장화, 모자,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고글)
- 방역표지판

3. 청소·세척 및 소독절차

3.1 농장출입구 통제, 세척 및 소독

- 3.1.1 가축방역관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중 양성농가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발생지(농장) 소독

3.2.1 감독관의 사전점검

- 발생지 사전답사
- 모든 사건이나 조치, 기타 제반사항 등 기록
- 필요한 시간 추정 및 소독절차 작성

3.3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중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소독 실시 요령

3.3.1 발생농장 축사 1단계 소독

3.3.1.1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

- 축사 내 바닥 및 분뇨에 소독처리가 되지 않은 농가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생석회수 살포 또는 유효 소독제를 충분히 살포한다(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실시).

3.3.1.2 훈증소독

- 과망간산가리 및 포르말린용액을 이용 훈증소독 또는 포르말린훈증제(K-7 블록, Formaster)로 소독을 실시한다(축사내 밀폐가 중요하며, 7시간이상 실시).

※ 청소·소독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의한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하고 훈증소독시 화재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3.3.1.3 환기

- 훈증소독을 실시한 다음에는 포름알데하이드 냄새를 제거한다(훈증소독을 오전에 실시하고, 환기는 7시간 경과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실시).

3.3.2 발생농장 축사 2단계 소독

3.3.2.1 청소

- 축사 내 천장 → 벽면 → 케이지 → 바닥의 순서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동일한 순서로 청소를 실시한다.
- 축사 내 분뇨, 털, 각종 물품 등을 청소한다.
- 구석진 곳 등 제거하기 어려운 분뇨 딱지는 토치 또는 램프로 소각한다.
- 축사 내 청소과정에서 나온 분뇨, 털 등은 소각 또는 매몰, 발효 처리한다.

3.3.2.2 세척/소독

- 축사 내로 연결되는 전선을 외부와 차단하여 분무소독에 의한 합선 등 화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축사 내 전기 콘센트, 스위치 등은 비닐로 봉하고, 세척·소독 실시후 소독수건으로 문질러 소독을 실시한다(전기 콘센트 등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거나 자연 건조시킴).

- 소독액으로 천장 → 벽면 → 케이지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이 끼어 있으므로 소독약 농도를 높여 희석한다.
- 소독액으로 세척·소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한다.

3.3.2.3 훈증소독

- 축사 출입문, 환기통을 완전히 닫고,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밀폐시킨다.
- 7시간 이상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은 동절기에는 소독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높이거나 축사 내 열풍기 사용(이때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을 권장한다.

3.3.3 발생농장 축사 3단계 소독

- 2단계 소독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청소 등)을 보완한다.
-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3.3.4 발생농장 축사 4단계 소독

- 3단계의 소독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청소 등)을 보완한다.
-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 4단계 소독을 완료한 후 입식시험 가능여부를 점검

3.4 농장 내 사용약품·창고 등과 거주자에 대한 소독 실시요령

3.4.1 농장 내 사용약품

- 농장 내 사용하다 남아 냉창고에 보관중인 사용약품에 대하여는 매몰 등으로 폐기하거나 창고 등에 모아 밀폐 훈증소독 또는 소독수건 등으로 닦아 소독을 실시한다.

3.4.2 농장 내 창고·사택·사무실

- 농장 내 사료창고·축산도구 창고·사택에 대하여는 밀폐시키고,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 내 사무실(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4.3 농장내 거주자(작업자)의 의복 등

- 농장내 거주자 및 작업자의 신발(장화 등)·작업복·장갑·모자 등은 소독수에 담구어 소독하고, 세탁하여야 한다(가능하면 매물 또는 소각을 권장).

3.5 분뇨 처리장비·도구 등 소독 실시 요령

3.5.1 스키로더·차량 등

- 분뇨처리에 사용된 스키로더 등 운반장비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즉시 내·외부에 묻어있는 분뇨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과 충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3일간 실시하고 반출을 허용한다.
- 다른 발생농장의 분뇨처리에 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1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 분뇨처리에 동원된 장비는 7일간 다른 비발생 가금사육농장 및 관련시설에의 이동을 금지한다.
- 농장 밖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출입시마다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운반시 분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 등의 장비의 경우 작업자(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에 대하여도 소독수건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축주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접촉부위를 철저히 소독한다.

3.5.2 분뇨처리 도구

- 삽·괭이·리어카 등 농장내 사용도구에 대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수회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3.5.3 소독장비

- 축사내·외 및 주변 소독에 사용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에 대하여도 소독액을 이용하여 운반기구·고무호스·손잡이 등을 소독한다.

3.6 농장 주변지역 소독실시요령

- 농장 진입로, 농장내 주요 통행로, 축사주변, 분뇨처리장 등 오염 가능지역에 대하여 소독액이 흠뻑 젖도록 수회 반복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3.7 살처분 장소 소독

- 살처분이 완료된 후 살처분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살처분에 사용된 기구·장비 또는 운반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3.8 매몰 장소 소독

- 매몰이 완료된 후 매몰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매몰에 사용된 장비와 운반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또한 살처분 장소로부터 매몰 장소에 이르는 운반 경로를 철저히 소독한다.
- 사체를 소각한 경우 소각장은 사체가 완전히 소각된 후 소독을 실시한다.

3.9 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소독

3.9.1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은 다음과 같이 소독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모든 도체는 폐기조치
- 계류장 및 가축의 운반에 이용된 모든 차량을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세척한 다음 다시 소독액으로 최종 소독을 실시한다.
- 도살실·작업실, 식육 또는 장비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장소 또는 용기는 식품취급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고압세척을 실시한다.
- 탈의실·옷장 등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도축 설비는 고온스팀 등의 방법으로 소독한다.

3.9.2 시·도지사는 당해 도축장의 세척·소독이 종료된 후 소독대상의 건조상태 등을 검사하여 소독이 효과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축장 영업자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3.10 청소·세척작업 인력관리 및 사용장비 등 방역조치 요령

-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의 4. 살처분 참여인력에 대한 방역조치 참조

3.11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은 발생농장의 소독 실시요령중 1, 2단계 소독 방법을 준용한다.

3.12 부화장의 소독

3.12.1 AI 양성이 확인된 부화장은 발생농장의 소독실시요령 4단계 소독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음성 부화장은 발생농장의 2단계 소독실시요령에 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4. 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

4.1 소독제의 적용범위

- 소독제의 종류별 적용범위는 표 4.1과 같다.

4.2 소독제의 사용

4.2.1 비누 및 세정제

- 비누 및 세정제는 세척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독효과를 반감시키는 유기물질,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비누나 세정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소독효과가 있다. 더운 물, 브러시, 수세미 등을 사용하면 세척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4.2.2 염기제제(alkalines)

-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나 탄산소다(sodium carbonate)가 사용된다. 비용이 저렴하여 대단위 소독에 적절하다. 세척과정에 나오는 지방이나 유기물질에 대한 비누화작용을 가지고 있어 유기물질이 많은 축사, 가옥, 뜰, 하수구, 쓰레기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성소다의 경우 2%, 탄산소다의 경우 4%가 되게 한다.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페인트를 벗기기도 하므로 사람 및 차량, 기계·기구 소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생식회는 동물용의약품은 아니지만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한다.

4.2.3 산성제제(acids)

- 기구류 등에 폭넓게 적용이 되며 다른 강산에 비하여 독성이 적다.
- 염산용액은 2%로 하여 사용한다. 소독효과는 10분이면 가능하다. 콘크리트나 금속성 기구류에 대해 부식성이 있으며 다른 소독제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만 사용하는게 좋다.

4.2.4 알데하이드제제(aldehydes)

-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는 일반적으로 1~2%의 농도로 사용된다. 이것은 유기물질에 일부 오염되어 있어도 소독에 효과적이다. 금속성 물질에 대해서는 부식효과가 있고 생체에 독성이 있으며 대단위로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포르말린(formalin)용액은 포르말린을 8%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은 축사내부나 차량내부 등 공간소독에 탁월한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소독공간은 건조하고, 밀폐되어야 한다. 포름알데하이드 가스는 15~24시간 동안 소독을 요하며 독성이 강하고 소독 후에는 완전히 환기시켜야 한다.

4.2.5 산화제

- 산화작용에 의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주로 염소계 또는 산소계 성분으로 구성된다.
- 차아염소산은 중성 pH 6~9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유기물이 있을 경우 소독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 이염화이소시아나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은 차아염소산에 비해 유기물이 있어도 비교적 효과가 있다.

- 버콘 S와 같이 복합염 및 산류의 복합소독제도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생석회는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토양 소독시 살포량은 m²당 300~400g이 적당하다.

4.2.6 그 밖의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제제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가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

4.3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4.3.1 발판 및 차량소독

- 소독조는 신발이나 차량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주당 2~3회 교환해 준다. 염기제제, 알데하이드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차량 소독에는 주로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 및 산성복합제를 사용토록 한다.

4.3.2 토양 및 바닥소독

-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의 소독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한다.
- 생석회는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이며 산도(pH) 11~12의 강염기로서 평당 약 1kg을 뿌려준다. 물을 바닥에 먼저 뿌린 후 생석회를 뿌려주거나, 물로 5% 생석회 액을 만들어 살포한다. 유제액을 만들 때는 물을 먼저 넣고 생석회를 조금씩 넣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물기가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은 모두 치워야 한다. 물과 접촉하면 200℃ 정도의 열을 내면서 강알칼리와 열에 의해 소독효과를 보이며 사체에 뿌리면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농가에서 생석회를 안전하게 취급·사용하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통보한다.

4.3.3 생석회 취급시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할 것
- 습기나 물과 접촉시 높은 열이 발생되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 사용할 때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 후 취급할 것
-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을 피하고 예리한 물건과 혼합 저장을 피할 것
- 보관중 던지거나 포장을 손상시키지 말고 개봉한 제품은 사용후 밀폐(비닐로 덮어 밀봉)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할 것

4.3.4 분뇨소독

- 분뇨는 농장내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매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다.
- 발생농장의 매몰하지 못한 분뇨에 대하여는 30일이 경과되고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농장내에 매몰하거나, 60일이 경과되고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 밖으로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4.4 이동통제초소의 소독실시

- 차량바퀴를 소독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깔거나 도로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양옆에 분무소독기를 설치한다.
-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선을 축소한다.
- 소독약은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5 소독제 선택 시 주의사항

- 4.5.1 소독제는 소독목적물에 유효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6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낼 것
- 차량 소독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할 것
- 농산물 등을 적재한 차량은 비닐 등 사전 조치 후 소독할 것
-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우의를 사용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표 4.1 소 독 제 의 적 용 범 위

소 독 제		주 요 적 용 대 상
염기(알칼리) 제제	가성소다, 탄산소다	축사, 시설, 폐수, 분뇨, 기계 및 차량, 의복 사람 및 축체에 사용금지 *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금지
	생석회	사체, 동물이 없는 축사 바닥 및 토양 사람·차량이 많은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음
산성제제	염산(Hydrochloric acid)	분뇨
	구연산(Citric acid)	분뇨
알데하이드계	글루타알데하이드	생체에는 사용금지
	포르말린	생체에는 사용금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formaldehyde gas)	밀폐공간(축사, 창고, 사택, 차량 등)
산화제	차아염소산	축사, 기구, 숙소, 의복
	이염화이소시아나산나트륨	축사, 기구, 숙소, 의복
	기타(복합염류)	축사, 기구, 숙소, 의복(소독제별로 다름)
비누 및 세정제		축사, 시설, 숙소, 기계, 차량, 의복
※ 주요적용대상은 소독제 성분 조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함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운용요령

1. 기본원칙

- 1.1 발생 시·군 및 연접 시·군은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장소를 운영한다.
- 1.2 발생농장, 발생지 및 밀집지역에는 통제초소에 소독시설을 동시에 운영한다.
- 1.3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를 설치 운영한다.
- 1.4 축산 관련차량은 방역대별 또는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별 축산차량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1.5 통제초소는 축산 관련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확인 후 통과시켜야 한다.
- 1.6 축산 관련차량이 방역대 또는 시·군 간을 통과하는 경우 방역대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 통과하여야 한다.
 - * 전국 모든 시·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시·군별 3개이상의 거점별 소독장소를 미리 선정하여 사전에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한다.

2. 통제초소의 선정 및 설치·운영 요령

2.1 통제초소의 설치장소 선정

- 2.1.1 통제초소는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시·군의 축산밀집지역, 보호지역과 예찰지역이 만나는 지점, 예찰지역이 끝나는 지점, 발생시·군 및 시·도와 연접한 시·군 및 시·도, 전국 모든 시·군 및 시·도의 주요도로에 설치하고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 발생지 및 발생 시·군 축산밀집지역의 통제초소는 통제와 소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2.1.2 통제초소는 각 방역지역 간 주요 경계되는 지점에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를 선정하되 우회로가 없어야 한다.
- 2.1.3 도로 옆에 컨테이너 등 설치할 수 있고,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곳으로 선정한다.
- 2.1.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 방향으로 200m이상 시야가 확보 가능한 직선도로여야 하며, 경사진 곳은 제외한다.

2.1.5 가급적 인근에 식당이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로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부득이 가로등이 없을 경우 간이 가로등을 설치한다.

2.1.6 바람이 많이 불고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 위나 소독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과수원, 농작물 재배 지역은 제외하고, 대로나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1.7 통제초소의 위치와 설치 갯수는 시장·군수가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및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2.2 통제초소 설치요령

2.2.1 200m 전방에 서행유도를 위한 경광등 및 서행 안내판을 설치한다.

2.2.2 차량속도 감소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긴급가축방역을 위한 안내문을 설치한다

2.2.3 차선 축소(원활한 통제를 위해 1차선을 권장)를 위해 차단막 및 안전유도로봇(마네킹)을 설치할 수 있다.

2.2.4 컨테이너는 최소 25ft이상으로 하여 난로, 식수, 침구류, 방역복, 무전기 등을 구비하고, 초소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2.2.5 발생농장·발생지 및 축산밀집지역의 통제초소는 사람 소독이 가능한 대인소독장비를 설치하고, 방역복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할 수 있는 간이 소각로를 인근에 설치한다

2.2.6 발생농장·발생지 및 축산밀집지역의 소독을 병행하는 통제초소는 소독약이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 등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둔덕이나 저류조를 설치한다.

2.2.7 통제초소 설치(예시)

- ① 경광등(서행 안내판) ⇒ ② 차량통제 안내문 ⇒ ③ 차단막 및 방지턱



경광등



서행 안내판



차량통제 안내문



차단막



대인소독장비



간이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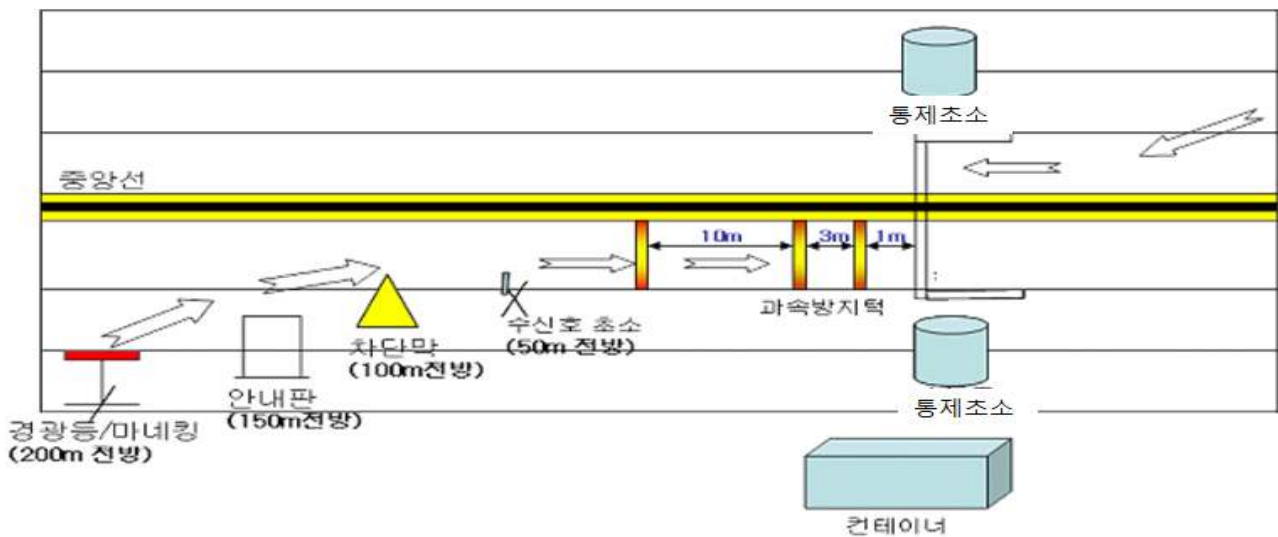
2.2.8 통제초소 설치 규격 기준은 아래를 참고한다.

품목	규격	수량	비 고
경 광 등	○980mm×170mm×160mm	1대	○ 적색 LED 야간점멸방식
마 네 킹	○690mm×470mm×1820mm	1대	○ 양면 제작으로 전후방 동시사용이 가능하며 로봇 양팔 끝에 안내신호등 또는 경광 등 탈부착이 용이 ○ 머리 및 몸체는 성형제품이며 몸체에 방수형 우의착용, 이동시 상체를 접을 수 있음 ○ 하부에 2개의 바퀴부착
라 바 콘	○380mm×380mm×700mm	30개	○ PE 재질, 야광지 모래주머니 포함
안 내 판	○570mm×60mm×1000mm	4개	○ 부식방지를 위한 PE 재질 ○ 안내글씨 : 「방역작업중 & 서행운행」
차 단 막	○2000mm×75mm×2700mm	1조	○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 각파이프를 틀 제작 ○ 햇빛과 동파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통 제 초 소	○6000mm×3000mm×2500mm	1개	○ 재질 및 구성 : 철제콘테이너, 창3개(방충망 포함), 전기시설, 환풍기 판넬 시공 ※ 초소근무자 및 주변시설 확인을 위한 라이트 설치
과 속 방 지 텍	○1000mm×500mm×50mm	16개	○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무 재질, 아스팔트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칼블록을 통해 고정

2.2.9 통제초소 구성품(예시)

경광등	마네킹	라바콘
안내판	방지턱	

2.2.10 통제초소 설치 모식도



2.3 통제초소 운영요령

2.3.1 통제초소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과를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3.2 통제초소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이나 접촉을 제한한다.

2.3.3 통제초소별 근무인원은 3개조로 24시간 근무한다.

- 1개조는 5명(공무원 1, 군인 2, 경찰 2)으로 3개조 총15명(공무원 3, 군인 6, 경찰 6명 등)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초소 근무인원은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3.4 통제초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 공무원 : 전체 총괄, 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 군인 등 : 소독실시 여부 확인 등 축산관련 차량 통제 업무(밀폐된 탑차의 경우 내부를 확인)
- 경찰 : 교통통제

2.3.5 통제초소 근무자는 제4장 14.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을 숙지한다.

3. 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의 선정 및 설치·운영 요령

3.1 거점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의 설치

3.1.1 거점소독장소는 보호지역내에 3곳 이상, 예찰지역내에는 5곳 이상을 설치하며, 발생시군 및 시도와 연결한 시군 및 시도는 도로 등 지리적 상황에 따라 설치 갯수를 정한다.

- 전국 시·군에는 3개 이상의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한다.

3.1.2 거점소독장소는 넓은 공터를 확보하거나 차량통행이 적은 지선도로를 차단하여 확보하거나 과적 화물차량 단속초소 등을 활용하여 소독장소를 설치한다.

3.1.3 거점소독장소의 위치와 설치 갯수는 시장·군수가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 하여 선정 및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3.2 거점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설치요령

3.2.1 거점소독장소는 넓은 공터가 확보되는 장소(주차장, 과적차량단속지등), 통행량이 적은 지선도로 중 넓은 공터가 있는 곳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며, 포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한다.

3.2.2 소독장소 입구에는 소독실시 관련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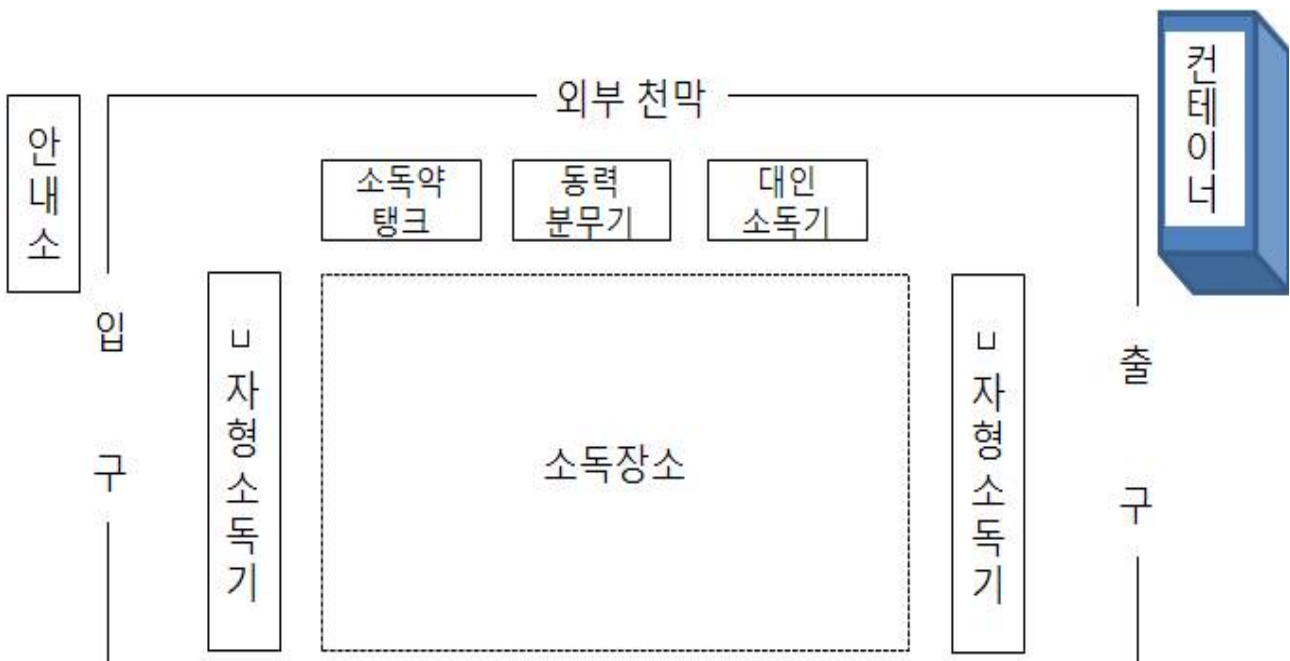
3.2.3 소독장소의 입구와 출구는 별도로 설치하며, 소독장소의 입구에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을 포함한 U 자형 소독기를 설치를 권장한다.

3.2.4 소독장소에는 U자형 소독기, 고온·고압동력분무기를 설치하여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내부 소독을 위한 간이 소독기와 대인소독기를 구비한다.

- 과열 및 고장에 대비하여 교대로 가동할 수 있게 충분한 동력분무를 확보한다.

3.2.5 겨울철에는 소독시설이 얼지 않게 보온설비(천막, 열풍기, 난로 등)를 한다.

3.2.6 소독장소 설치 모식도(예시)



3.2.7 거점소독시설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품 목	규 격	수량	비 고
□ 자형 소독기	○ 4500mm×250mm	2개	○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 각파이프로 제작 ○ 측면 및 하부소독 노즐 ○ 결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처리
외부 비닐 천막	○ 동파 방지용	1개	○ 결빙 및 동파방지를 위해 소독시설 외부에 설치
안내판	○ 70mm×60mm×1000mm	2개	○ 부식방지를 위한 PE 재질 ○ 안내글씨 : 「축산차량 소독실시중」
컨테이너	○ 6000mm×3000mm×2500mm	1통	○ 재질 및 구성 : 철제컨테이너, 창3개(방충망 포함), 전기시설, 환풍기 판넬 시공 ※ 초소근무자 및 주변시설 확인을 위한 라이트 설치
고압분무기	○ 7.5HP 모터, 100A 분무기	2대	○ 고압호스(20M) 포함, 기계실내 비치

3.2.7 □자형 소독기(예시)



3.3 거점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운영요령

3.3.1 소독장소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과를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3.2 소독장소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이나 접촉을 제한한다.

3.3.3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시군의 축산밀집지역은 통제초소와 소독장소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3.3.4 소독장소별 근무인원은 3개조로 24시간 근무한다.

- 1개조는 4명(공무원 1, 소독인력 3)으로 3개조 총12명(공무원 3, 소독인력3)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소독장소의 근무인원은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3.3.5 소독장소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 공무원 : 전체 총괄, 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소독필증 발급
- 소독인력 : 차량 내외부 소독, 대인소독기 운영, 입구 □자형 소독기 운영

3.3.6 소독장소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축산관련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한 후 차량번호, 통과일시, 목적 등을 정확히 별지 8호서식의 “거점별 축산차량 소독장소 소독대장”에 기록 후 별지 9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휴대토록 지시한다.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
-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록
-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급수 차량의 공급시간, 연락처 등을 사전 파악
- 기온저하로 분무소독 불가 시 소독시설 내부에 온풍기 등을 가동한다.

3.3.7 소독장소 근무자는 4장 15. “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 근무요령”을 참고 한다.

3.3.8 거점별 축산관련 차량 세척·소독 요령

- 축산관련차량이 거점별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 GPS 이용, 축산차량 선별기능 활용을 통한 자율적 축산차량 소독 유도방안

- GPS 축산차량 접근 ⇒ 거점소독장소 진입 알림 메시지 전송(운전자) [1차 1km → 2차 0.3km] ⇒ 소독장소 전광판 차량정보 표시(차량번호 · 차량유형 · 초소접근거리)
- 축산관련차량은 U자형 차량 소독기로 차량 외부를 소독하고, 본 소독장소로 이동시킨다.

* U자형 소독기(예시)



- 소독장소에서 고압 분무기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를 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i)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ii)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줄 것
 -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비료생산시설(공동처리장)을 통해 처리
 - iii)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보호지역, 예찰지역, 시·군간, 시·도간 이동시에는 해당 지역별로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소독을 받고 해당 소독장소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 소독장소를 나갈 때에는 축산관련차량은 U자형 차량 소독기를 통과하도록 한다.

14.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1. 기본원칙

- 1.1. 통제초소 근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통제초소가 “발생지”, “보호지역”, “예찰지역”, “야생조류예찰지역”중 어디에 위치하는 가를 정확히 파악한다.
- 1.1. 통제초소 근무자는 동 근무 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1.1. 사람 및 차량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 통행이 허용된 차량의 경우에는 방역대별 소독필증 휴대여부를 반드시 확인, 기록하고 이동을 허용한다.

2.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발생지역)

2.1 발생지에서 나오는 차량 및 사람

- 2.1.1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밖 진출을 금지한다. 다만, 가금류 가축이외의 축산관련 차량 및 사람에 대하여는 시·군 가축방역관이 위험성을 평가하여 통행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중앙 초동대응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 2.1.2 차량의 마을 밖 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장의 관계관(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세척·소독을 실시한 후 통행을 허용한다.
 -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은 손과 신발·옷은 소독 실시
 - 외부로 통행이 허용된 차량은 발생지내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발생지 밖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 통제초소 근무자는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 및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2.1.3 생필품 공급을 목적으로 마을에 진입했던 차량은 관계관(공무원)의 감독 하에 세척·소독 실시하고 통행을 허용한다.
- 2.1.4 통행자에 대하여는 세척·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의 농장이나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

2.2 발생지로 들어가는 차량 및 사람

- 2.2.1 발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축산관련 차량은 보호지역의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8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발생지내로 이동하여야 한다.
- 2.2.2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진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통행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중앙 초동대응팀의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2.2.3 사람의 마을 방문은 관계관(공무원)과 해당 마을 거주자 이외는 통행금지

- 마을 거주자도 발생농장의 방문은 금지

3. 발생지역 외곽부터 반경 3km이내지역(보호지역)

3.1 보호지역에서 나오는 차량 및 사람

3.1.1 보호지역에서 외부로 통행이 허용된 비 가금류 축산관련 차량은 보호지역내 소독 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8호 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보호지역 밖으로 이동하여야한다.

- 소독장소 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한다.

3.1.2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을 싣고 나오는 차량은 통행금지

- 다만, 수매, 도태 및 AI검사결과 음성인 가금을 도축장으로 출하할 목적으로 출하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 허용

3.1.3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가축분뇨 및 퇴비, 사료,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과 관련된 차량은 통행금지

- 다만,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외에 다른 일반 장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시·군에서 사전에 보호지역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함)에 대해서는 소독필증 확인후 통행 허용

3.1.4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축산물을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3.1.5 비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은 소독필증 확인 후 통행 허용

3.1.6 기타 화물차량과 승합·승용차량은 통행 허용

3.2 보호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및 사람

3.2.1 보호지역으로 통행이 허용된 비 가금류 축산관련 차량은 예찰지역내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9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보호지역으로 이동하여야한다.

3.2.2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을 싣고 들어가는 차량은 통행금지

3.2.3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축산물을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3.2.4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가축분뇨 및 퇴비, 사료,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과 관련된 차량은 통행금지

- 다만,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 외에 다른 일반 장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시·군에서 사전에 보호지역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함)에 대해서는 소독필증 확인후 통행 허용
- 보호지역 지정 도축장에서 처리된 정육을 운반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 허용

3.2.5 도축장 출하 가축과, 전용사료하치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번호를 기재 후 진입허용

3.2.6 기타 생활필수품·육류 등 관리지역안 주민의 의식주와 관계되는 차량은 진입 허용하고, 단 육류 적재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3.2.7 비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은 소독필증 확인 후 통행 허용

3.2.8 농장 관리자외의 사람은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

4. 보호지역외곽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예찰지역)

4.1 예찰지역에서 나오는 차량

4.1.1 예찰지역에서 외부로 통행이 허용된 축산관련 차량은 예찰지역 내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8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예찰지역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4.1.2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을 실고 나오는 차량은 통행금지

4.1.3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및 퇴비, 사료,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과 관련된 차량은 소독필증 확인 후 통행 허용

4.1.4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실은 차량 및 비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은 소독필증 확인 후 통행 허용

4.1.5 기타 화물차량과 승합·승용차량은 통행 허용

4.2 예찰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4.2.1 예찰지역으로 통행이 허용된 축산관련 차량은 예찰지역 밖의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8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예찰지역 내로 이동하여야 한다.

4.2.2 닭, 오리 등 가금류 가축을 실고 들어가는 차량은 통행금지

4.2.3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실은 차량 및 비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은 소독필증 확인 후 통행 허용

4.2.4 도축장 출하가축과 사료를 적재한 차량은 차량번호를 기재 후 진입허용

4.2.5 기타 생활필수품·육류 등 오염지역안 주민의 의식주와 관계되는 차량은 진입을 허용한다. 다만, 육류 적재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4.2.6 농장관리자외의 사람은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

5. 방역지역외의 지역에서 이동하는 차량

5.1 방역지역 이외의 축산관련차량은 해당 시·도/시·군에서 운영하는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5.2 시·도/시·군은 외부의 축산관련차량이 관내로 진입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통행을 허용하고, 관내 소독장소를 안내한다.

[참고]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조치대상

구분	대상 (사람 포함)	보호지역(3km)	예찰지역(3~10km)
가금류 가축	닭, 오리	농장밖 이동금지(도태 또는 수매 제외)	농장밖 이동금지(도태 또는 수매 제외), 과밀우려로 허용 한 경우 제외
가축시장, 도축장	-	폐쇄(지정도축장 제외)	폐쇄(지정도축장 제외)
	내장 등 부산물	소독·폐기(열처리시 허용)	소독·폐기(열처리시 허용)
	정육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예냉· 산도 처리시 유통허용	유통허용(예냉·산도 처리된 정육)
사료	-	지정차량 소독 후 통행허용	소독 후 통행허용
분뇨	가축 분뇨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경우 소독 후 반출허용	소독 후 반출허용
음식물 쓰레기	-	가금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차단	소독후 통행허용
차량	가축, 사료, 가축분뇨, 식육, 도축부산물,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통행차단(지정차량은 허용)	가금류 수송차량 통행금지 (지정도축장 출하차량 소독 후 허용)

15. 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 근무요령

1. 소독 실시 안내

- 1.1 소독장소 근무자는 축산 관련차량이 소독장소에 들어올 경우 방역지역별 또는 관내 소독장소의 위치를 안내한다.
- 1.2 아래의 방역지역별 통과하거나 시·군 및 시·도간 이동시 거점별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함을 축산관련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 발생지 ↔ 보호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 보호지역 ↔ 예찰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 예찰지역 ↔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시·군간 이동하는 경우
 - 시·도간 이동하는 경우

2. 소독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 2.1 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는 소독약품으로 인해 주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2.2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는다.
- 2.3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한다.

3. 소독방법

- 3.1 축산관련차량이 거점별 소독장소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 3.2 축산관련차량은 U자형 차량 소독기로 차량 외부를 소독하고, 본 소독장소로 이동시킨다.
- 3.3 소독장소에서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차량바퀴 등)를 세척·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3.4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3.5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6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3.7 소독작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별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8 보호지역, 예찰지역, 시·군간, 시·도간 이동시에는 해당 지역별로 축산관련차량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소독을 받고 해당 소독장소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3.9 소독장소를 나갈 때에는 축산관련차량은 U자형 차량 소독기를 통과하도록 한다.

4. 동결기 소독방법

4.1. 겨울철에는 소독시설이 얼지 않게 소독시설 밖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열풍기 및 난로를 설치한다.

4.2. 소독장비는 동결기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포함된 U 자형 소독기를 설치한다.

4.3. 소독 후 인근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살포한다.

4.4. 기온이 섭씨 0℃이하일 경우 차 유리를 소독하면 결빙됨으로 소독 이후 반드시 건조하고 통행하도록 안내한다.

4.5. 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현재 개발된 것이 없으나, 개발될 경우 혼합하여 사용한다.

16.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반 및 처리요령

1. 소각·매몰 또는 렌더링 처리를 위한 가축의 운반요령

1.1 가축방역관은 다음 조치사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을 운반할 수 있도록 지시, 감독 및 확인하고 최종조치가 완료된 후 신속히 방역조치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1.1 살처분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 안에는 운반 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2 소각·매몰 장소 또는 렌더링 처리시설로 살처분 가축(사체)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1.1.3 가축의 사체를 적재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작업에 사용한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을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1.1.4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살처분 가축이 처리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과정(적재·운반·하역과정, 출발 전·인계 후 차량소독 등) 및 사후처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1.1.5 운반차량은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1.1.6 가축의 사체로부터 추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역한 즉시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마지막 운반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간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7 가축의 사체 하역작업에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에 대하여도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1.1.8 살처분한 가축의 운반에 참여한 사람은 제4장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렌더링 처리시 방역조치 내용 및 준수사항

- 2.1 렌더링 처리시설의 경영자는 살처분한 가축(사체)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2.2 렌더링 작업자는 사체를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장내로 이송하여야 한다.
- 2.3 렌더링 처리장에서는 처리시설의 1회 용량 이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4 렌더링 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은 처리되지 아니한 다른 사체(또는 사체의 부산물)와 접촉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체를 운반한 동일한 차량으로 운반하는 등 방역상 위해가 있는 방법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 2.5 사체를 운반하는 자 및 처리장의 경영자는 사체 및 처리 부산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매회 처리온도 및 소독실시내용 등 위생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가축방역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6 처리시설의 경영자(관리자)는 작업 전·후와 휴식 중에 유효 소독제로 작업기구, 운반차량, 처리장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 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신발·모자 등을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하며 깨끗이 목욕한 다음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가축의 지정도축장 출하 시 방역요령

- 3.1 방역지역 내의 이동제한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승인 없이 이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수매 도축 등의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운반되어야 한다.
 - 가축방역관은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임상검사 결과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제4장 3.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 운반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및 하차시에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다.

-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출하가축이 도축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과정 (적재·운반·하역과정, 출발 전·인계 후 차량소독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이 출발하여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하여야 한다.

3.2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로 넓게 덮는 등의 오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안에는 운반 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3 일자별 이동두수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7. 사료 공급요령

1. 사료공급요령

1.1 발생지 반경 3km이내 지역(보호지역)

1.1.1 사료공급 차량진입

- 사료공급에 필요한 적정수의 차량(벌크사료 운반차량, 지대사료 운반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되 가금류 이외의 가축에 대한 사료차량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한다.

1.1.2 사료공급 체계

- 관리·보호지역에 공급하는 모든 사료차량은 시·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별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 관리·보호지역내에 사료운송 차량을 지정된 차량을 고정 배치하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농장별 공급한다.
- 사료 하차장소에 대하여 매일 수회 소독 실시. 사료공급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다.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하여 전달하되 사료를 전달하는 일정장소는 사료공급을 전후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벌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하고, 부득이하게 농장내에 들어갈 때에는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농장 관계자와 접촉 금지(악수 등), 출입전후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은 농장주가 확인한 후 수령·보관하며,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 차량의 내외부 소독여부는 농장주가 확인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1.2 발생지역 반경 3~10km이내 지역(예찰지역)

1.2.1 사료공급차량 진입

- 공급하는 모든 사료차량은 시·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별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1.2.2 사료공급체계 : 사료공급업자가 직접 공급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하여 전달하되 사료를 전달하는 일정장소는 사료공급을 전후하여 소독을 실시

- 벨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하고, 부득이하게 농장내에 들어갈 때에는 차량 운전자는 관계자와 접촉을 피할 것(악수 등), 출입전후 차량에 대해 내외부 소독 등 실시(소독사항에 대해 농장주가 확인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1.3 공급자와 고정배치 차량간의 사료 전달방법

1.3.1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에 사료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고정 배치차량에 사료를 인계하여야 하며, 출발전에 출발 장소·시간, 거점별 소독장소 도착예정시간 등을 사료운반 형태별 고정배치 차량 운행자에게 전화 통보하여야 함
- 공급사료에는 공급대상 농가명, 주소지, 전화번호 및 사료거래내용 등을 표시하여 공급차량에 인계

1.3.2 고정배치 차량은

-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거점별 소독장소에서 인수한 사료에 대하여 농가별 공급현황을 기재(일자별, 공급자명, 수량등)한 후 사료공급자에게 공급 이행상황을 전화 통보

1.4 방역대 외 사료공급

- 사료업체는 사료운반차량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으로 구분 운행하고 소독전담자를 지정하여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2. 사료공급차량 지정

2.1 사료업체는 업체간 조정을 통해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료 지정차량을 신청한다.

2.2 시장·군수는 이동제한지역내 사료공급차량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한다.

2.3 이동제한지역내 사료공급차량 운전자는 지정서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이동제한 지역 출입시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사료공급차량과 운전자는 <참고 1> 사료차량 방역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료하치장, 환적장 설치 및 관리

3.1 설치장소, 입지조건 등

3.1.1 발생시 소재지 시·도를 넘어 운송하는 경우 시·도에서 설치한 환적장 또는 사료 업체에서 설치한(기존의 하치장·물류센터 포함) 환적장을 우선적으로 이용

- 해당 사료업체는 해당 시·도에 환적장 지정 요청하고 <참고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사료공장, 환적장, 하치장에 대한 방역관리사항을 준수한다.
- 시·도에서는 현지 확인 후 소독설비, 예찰지역 여부 및 현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

3.1.2 하치장 및 환적장은 가급적 공급받는 시·도의 예찰지역에 설치

3.1.3 환적장 등은 가능한 차량, 사람의 이동이 적은 곳에 설치

3.1.4 시·도는 관내 환적장 지정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

3.1.5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일정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하치장은 환적장 경유 없이 농장 직송 가능(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운송경로 보고 또는 제출)

4. 관리·보호지역내 사료반출

4.1 기본방향

4.1.1 관리지역 내에 있는 사료는 그 관리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관리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사료공장 안에 있는 사료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 시·도 가축방역관은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고 해당 시·군의 예찰지역에 환적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에 있는 사료에 대하여 그 관리지역 밖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4.1.2 보호지역 내에 있는 가금용 사료는 그 보호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보호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사료공장 안에 있는 가금용사료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의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 시·도 가축방역관은 해당 시·군의 예찰지역에 환적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에 있는 가금용사료에 대하여 그 보호지역 밖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4.2 관리·보호지역 안에 있는 사료의 반출 허용 요령

4.2.1 가축방역관은 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사료공장 내의 사료에 대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2 관리 및 보호지역 내 위치한 사료공장은 전염병 발생 시·군내 예찰지역에 환적장을 설치 운영한다.

- 해당 사료공장은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환적장 지정을 요청
- 환적장 설치장소는 가급적 전염병 발생 시·군내에 설치하되, 현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인접 시·군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
- 환적장은 사료공장에 준하는 방역시설을 설치·운영

4.2.3 사료공장과 환적장을 운행하는 전용사료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농가공급 사료운송차량은 환적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 사료공장과 환적장을 운행하는 전용사료운송차량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의 “닭·오리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에 준하여 관리·운영
- 전용사료운송차량은 사료공장과 환적장 운행 이외에 농가방문 등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환적장을 운행하는 사료차량은 시·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별 소독장소를 경유하여 운행

4.3 시·군 조치사항

4.3.1 시·군은 사료공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 확인 후 소독설비, 예찰지역 여부 및 현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적장을 지정 및 관리한다.

4.3.2 시·군은 사료관련 시설(공장, 하치장, 물류센터 등) 주변의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관찰, 살처분 등 우선방역을 실시한다.

5. 왕겨 공급요령

5.1 왕겨 공급시 방역관리요령

- 지대사용 및 마대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1회 운영 후 세차 및 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등 관리강화
- 방역대내에 왕겨공급 시 사료공급 요령에 준하는 방역관리 실시

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단 계	소독관리 요령	
공장 입차	차량	공장 입문시 고압스팀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공장 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를 점검한다.
	개인	1)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농장 도착	차량/ 개인	1)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를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 출문	차량/ 개인	1)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 2)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복장등)	기 타	1)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재지급 받는다. 2)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는다. 3) 긴급상황 발생시 AI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하며, 예찰지역 및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부득이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단, 이고차량은 농장에 입출입이 없음으로 상기 농장도착/농장출문 절차에는 제외 됨)

<참고 2>

AI 발생시 사료공장, 환적장, 하치장에 대한 방역관리사항

방역관리사항
○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사료업체별(농협사료, 계열그룹사료 등)로 비상시 권역별(시·도) 사료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 사료공장 방역소독점검 전담자 배치 ○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지역 전용운반 차량 지정·운용 - 해당 시·군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동 지정 차량은 다른지역으로 사료운반 금지 ○ 항만 사료원료 수송 진출입차량 방역소독시설 설치 운영 - 항만 진출입시 또는 사료곡물 싸이로업체, 부원료 사료하역업체에 대한 항구내외에 소독시설 설치·소독실시(설치의무자 : 항만관리자 또는 싸이로 시설 관리자) - 시·도지사는 항만 사료곡물 운송차량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여 가동시키고, 관련 업체 등에 협조요청 ○ 1회 1농장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 후 운행 - 차량별 운행하는 대상농장은 고정되도록 조치 ○ 시군 및 시도간 또는 방역대간 이동시는 거점별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받아 휴대하여 이동 ○ 도내(인근광역시) 수송을 기본으로 사료공급(타 시·도 진입 제한) - 시·도 예찰지역에 환적장을 지정·운영(시·도 또는 사료업체) → 환적 받은 도(시·군)의 지정차량이 수요처에 공급(AI 발생지역은 보호지역 환적장 → 보호지역 지정차량이 수요처에 공급) - 시·도간 경계의 방역초소에서 지정된 차량만 소독후 시도를 넘어 사료운송 ○ 전국 사료하치장(환적장) 소독철저 - 각 시·도(시·군)는 관내 사료하치장(AI 발생지역의 임시하치장 및 도간 이동 환적장 포함)에 대한 소독실시(수시) ○ 지대사료의 경우 운송차량이 농장밖에서 하치하여 공급(심각단계, 발생 시·군) ○ 축사내 사료통에 직접 사료를 투입하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지대사료 등으로 전환하여 공급(심각단계, 발생 시·군) ○ 공장 인근지역 및 축산농가 방역 서비스 실시 여부 검토

18.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처리요령

1. 기본원칙

- 1.1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물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한다.
- 1.2 농장주는 이동제한기간이 길어져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보관능력으로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독처리 한 후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 1.3 시장·군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당해 연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4 농장주는 농장에서 계분이 이동할 때 가축분뇨법에 따라 관리대장(참고 1)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서 가축분뇨처리

- 2.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을 포함)의 분뇨는 살처분시 농장내에 매물하거나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생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후 비닐피복 및 원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하고 그 주위를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2.1.1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물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 2.1.2 농장 밖으로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기록을 유지하고 분뇨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2 보호지역(3km이내)의 분뇨는 농장내에 매물하거나 이동제한 기간동안 축사내에 보관하도록 한다.
 - 2.2.1 산란계의 분뇨는 농장내 이동을 허용하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한다. 다만, 참고1에 따라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2.2.2 이동제한 해제시 보호지역의 분뇨에 대하여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분뇨운반 차량이 농장에 출입 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예찰지역(3~10km)에서 분뇨처리는 이동제한 기간동안 농장외부로 반출을 금지한다.

2.3.1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참고 1에 따라 인근공동처리장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2.3.2 이동제한 해제시 예찰지역의 분뇨에 대하여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분뇨운반 차량이 농장에 출입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시장·군수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찰지역 닭 분뇨운반 전용차량에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 감독관의 입회하에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한다.

2.5 시장·군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하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분뇨운반 전용차량 운행시 농·축협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농장에서 공동처리장까지 동승하여 소독 등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차량운행일지 작성).
- 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하여야 한다.

3. 이동제한지역 외에서 가축분뇨처리

3.1 오리분뇨는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로 반출을 금지한다.

3.2 닭의 분뇨를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반출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2.1 육계 및 산란계의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하되, 건조시설 등에서 산란계의 분뇨를 건조시킨 경우에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반출을 허용한다.

- 분뇨처리장이 포화상태로 인하여 농장내 야적하는 경우에는 비닐을 깔고 쌓은 후 비닐을 덮어 비 또는 눈 등에 의한 유실방지와 해충이나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3.3 시장·군수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3.1 분뇨운반 전용차량에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3.3.2 분뇨운반 전용차량이 출하농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매번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3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한다.

3.4 시장·군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3.4.1 해당 시·군에서는 분뇨처리 감독관을 지정하고 반출농장의 소독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차량운행일지 관리).

3.4.2 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하여야 한다.

4. 매립방법

4.1 이동제한지역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소독약품으로 처리한 후 매립

- 산제제 : 염산(hydrochloric acid), 구연산, 생석회 등

5. 가축분뇨내의 병원체 오염차단 조치

5.1 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통제 및 소독, 야생조류의 접근차단

- 차량바퀴가 소독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고 차체는 분무소독 실시

- 야생조류·설치류 등이 분뇨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 분뇨에 대한 소독 철저

5.2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의 외부반출 중단

- 깔짚, 톱밥, 왕겨퇴비, 고형축분 등

5.3 축분공동퇴비처리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분뇨반입 중단

- 공동처리장의 내·외부 생석회 도포 및 소독 실시

6. 비료생산업체 준수사항

6.1. 닭 오리 등 분뇨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참고2의 가축분뇨 운반차량 세척·소독 요령에 따라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7. 가축분뇨 운반차량 방역소독관리요령

7.1.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참고2 및 참고3에 따라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1>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내 가축분뇨처리요령

1. 적용대상 :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 운영, 예찰지역내 미 운영 지역

2. 세부처리요령

- (기본원칙) 전용운반차량을 지정하여 타 지역 운행 금지, 이동 중 가금류 사육농가 우회(동일 동선유지), 예찰지역 밖 출입차량은 3차레 이상 소독
- (사전준비) 시장·군수는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내 가축분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처리계획을 검토하여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후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 처리)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감독관을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 i. 해당 농가에서 시·군에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 요청
 - ii. 시·군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공동처리장에 작업일자 및 처리물량 등 통보
 - iii. 공동처리장은 전용차량을 지정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 실시, 소독필증 부착
 - iv. 감독관은 분뇨운반 전용차량에 동승하여 공동처리장부터 농장까지 이동하고,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 상차 확인
 - v. 운반차량은 분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우고, 감독관은 반출농장부터 공동처리장까지 동승
 - vi. 감독관은 공동처리장에 분뇨 하차 후,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 등 적정처리 확인
-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농장별, 공동처리장별 가축분뇨 운반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치
 - 전용차량 운행일지, 공동처리장 가축분뇨 처리대장 등 작성 및 비치하고,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관리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내 가축분뇨처리요령

단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입차	차량	공장 입문시 고압스팀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업체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를 점검한다.
	개인	1)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농장도착	차량/개인	1)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를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출발	차량/개인	1)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 2)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복장 등)	기타	1)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재 지급 받는다. 2)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는다. 3) 긴급상황 발생시(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하며, 예찰지역 및 야생조수류예찰지역에 부득이 하게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 가축분뇨차량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참고 3>

비료제조업체 소독필증 발급 지침

□ 목 적

- 고병원성 AI 전파의 주요 매개체로 추정되는 분뇨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 조치로 선행 제적 AI 차단방역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자율방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거점소독소가 아닌 비료제조업체에서 “소독필증”을 발급토록 강화

□ 적용대상 : 모든 비료제조업체(약 926개소)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따라 비료제조업체는 소독설비 의무 설치

□ 운영요령

- 비료제조업체 운영자는 분뇨차량 출입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란에 업체명 및 소독실시자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 비료제조업체 소독실시자는 “소독필증” 1부는 업체가 보관하고, 1부는 차량운전자에게 발급하여 소지토록 조치
- 이동통제 초소 근무자 또는 가축방역관은 해당차량 이동시 비료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
- 미 소지 운전자에게는 시·군에 통보, 시·군에서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제3항 위반)

[표 9.1] 이동제한지역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지침

구 분		이동제한 기간중	이동제한 해제직전 (해제조건)	이동제한 해제이후
보호지역	발생농장	○ 농장내 매물.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상태에서 생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후 비닐피복 및 원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 - 밀봉주변 매일 소독	○ 30일 경과 분변검사후 농장내 매물하거나, 60일 경과 분변검사후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농장 밖 반출, 기록유지 - 분뇨차량 세척·소독 - 분뇨 임의처리 농장은 해제대상에서 제외	○ 3주간 입식시험 실시 - 축사당 닭(6~12주령 산란계 중추) 최소 5수 이상
	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농장			
	기타농장	○ 농장내 매물 또는 축사내 보관. 다만 산란계는 농장내 이동허용, 농장 밖 반출금지 - 매일 소독 실시	○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 밖 반출 허용 -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철저, 기록유지	○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 닭·오리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예찰지역		○ 농장 외부 반출금지 다만,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가능 - 주기적 소독 실시	○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 밖 반출 허용, 단 발생농장과 예방적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농장은 제외 -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철저, 기록유지	○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 닭·오리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일반지역		○ 오리분뇨는 농장밖 반출금지, 주기적 소독 ○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현지 점검후 반출여부 결정, 기록유지 - 육계는 2주이상 보관후 반출 - 산란계는 건조된 경우 반출허용	○ 이동제한 해제후 농장 밖 반출 허용 - 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소독철저	○ 분뇨차량 농장출입시 소독철저 - 닭·오리 구분, 전용차량 출입 자율정착

19. 알(종란 · 식용란)의 처리요령

1. 종란의 처리

1.1 보호지역(반경 3km이내)에서 생산된 종란의 처리

1.1.1 닭에서 생산된 종란은 폐기하되,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사용시 이동 허용.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가축방역관의 지도 · 감독하에 이동을 허용한다

1.1.2 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은 전량 폐기한다.

1.2 예찰지역(반경 3~10km이내)에서 생산된 종란의 처리

1.2.1 닭에서 생산된 종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 · 감독하에 이동을 허용한다.

1.2.2 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은 전량 폐기한다. 다만,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고, 타농장으로부터 종란유입이 없으며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경우 미폐기, 이동제한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쳐 병아리 반출 실시

2. 식용란의 처리

2.1 보호지역(반경 3km이내)에서 생산된 식용란의 처리

2.1.1 닭 · 오리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전량 폐기하되,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사용시 이동 허용

2.2 예찰지역(반경 3~10km이내)에서 생산된 식용란의 처리

2.1.1 닭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으로 허용한다.

2.1.2 오리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전량 폐기하되,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사용시 이동 허용

3. 알의 폐기절차

3.1 폐기대상 알에 대하여는 알의 표면에 소독제를 살포하거나 일정 시간 소독수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3.2 소독이 끝난 뒤 5. 살처분 및 소각 · 매몰요령에 따라 매몰 조치한다.

4. 기타 난좌 및 부화기 소독 등 처리요령

- 4.1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을 보관한 난좌는 소독하여 폐기한다.
- 4.2 부화에 사용되지 않은 난좌(卵座)는 깨끗이 세척한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 4.3 부화장의 부화기는 세척하여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4.4 부화장에서는 종란을 발육기에 입란하여 온도와 습도가 적정수준으로 작동된 후 12시간 내에, 발생기로 옮긴 다음 부화대상 알의 10%가 부화되기 전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을 각각 20분간 실시하여야 한다.

20. 축사 외 장소의 방역조치 등

1.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 재래시장 등 축사 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1.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 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 (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검역본부에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한다.

1.2. 시·도지사는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 의사환축이 있는 장소로의 사람·차량 등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주변지역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2.2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추적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오염된 운반수단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 철저

1.4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접촉한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및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도축장등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축 출하 농장(시설)은 추적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도축장 등은 폐쇄 조치하고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한다.
-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 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를 한다.
-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는 폐기한다.
-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을 회수·폐기한다.

1.6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 가축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한다.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한다.
- 14일 이상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정밀검사(오리 등) 실시한다.

1.7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이하 “역학관련 부화장”)

1.7.1 시장·군수는 역학관련 부화장에 대하여 당해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한다.

- 다만, 발생농장이 아닌 타 농장에서 생산되어 부화·보관중인 종란이 있는 역학관련 부화장 시설이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종란은 폐기하지 않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병아리 출하를 제한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쳐 병아리 반출을 실시한다.

* 일정한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출입구 및 이동통로를 달리하는 시설에 부화·보관중이며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7.2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관련부화장에 대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한다.

1.7.3 발생농장으로부터 병아리를 분양받은 대상농가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에 파견하여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닭의 경우 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검사 필요시 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한다.

1.7.4 시장·군수는 역학관련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입란하게 할 수 있다.

2. 동물원 등 기타 사육시설

2.1 가금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야생조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다.

2.2 동물원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의사환축을 격리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전파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구나 의복, 물품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동물원 수의사는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최종진단 통보시까지 엄격히 통제하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건을 즉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사육가금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을 때에는 즉시 동물원을 폐쇄하고 발생장소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실험실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소동물(개·고양이), 설치류(쥐), 야생조류, 파리·모기 등 해충 방역관리

3.1 발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축사 내로 개·고양이, 설치류 및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2 야생조류(털새류)에 의한 인근농장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접촉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세척·소독이 시작되면 농장내의 설치류가 사료를 찾아 인근농장으로 이동하거나 파리·모기 등 해충이 이동하여 바이러스 전파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발생이 확진되었을 때 즉시 구서 및 구충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살처분한 농장의 경우에는 수시로 파리 등의 구충을 실시하고 매몰지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구충을 하여야 한다.

3.5 살처분 등을 위하여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파리약 등 구충제를 구비하고 출입 시 구충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에서 방역조치

4.1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제4장 25.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를 한다.

21. 축산농가 당부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 1.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한다.
 - 1.2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 1.3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1.4 발생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한다.
 - 1.5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한다.
 - 1.6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를 자제한다.
 - 1.7 발생지역, 관리·보호·예찰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 준 운반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조류인플루엔자 증상 발견 시 신고기관 전화번호> : ☎ 1588-4060(시·군·구청)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02)570-3435/3439	강원 가축위생시험소	033)248-6621/2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051)888-6819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043)220-5571/2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053)760-1304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041)631-309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032)440-5642	전북 축산위생연구소	063)220-6530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062)571-0497/8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061)941-2578
대전 보건환경연구원	042)870-3484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053)326-0011/3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052)229-5241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055)750-6621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031)8008-6272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064)754-5440/1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

2.1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한다.

-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함

2.2 사육중인 가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한다.

2.3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근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농장 출발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2.4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2.5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6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제제를 제공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다.

22. 사 후 관 리

1. 입식시험 실시요령

1.1 입식시험의 준비

1.1.1 시장·군수는 별표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 포함)에 대한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해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1.2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1.3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식시험전 점검표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시험가축의 선정

1.2.1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1.2.2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2.3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축사당 산란계 중추(6~12주령)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1.3 입식시험의 방법

1.3.1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발생농장에 대한 분변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1.3.2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3.3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 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입식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1.3.4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3주간으로 한다.

1.3.5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1.3.6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1.3.7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축의 재사육을 허용한다.

1.3.8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종식 선언시까지 사후관리요령

2.1 시·도지사는 종식선언시까지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2.2 사후관리 기간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해당 시·도지사,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장, 해당 시장·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 관리·보호·예찰지역의 방역규제 해제 및 발생종식 선언

3.1 관리·보호지역

3.1.1 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관리·보호지역으로 포함되어 폐쇄된 부화장은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3.2 예찰지역

3.2.1 예찰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 검사·바이러스검사)과 오리검사(혈청검사, 바이러스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관리·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은 동 예찰지역 방역규제 해제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2.2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종식시 그 결과를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 통보한다.

4. 종식후속대책

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 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혈청검사, 발생 시·군 특별 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 마리수 산란율 등의 상황을 주 2회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 : 바이러스 검사, 오리 :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4.3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상기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3.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등

1. H5·H7형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1.1 이동제한지역의 설정

- 발생농장,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한함

1.2 이동제한대상

- 이동제한 농가의 사육 가금류 및 그 생산물

1.3 살처분 및 폐기대상

- 발생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중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2. H5·H7형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된 경우

2.1 H5, H7형 항체양성 농장은 HI검사법에 의한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한다.

- 검역본부장은 비특이 반응에 의한 양성 반응의 경우 시·도방역기관장에게 동일 계군에 대한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2.1 이동제한지역의 설정

- H5·H7형 항체양성 농장. 이 경우 이동제한은 시·도 방역기관에서 항체양성 판정된 시점부터 실시한다.

2.2 이동제한대상

- 이동제한 농가의 사육 가금류 및 그 생산물

2.3 살처분 및 폐기대상

- 항체 양성 판정된 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

2.4 기타 방역조치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준하는 세척·소독 실시
- 인접 및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3.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H5·H7형 저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한다.

3.1 분리된 바이러스가 실험실검사 결과 병원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2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혈청형인 경우

4.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4.1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5.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조치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닭은 임상검사, 오리 등 다른 가금류 가축은 정밀검사(항원·항체)를 한다.

- 정밀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고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해제

5. 예방접종의 실시 등

5.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방안을 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5.2 H9 혈청형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농가 자율방역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국내 유행주에 효과가 증명된 예방약에 한함

5.3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6. 재입식 전 검사

6.1 살처분 및 기타 오염물의 폐기, 청소·소독 등 방역조치 완료 후 발생농장의 축사 바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음성일 경우 가축을 재입식 할 수 있다.

24. 야생조수류에서 감염 확인시 방역조치사항

1.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을 경우

1.1 이동제한지역 설정(야생조류 예찰지역)

1.1.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예찰지역으로 지정한다.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 다만,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의 AI 감염 확인시 이동제한지역은 검출지역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검출지역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2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한다.

1.2 이동제한대상

- 예찰지역의 방역조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3 야생조수류예찰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 닭은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안의 닭(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 오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야생조수류예찰지역 안의 오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25. 도심지에서 발생시 방역조치

1. 공통사항

- 1.1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 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폐기

-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회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단, 설치하지 않을 경우 매몰지점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몰지점에 대한 접근방지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제4장 22. 사후관리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7.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 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26.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

1. 부분 매몰농장

- 1.1 가축의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 후 일주일 후부터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되면 입식이 가능하다.
- 1.2 시장·군수는 부분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 시 “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농장주에게 통보한다.
- 1.3 시장·군수는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허용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가축 입식을 불허한다.
- 1.4 시장·군수는 부분 매몰농장의 가축 재입식후 60일 경과 시까지 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전두수 매몰농장

- 2.1 시장·군수는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주에게 “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내·외부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토록 통보한다.
- 2.2 시장·군수는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장들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 재입식 농가 소독 등 실태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 2.3 시장·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식가능 시기를 농가에 통보한다.
 -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 가능
 - 보완이 필요한 농가 : 일정기간(예 : 일주일)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 시정이 되어 있으면 재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 가능
 -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가축 재입식 불허
- 2.4 입식 가능 통보를 받은 농가는 입식 전까지, 농장내·외부 등에 대한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지속 실시한다.

2.5 시장·군수는 30일후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장을 다시 방문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상황을 최종 확인 후 입식을 허용한다.

2.6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의 가축 재입식후 60일 경과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임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시장·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매몰농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27. 단계별 언론설명 사항

1. 언론설명의 중요성

- 1.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긴급방역조치 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함으로서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1.2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정보의 사전 설명 및 대응으로 과장·확대·추측성 언론보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소비위축 방지 등 관련 산업 보호

2. 단계별 언론설명 사항

2.1 유입경계상황(주변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중요성, 대국민 및 해외 여행객에 대한 국내 유입방지요령, 축산농가 등의 차단방역요령, 해외 여행시 인체감염 주의사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2.2 의사환축 발생상황(양성으로 확인 전)

- 의사환축 발생사실 및 방역조치사항, 조류인플루엔자 개요, 진단체계,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요령 등

2.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 환축 발생사실 및 방역조치사항, 축산농가 준수사항, 조류인플루엔자 주요증상 및 신고요령, 육류소비 위축방지를 위한 국내 축산물 안전성, 인체 감염방지 조치사항 등

※ 살처분, 매몰장면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제요청

2.4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상황

- 환축 추가 발생사실 및 방역조치사항, 역학조사사항, 방역대책 보완·강화사항,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체 안전성 사전대응(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2.5 이동제한 해제(종식)

- 이동제한 해제내용, 그간 방역조치사항, 가금산물 수매사항 및 농가지원 사항, 역학조사사항, 발생지역 환경오염 방지 조치사항(환경부) 등

2.6 청정국 지위 회복

- 청정국 지위회복 내용, 그간 방역조치사항, 역학조사결과(중간), 향후 방역계획 등

[별표 1. 초기검진시 긴급방역용 용구]

용 구 · 서 식 명	수 량	비 고
비누	1개	
종이타올	1봉지	
브러쉬(큰솔, 작은솔)	각1개	
소독약	2리터	
소독조(40cm×30cm)	1개	
물통(20리터)	1개	
비닐백(지퍼형)	3개	
체온측정기	2개	
1회용 주사기 5ml(19G)	6개	
회중전등 및 예비배터리	각 2개	
표식용 스프레이(황색, 적색)	각 1개	
일반 검진용 도구 및 가방	1조	
방수모자, 외투 및 바지	2조	
작업복	2벌	
장화	2켤레	
고무장갑	2짝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1부	
별지 제2호서식 - 현지조사표	2부	
별표 3 - 출입금지 표지판	1개	
이동전화		
메모장	2권	
책받침	1개	
나침반	1개	
유성펜	3개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분변채취용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10개
프라스틱 백(90x90cm), 아이스팩 포함	6개
프라스틱 백(50x25cm)	6개
고무장화	1짝
고무장갑	1짝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6짝
보호용 위생 작업복	2벌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보호용 안경(고글)	
1회용 주사기 10ml	20개
1회용 주사기 5ml, 1회용 주사기 3ml (10개)	20개
멸균 면봉, 50 ml 코니칼 튜브 (10개)	20개

[별표 2의 1. 간이항원진단키트의 사용방법]

1. 배설강 분변 시료채취 방법

1.1 한손으로 대상동물의 날개를 잡는다.

1.2 다른 한손으로 대상동물의 꼬리부분을 위로 올린다.

1.3 시료채취 면봉을 대상동물의 배설강 직장에 삽입한다.

1.4 시료채취 면봉을 배설강내에서 수회 문지른(smear)후 꺼낸다.

- 시료채취 된 면봉의 바깥 부분 색은 회색 점액성(mucoid) 또는 어두운 갈색

2. 야외 분변 시료채취 방법

2.1 시료채취 면봉을 분변에 넣는다.

2.2 시료채취 면봉을 분변내에서 휘저은 후 꺼낸다.

[주의사항]

- 시료채취시 분변을 많이 채취하지 않는다(키트내 완충액의 이동을 방해)
- 시료채취시 분변을 너무적게 채취하지 않는다(위 음성 결과)

3. 검사방법

3.1 시료채취 면봉을 희석액이 담겨진 튜브에 넣어 분변이 녹을 때 까지 잘 섞는다.

3.2 시료 분변이 섞인 튜브의 상층액(supernatant)을 점적기(dropper)로 채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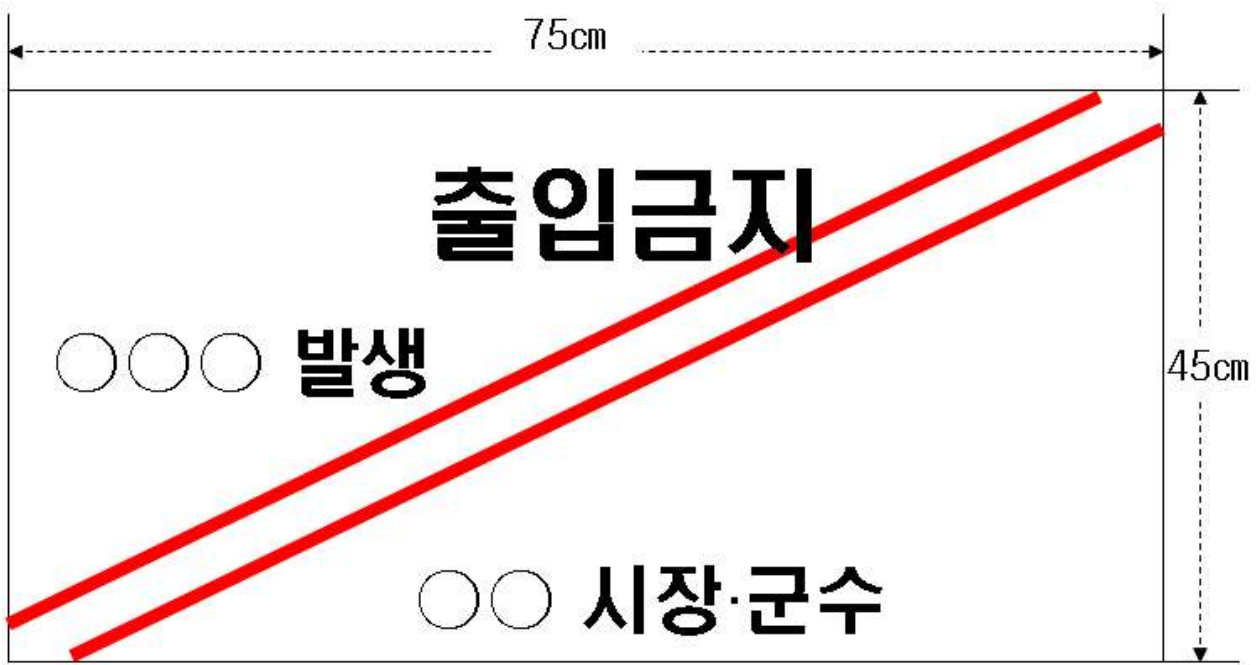
3.3 4~5방울을 키트에 떨어 뜨린다.

3.4 20~30분후 키트내 사용설명서에 따라 결과를 판독한다.

[주의사항]

- 동 검사결과는 의사환측 판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별표 3. 출입금지 표지판]



(흰생 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4. 긴급방역용 용구]

용구 · 서식명	수량	비고
살처분용 기구(Trigger)	1개	입구설치용
작약	1,000회용(개)	
소독약	20리터	
소독조(40cm×30cm)	2개	
생석회	100kg	
구연산	25kg	
고압스프레이어	1조	
삽,괭이,곡괭이,도끼,툼,망치,해머	각1개	
마당빗자루	2개	
비누	3개	물비누 1개 포함
종이타올	1봉지	
브러시(큰솔, 작은솔)	각 1개	
플라스틱 바켓	5개	
비닐백(지퍼형)	10개	
야간조명등	5개	
회중전등 및 예비배터리	각4개	
표식용 스프레이	2개	
방수모자, 외투 및 바지	6조	
작업복	8벌	
장화	8켤레	
고무장갑	10조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1부	
별지 제2호서식 - 현지조사표	2부	
별표 3 - 출입금지 표지판	1개	
메모장	6권	
책받침	4개	
펜(물에 번지지 않을 것)	12개	
풍향 · 풍속계	1개	
나침반	1개	
구급약품	1조	응급치료용

[별표 5. 갯의 및 세척·소독시설의 설치요령]

1. 갯의 및 세척·소독실은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샤워를 한 후에만 청정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샤워 및 차량세척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 소독처리 한다.

[별표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1단계 (시험입식 준비)	○관할 시·군에서 시험가축 입식에 따른 제반사항 계획수립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해 입식시험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지도·교육 실시 - 방역조치요령, 협조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2단계 (농장소독)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실시 - 소독대상 : 축사내외, 진입로, 농장내 사택, 축산기구 등 농장과 관련 되는 모든 것 ※기본적으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되 축사바닥, 갈라진 틈 등에 존재하는 분뇨 및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쉬, 수세미 등을 소독액에 담가 가면서 세척·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축사천장 등은 고압세척기(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액에 축사가 완전히 젖도록 할 것이며, 축사내는 훈증소독 실시
3단계 (시험가축 선정)	○시험가축 선정 및 구입 - 입식품종 및 연령 등 입식가축의 제반조건 검토·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6~12주령 병아리를 선정 - 구입예정 가축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혈청검사 등 실시
4단계 (시험입식 농장점검)	○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점검실시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소독상태 및 시험축 최종 임상 확인점검 ※ 농장 점검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입식시험 추진
5단계 (시험가축 임상검사)	○시험가축에 대한 정기적 임상관찰 및 점검표 작성·기록유지 : 축사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 기록관리 -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2일간격,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2회 실시 - 임상관찰기관 : 관할 가축방역기관(축산위생연구소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견시 해당 시·군, 시·도 및 검역원에 신속 보고(통보)
6단계 (시험결과 조치)	○시험가축 입식시험 종료 즉시(3주후) 시험축에 대한 혈청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입식 조치

※ 입식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도 발생농장과 동일한 방법
으로 철저히 소독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 허용

[별표 7. 위험도 분석의 세부요소]

- 위험도 함수 = F(지형적여건, 역학적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기타 고려사항)
-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와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강, 호수, 저수지 등)의 존재 여부와 철새 및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서

- 접수시간 : 오전 _____
오후 _____
1. 신고접수일 : _____
2. 신고자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 성명 : _____ (직 업) _____
3. 발생농가의 주소 : _____ (위치정보) 북위: _____ 동경: _____
- 성명 _____ (전화) : 일반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4. 신고사항
- 축종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_____
- 사육수수 : _____ 주령 : _____
- 발생수수 : _____ 폐사수수(최근 5일간) : _____
- 산란율 감소여부 : _____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 소속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9. 조치사항

[별지 제3호서식]

시 료 채 취 내 역 서

- ☐ 농장(도축장)명 :
- ☐ 농장(도축장)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
- ☐ 축 중 :
- ☐ 사육규모 : 사육동수 :
- 사육사별(동별) 수수 및 품종
- ☐ 시료채취 내용 :
- 시료채취자 소속 및 성명
- 채취일시

사육사(동)	사육수수 및 주령	시료채취 내역			비고
		혈액	분변(swab)	폐사체	

☐ 기타 특이사항(병력 및 임상증상, 채취용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전 점검표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구분	점검내역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표시)
입식전 농가 점검	청소·소독	- 농장 : 진입로□, 주택·축사간 이동경로□ - 주택·관리사 : 입구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 - 축사 : 입구소독조□, 외부□,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튼□, 기둥□, 천장□, 기구보관 창고 등□, 냉장고□, 훈증소독□, 살충제 살포□, 분뇨제거□ - 작업도구 :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의 모든 사용 기구□
	소각·매몰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보관사료□, 분뇨□, 의복□, 신발□, 장화□, 장갑□,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물품□ ※ 작업도구중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 입식전 농가 점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입식시험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미흡한 사항을 완벽하게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추진	
시험축 입식전 사전 점검	구입처	구입처(), 구입일자(), 운송방법()
	구입축	축종(닭 수), 품종(), 나이(주령), 성별(♂ 수, ♀ 수)
	임상관찰	사료섭취감소□, 침울□, 설사□, 기침등 호흡기 증상□, 안면부종□, 비늘·육수의 청색증□, 기타 특이사항□
	혈청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여부□
	예방접종	뉴캐슬병□, 전염성F낭병□,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사양 관리	시험관리	-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설치□ -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하여 계사내에서 이동사육□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케이지 사육형태인 경우 이동식 케이지 이용가능)
	사료급여	- 사료회사 : 왕겨구입처 : - 사료운송 방법 : 왕겨 운송방법 : - 사료급여 방법 :
점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점검일시		

- ※ 축주 주의사항 1. 외부인, 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2. 축주의 친인척, 관혼상제 및 타농가 방문자제 협조
 3.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주위 소독철저 등

[별지 제5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점검표(축사별)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시험일자		주요 임상증상							점검자 (소속 성명)
		식욕감소	침 울	설 사	기침 등 호흡기증상	안면 부종	벼슬·육수의 청색증	폐 사	
1주 ~ 2주	입식일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3주	18일								
	21일								
☐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종합소견									

HPAI 역학조사보고서 ○차

[광역시·도/시·군/축종/축주명/농장명]

조사일시 : 20 년 월 일

조사자명 : 소속, 직급, 성명

축주명	
농장명	
주소	
전화번호	
사육축종 및 두수	
종사자 (명)	
시료채취일	

I

일반현황

1. 농장주(대표자) 현황

- 성명 : (세, 휴대폰 번호 :)
- 농장명 (영농조합법인명) :
- 주소
 - 농장 : (전화번호)
 - 거주지 : (전화번호)
- ※ 농장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구분 기입
- 농장주 경영 다른 농장 (또는 법인 소속 농장 명단)
 - ※ 주소지, 방문일(최근 1개월 방문일시, 방문목적 기재)
 - 농장(2농장) : (전화번호)
- 축산경력 (농장대표):
- 부업 (또는 주업):
- 가족사항 ※농장 상시출입여부 및 최종 방문일 표기

구분	성명	나이	직업	농장출입여부	방문목적
배우자					
자녀					

- 인근농장과 농장 기구 공동사용 여부

2. 사육현황

- 사육축종 :
 - ※ 종오리, 육용오리, 육계, 산란계, 종계(육계, 토종닭) 등
- 사육형태 :
 - ※ 케이지, 평사, 무창계사, 유창계사, 비닐하우스 등
- 동별 사육수수 및 연령 :

구분(동)	#1	#2	#3	#4	#5	#6
연령(주)						
수수						
임상증상여부						

- 다른 축종(개, 닭 등):

3. 인접 가금농장 사육현황

축주명	사육현황	주 소	발생상황	발생농가와의 관계		
				거리	교류여부	진입로 공동사용 여부

4. 과거 질병 발생 상황

질병명	발생시기	조치내역

5. 종사자 및 외국인 근로자 현황

성명(성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거주지	출퇴근여부	비고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성명, 입국일, 입국전 축산관련 근무여부, 동포 및 친척방문 또는 접촉일시, 최근입국일시, 휴대물품, 국제 우편물 수신여부 등

6. 농장주 및 종사자 최근 해외여행

일시	방문국가	방문목적	가금류농장 방문여부	입국시 소독여부

7. 백신접종

백신종류	접종일시	백신종류	접종일시	백신종류	접종일시

※ 최근 실시한 예방접종 기준

8. 야생조류 출현

- 축종, 관찰지점, 관찰빈도 등

9. 축사모식도

- 축사도면(축사동별)별 사육두수·발병 가축위치·발생두수·폐사두수, 출하대 위치, 벌크 및 지대 사료위치, 건조보관위치, 소독시설 구조 및 위치, 약품창고, 분뇨처리장 등

II

방역조치 사항

☐ 출입 차량 및 운전자(또는 방문자)의 방역조치

구 분	세부사항
차량소독 시설유형	○ 고정식소독시설(), 터널식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 ○ 소독조(), 생석회도포(), 기타()
소독약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기타
소독의 주체	○ 농장 종사자가 소독(), 차량운전자가 직접소독()
소독방법	○ 차량바퀴(), 외부전체(), 차량내부()
소독실시 절차	○ 예시) 농장진입 시점 고압식 소독(1차) → 터널식 소독(2차) → ---
운전자(방문자) 소독방법	○ 전신소독 : 분무형(), UV형() ○ 부분소독 : 손소독(), 신발소독() - 손소독(소독약명), 신발소독(소독약명 :)
기타사항	○ 개인 방역 사용품목: 1회용 비닐장화(), 방역복(), 기타() ※ 운전자 휴대(), 농장제공() ○ 개인소독기 보유 및 사용여부()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시설물의 방역사항

구 분	세부사항
소독조 설치여부	○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각 축사 출입구()
소독약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그물망 설치여부	
기타사항	

□ 농장주(종사자)의 축사 출입 시 방역조치

구 분	세부사항
농장전용 신발구비	○ 외출용과 작업용 신발 구분 여부 : - 가금의 경우 계사전용 신발 구비여부 : 외출용(), 농장용(), 계사용()
축사 출입 시 소독실시 절차	○ 예시) 1차 발판소독 →샤워 → 농장내 작업복 교체 → 발판소독 ----
소독약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기타사항	

□ 농장내 방역조치

구 분	세부사항
소독장소 및 빈도	○ 축사외부(/ 주 회), 축사내부(/ 주 회), 축사주변(/ 주 회), 기타
소독장소별 소독약	○ 축사외부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 축사내부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 기 타 : 유형(산성, 알칼리성), 제품명(), 희석배수()
소독장치	○ 고압분무기(), 수동분무기(),
기타사항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록사항

구 분	세부사항
기록부 비치여부	
기록부 기록유지	
기타사항	○ 구입일시 , 구입처 ○ 재고량 등

Ⅲ

임상증상

일시	시간	발생동	임상증상	신고경위
/			산란수, 폐사수 * 각동별 변화추세	
/				신고 예) 검역본부 상황실

Ⅳ

입식, 이동 및 판매

1. 입 식

일 시(연령)	공급부화장(또는 공급농장)	입식수	운반자
	부화장명(공급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 부화장에서 공급시 해당부화장에 공급수수 교차확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거주지 ※ 가금류 가축 사육자인 경우 - 농장 주소 및 사육축종·수수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2. 분 동

일 시	이동 장소		운반자
	축주명 전화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거주지 ※가금류 가축 사육자인 경우 - 농장 주소 및 사육축종·수수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3. 출 하(도압장 또는 도계장)

일 시	출하도계장(도압장)	출하두수	운반자
	도축장명 전화번호 주소 * 외부 계근소 이용시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기입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가금류 가축 사육자인 경우 - 농장 주소 및 사육축종·두수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4. 종란 이동

일시 및 수량	부화장	보유중인 종란	운반자
	부화장명 전화번호 주 소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가금류 가축 사육자인 경우 - 농장 주소 및 사육축종·두수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5. 식란 판매

구입자 (상호명)	주 소(전화번호)	구입일시 및 수량	운송자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V

농장출입자 현황

1. 수의사

○ 상호명 :

- 주 소 : (전화)

○ 발생농장 방문내역

- 방문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방문일 :

※최근 1개월 동안 방문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방문이 없을 경우 최종 방문일 기재

- 방문차량번호 :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사육시 축종, 주소 기재(이하 동일하게 기록)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2. 백신접종 인력

○ 백신접종 팀 책임자 : ※ 농장직원이 실시할 경우 성명, 직급 표기

- 주 소 : (전화, 차량번호)

○ 시술자별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발생농장 방문일 :

※최근 1개월 동안 방문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방문이 없을 경우 최종 방문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3. 분동 인력

- 분동작업팀 책임자 : ※ 농장직원이 실시할 경우 성명, 직급 표기
- 주 소 : (전화, 차량번호)

- 분동인력별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발생농장 방문일 :
※ 최근 1개월 동안 방문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방문이 없을 경우 최종 방문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4. 동물약품

- 상호명 :
- 주소 : (전화)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배송일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축주가 영업점을 방문 구입 / 택배 배송 등도 표기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5. 가축사료

가. 지대사료

○ 업체명 :

- 주 소 : (전화)

- 배송경로 ※생산공장 및 하치장, 대리점 등 표시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배송일 :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축주가 영업점을 방문 구입 / 택배 배송 등도 표기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나. 벌크사료

○ 업체명 :

- 주소 : (전화)

- 배송경로 ※생산공장 및 하치장, 대리점 등 표기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방문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배송일 :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축주가 영업점을 방문 구입 / 택배 배송 등도 표기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6. 가축분뇨

○ 처리경로 :

- 관련업체 (관련자) 주소 : (전화)

○ 발생농장 작업내역

- 운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작업일 :

※ 최근 1개월 동안 작업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작업이 없을 경우 최종 작업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7. 왕겨

○ 상호명 :

- 주 소 : (전화)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배송형태 : 벌크, 포대

- 발생농장 배송일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8. 톱밥

○ 상호명 :

- 주 소 : (전화)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배송형태 : 벌크, 포대
- 발생농장 배송일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9. 난좌

- 상호명 :
- 주 소 : (전화)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배송형태 : 벌크, 포대
- 발생농장 배송일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10. 잔반급여

- 공급업소 :
- 주 소 : (전화)
- 발생농장 배송내역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생농장 배송일 :
 ※ 최근 1개월 동안 배송일 모두 기재, 최근 1개월간 배송이 없을 경우 최종 배송일 기재
 ※※ 축주가 영업점을 방문 구입 / 택배 배송 등도 표기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11. 폐사축 처리

- 농장내 처리시 처리방법 :
- 외부반출 처리 시
 - 배송자 : (휴대폰, 차량번호)
 - 발송농장 방문일
 - 처리방법 :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12. 각종 검사 방문자 (채혈등 기타검사) ※항목별로 작성

- 방문자 : (휴대폰)
 - 방문목적 :
 - 방문일 :
 - 차량번호 :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13. 기타 방문자 (상답 환기 공사, 기름공급 등) ※항목별로 작성

- 방문자 : (휴대폰)
 - 방문목적 :
 - 방문일 :

- 차량번호 :
- 기름공급 :
- 택 배 :
- 재활용품 (빈병, 지대 포대 등) 반출 :
- 방문자 감수성 동물 사육여부 :
- 방문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VI 축주 활동사항

- 축산관련 모임 참석여부 일시, 모임 일반 현황(회원 등)
- 최근 타지역(농가) 방문여부 등
-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일 시	축주명	주소	전화번호

VII 기타 특이사항

-

4. 축사의 구조 및 관리상태

- 축사 그물망 설치 여부 (파손된 사항 있는지 확인),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구멍이 있는 곳은 축사 동,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 사진촬영 등

- 축사 출입문 및 창문 밀폐 사항 확인 및 파손 확인

- 환기구(통)은 어디에 설치되고, 텃새 등 새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환기구 주위에 분변, 깃털 등 오물이 있을 경우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 철저)

5. 야생동물 출현 사항

- 농장 주위에 쥐, 텃새, 들고양이, 방전,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현여부 및 출현 빈도

- 이들 야생동물이 축사내 출입확인이나 목격했는지, 축사내에서 가금의 사료를 섭취하는 것을 보았는지, 직접 목격은 못했더라도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 조사

6. 소독 등 차단 방역 사항

구 분		내 용	해당여부
축산업 허가·등록		미등록·미허가	
사 전 예 방	차단방역 기준	소독기록부 미비치	
		소독 미 실시	
		소독액 미교체	
		출입기록부 미비치	
		출입기록 누락	
		농장 전용의복, 신발 등의 미비치 및 불결	
		축사 파손방치*	
		* 쥐 등 출입 방치	
		사료 잔존물 방치	
		축사 내외부 불결*	
		* 먼지 등 비산	
		축사 분변 미적정 처리	
		의무방역 교육 미참석	
		야생동물 방지대책(예; 구서대책) 미시행	
		기타 차단방역 기준 미이행	
	방역시설 기준	전실(前室) 미설치	
		소독시설 미설치	
		신발소독조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울타리·담장 미설치	
		외부인 출입금지 미표시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장치 미설치	
	적정 사육밀도 유지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여부	
신 고	의심축 신고	신고지연/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해외 출입국 신고	단순미신고·소독등 미이행·교육미실시	
	출생 등 신고	신고 여부	
	검사 등 명령 이행	이행 여부	
발 생 시 조 치	역학 조사 협조	이행 여부	
	소독 실시	이행 여부	
	이동제한 준수	이행 여부	
	반복 발생 농가	반복 발생 여부	
	명령 불이행	가축방역관 명령(방사 금지 등) 이행 여부	

7. 분동실태

- 초생추 분동시 축사내에서만 이동되는지? 축사 외부로 나와서 다른 축사로 이동하는가? 분동시 이동 통로에 대해 사전 소독 실시 여부? 분동참여자는 누구인지?

8. 축주의 생활 패턴

- 축주의 거주지와 농장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출퇴근 도로 (도보시 도보행로), 출퇴근시 사용하는 교통 수단

- 축주의 외부 활동 사항 (외부 접촉 인물, 빈도, 최근 접촉한 사람 내역 등)

- 축주의 취미 활동 사항 (산책, 등산, 자전거, 운동 (축구 등 종류), 낚시, 사진촬영 등)

9. 종사원 관리

- 축주의 종사원 관리 형태 (질병방역교육 실시 여부, 교육 횟수 및 주기, 교육내용, 교육 방법, 교육내용 실천사항 확인 여부 등)

10. 종사원 근무 및 생활패턴

- 주거지, 출퇴근시 주요 이용도로, 교통수단

○ 휴식시간 활용사항 (어디서, 무엇하는지?)

농장내 거주자의 경우 외출 후 귀가시 소독, 옷 갈아입기 등 조치사항 (언제, 어디서?)

○ 농장 거주자의 생필품 구입 방법, 구입 시기 및 구입 빈도

11. 지인들이나 주변사람 방문시 조치 사항

○ 농장 방문 금지, 농장 방문시 소독 등 조치 후 출입허용 (출입시 진입 정도 : 농장 입구, 농장내 사무실 또는 사택, 축사 입구, 축사 내 등)

○ 외부인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만남

12.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 위와 관련 내용 (출입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진술이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 (소독 실시 기록부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

[별지 제8호서식]

거점 소독장소 소독실시기록부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예찰지역 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 **절취선** -----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소독내용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예찰지역,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시·군 ○○○○ (서명)						

『가축 재입식농가』 소독 등 실태점검표

□ 농가현황

농 가 명		소재지		축 주 명	
전화번호		축 종		사육두수	

□ 입식전 점검사항

가. 청소 · 소독

점검내역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주택 · 관리자	입구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 사	외부□, 입구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튼□,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연막소독□, 살충제 살포□, 분뇨제거□
운 동 장	바닥□, 울타리□, 분뇨제거□
작 업 도 구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나. 소각 · 매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보관사료□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별지 제11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매몰농장(□부분, □전두수) 관리대장

1. 농가개요

농 가 명		소재지		축 주 명	
전화번호		축 종		사육두수	

2. 발생 및 이동제한 해제일

최초 발생일	최종 발생일	최종 검사일	이동제한 해제일	비 고

3. 입식전 점검 및 조치사항

점검일 (재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보완사항 (지적사항)	재점검 예정일	입식 예정일
		양호	보완			

부 록

I. 국가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형 발생현황

II.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III. 방역수칙

<농가·차량·시설별 표준행동요령>

* 붙임 1 참조

<철새·설치류 등 야생동물 차단방역요령>

* 붙임 2 참조

<개방형 농장 방역요령>

* 붙임 3 참조

<기후별 농가방역 요령>

* 붙임 4 참조

<가축분뇨·알·어리장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 붙임 5 참조

IV.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V.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VI. 방역기관 연락처

< 부록 I >

I. 국가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1. '11년 해외 HPAI 발생현황(OIE 주간보고, '11.10.31일 기준)

<14개국>

가금류 사육농가 발생 : 13개국	야생조류 발생(4개국)
○ 방글라데시(1.1~9.6) ○ 한국(1.5~4.6) ○ 미얀마(1.26, 3.16) ○ 일본(1.21~3.16) ○ 캄보디아(1.27, 7.21~8.25) ○ 인도(2.3, 8.29~9.14) ○ 베트남(1.29~5.14, 5.20, 7.6, 7.10, 7.17-27, 8.18~26) ○ 홍콩(1.24~3.1) ○ 이스라엘(3.5~5.17) ○ 팔레스타인(2.27) ○ 남아프리카공화국(2.1~8.9) ○ 인도네시아(3.30~4.6) ○ 이란(9.13)	○ 일본(1.4~4.13) ○ 홍콩(1.18) ○ 몽골(4.5) ○ 캄보디아(7.18) * ()는 발생일자

2. '10년 해외 HPAI 발생현황(OIE 주간보고)

<18개국>

가금류 사육농가 발생 : 14개국	야생조류 발생 : 7개국
○ 인도(1.12~1.18) ○ 베트남(1.17~7.18.) ○ 방글라데시(1.20~6.17.) ○ 이스라엘(1.24) ○ 네팔(1.26~3.8) ○ 캄보디아(4.22.) ○ 미얀마(2.2, 2.19) ○ 부탄(2.18~3.14) ○ 루마니아(3.14.~27.) ○ 이스라엘(4.29.) ○ 라오스(4.27.) ○ 일본(11.29) ○ 홍콩(12.23) ○ 한국(12.29~)	○ 홍콩(3.26.) ○ 불가리아(3.29.) ○ 몽골(5.3.) ○ 중국(6.3.) ○ 러시아(6.5.) ○ 한국(12.09~12.30) ○ 일본(12.20, 21, 22) * ()는 발생일자

3. HPAI 상시발생 국가

○ 이집트(2008.7.7~)	○ 인도네시아(2006.9.26~)
------------------	---------------------

4.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 현황(2005-2011, '11.11.29 기준 : WHO)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감염	사망
아제르바이잔	-	-	8	5	-	-	-	-	-	-	-	-	-	-	8	5
방글라데시	-	-	-	-	-	-	1	-	-	-	-	-	2	-	3	0
콜롬비아	4	4	2	2	1	1	1	-	1	-	1	1	8	8	18	16
중국	8	5	13	8	5	3	4	4	7	4	2	1	-	-	39	25
지부티	-	-	1	-	-	-	-	-	-	-	-	-	-	-	1	-
이집트	-	-	18	10	25	9	8	4	39	4	29	13	34	12	153	52
인도네시아	20	13	55	45	42	37	24	20	21	19	9	7	11	9	182	150
이라크	-	-	3	2	-	-	-	-	-	-	-	-	-	-	3	2
라오스	-	-	-	-	2	2	-	-	-	-	-	-	-	-	2	2
미얀마	-	-	-	-	1	-	-	-	-	-	-	-	-	-	1	0
나이지리아	-	-	-	-	1	1	-	-	-	-	-	-	-	-	1	1
파키스탄	-	-	-	-	3	1	-	-	-	-	-	-	-	-	3	1
태국	5	2	3	3	-	-	-	-	-	-	-	-	-	-	8	5
터키	-	-	12	4	-	-	-	-	-	-	-	-	-	-	12	4
베트남	61	19	-	-	8	5	6	5	5	5	7	2	-	-	87	36
합계	98	43	115	79	88	59	44	33	73	32	48	24	55	29	521	299

< 부록 II >

II.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생존력 및 감염동물에서 배설기간

1. 바이러스 생존력

- 1) 분뇨에 오염된 바이러스는 4℃에서 35일간 생존
- 2) 살처분후 계사내 먼지에 오염된 바이러스는 14일간 생존
- 3) 계사내 환경에서는 35일간 생존
- 4) 호수 등의 물에 오염된 경우 22℃에서는 4일간, 0℃에서는 30일간 생존
- 5) 바이러스 감염 폐사체가 실온 보관시에는 수일간 생존 가능하나 냉장보관 사체에서는 23일까지 생존 가능
- 6) 바이러스 오염 가금육은 심부온도가 70℃ 30분, 75℃ 5분, 80℃ 1분간 열처리하면 사멸함
- 7) 가금의 내장, 혈액, 깃털, 다리, 머리 등 가금부산물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100℃ 이상에서 수분간 가열하면 사멸됨
- 8)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을수록 생존력이 오래 가지만 분뇨에서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생존력이 길어짐
- 9) 지질성분으로 구성된 외피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누액과 같은 세제성분에도 사멸되며, 소독제 처리에 쉽게 사멸됨

2. 감염동물에서 바이러스 배설기간

- 1) 야생조류
 - (1) 수금류 : 바이러스 보균동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염된 수금류는 30일간 바이러스 배설 가능
 - (2) 꿩, 기니아파울 : 감염 후 7일간 바이러스 배설 가능
- 2) 닭, 칠면조
닭, 칠면조는 감염 후 2~3일내 대부분이 죽게 되나 회복된 닭이나 칠면조는 바이러스를 분변이나 호흡기도로 14~30일간 배설 가능
- 3) 돼지 등 포유류
바이러스 중 일부 혈청형은 돼지, 족제비, 고양이 등의 포유류에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수일간 바이러스 배설 가능

<부록 Ⅲ. 방역수칙 >

살처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 책임관리자 지정·운영

- 가축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장·군수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
-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6개월간 월 1회, 이후 분기별(3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 매몰지 관리요령

- 매몰지 담당자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용기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당해 살처분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매몰지 성토보완 또는 구덩이를 확대하여 용기된 사체는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는 등 조치
- 매몰지가 안정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
- 매몰지 관리용 톱밥은 매몰지 개소당 40m³ 이상을 확보하며,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하고 가장자리는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눌러 고정
- 가스배출관은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의 용기 등 발생시 설치수를 늘리고,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
- 가스배출관 끝은 “U”자로 하고 지면을 향하게 한다.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폐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할 수 있다.
- 매몰지내 침출수는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내어 소독 후 처리한다. 침출수 양수시 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폐수처리한다.
-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

장소를 옮겨 매몰시 방역수칙

《살처분·매몰은 살처분 농장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가 없어 옮겨 실시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① 살처분 가축의 처리

- 닭·오리는 축사 내에서 CO₂로 안전하게 질식사시킨다.
- CO₂ 작업시에는 축산연구소 전문가의 지시에 따른다.
- 폐사된 닭·오리를 마대에 담는다.

② 차량 방역조치

- 닭·오리 운반지정 차량(스티커 부착)만 사용한다.
- 차량은 사체를 넣은 마대가 보이지 않도록 화물칸을 높게 한다.
- 살처분 농장에 차량이 출입하기 전에 소독 철저
- 작업완료 후에는 소독차량을 이용, 흙뻑 젖도록 차량소독 실시
후 다른 장소 운행

③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 닭·오리 운반차량에 가축방역관 탑승 운행
- 닭·오리 운반차량 뒤에는 소독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며 운행

④ 동 수칙에 없는 사항은 닭·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①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

②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둘째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조치

③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 질병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 필요시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의과학검역원에 위탁 교육
- 둘째 :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셋째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출입

④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 첫째 :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방문 금지
 -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 둘째 :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 셋째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①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②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③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④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조류인플루엔자(AI) 개요

-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된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OIE 의무 보고 질병이다.

□ 원인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
- 바이러스 생존력
 - 4℃ 온도에서 분뇨내에서는 최소 35일간, 계사 오염 먼지에서는 2주간 생존
 - 오염된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
 - 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 80℃ 1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 잠복기

-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2~3일임, OIE에서는 최장 잠복기를 21일로 규정

□ 전파경로 : 오염된 물·사료, 분뇨 등으로 전파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 닭의 경우

-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 급격한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을 나타냄

□ 오리의 경우

-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남
- 육용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새끼오리는 일부 폐사
 - 2008년의 경우 어린 육용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닭 · 오리 부화장 방역수칙

①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것

- ①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
- ②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유지
- ③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 ④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울타리 상태점검 및 미비시 보완
- ⑤ 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 · 방충 시설 설치

②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원인체 유입을 방지할 것

- ① 차량 및 발판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 ②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마다 교환 또는 보충하되 소독조내 오물 수시 제거
- ③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 · 외부 세척·소독 철저
- ④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 ⑤ 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 ⑥ 종사자 외출 및 귀가시 손발 세척

③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을 준수할 것

- 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 ②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 · 피부 접촉 금지
- ③ 포르말린제제는 사람 · 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

닭 · 오리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

①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대리점, 지역 농축협 등)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①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
- ②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
- ③ 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축산과)에서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함
- ④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
- ⑤ 사료공장 · 대리점 · 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
- ⑥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②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①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 ②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③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
- ④ 자가 트랙터 · 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 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닭 · 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

①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 ① 시·도(시군) 축산과에 소속,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등을 신고하고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
- ②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
- ④ 차량에 시·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⑤ 농가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 ⑥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 ⑦ 도압(계)장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② 닭 · 오리 농가 준수사항

- ① 전용차량 지정서와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 ② 지정서(오리)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
- ③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 ④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③ 닭 · 오리 도축장(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 준수사항

- ① 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 ②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감독 철저
- ③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

닭 · 오리 도축장 방역수칙

① 닭 · 오리 운반차량 관리

- ①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
- ②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을 기록할 것
- ③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
- ④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 ⑤ 하차 즉시 세차장에서 차량을 소독(바닥 · 하체 · 바퀴 등 차량 전체) 하되, 수의과학검역원 권장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② 일반 출입차량 관리

- ①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
- ②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③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 · 소독

- ①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 ②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특히, 손 · 신발 소독)

④ 계류장 · 도축시설 주변소독

- ① 작업 전 · 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 ②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 ③ 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붙임 1】

<농가·차량·시설별 표준행동요령>

www.mafra.go.kr

닭 농장 시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닭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1. 공통사항 _ 01

2. (원)종계, 산란계 _ 08

3. 중추, 토종닭, 육계 _ 08



1

공통사항

- 1 가금 사육자는 AI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 2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 주요 임상증상 : 폐사, 발병초기의 침울과 졸음증상,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감소, 벼슬의 청색증, 안면부의 심한 부종·괴사



폐사



침울과 졸음증상

- 3 의심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4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 출입구 봉쇄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봉쇄

5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공통사항 (300m² 이하 농가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300m² 이상 1,000m² 미만 농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구비

〈1,000m² 이상 규모 농가〉

-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6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차량소독 실시



| 차량소독 실시

7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관리자 및 외출 후 농장 출입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축사 전용
의복으로 환복 등 기본 수칙 준수



| 개인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

8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축사 내부 소독



| 축사 외부 소독



뒹새와 사람의 AI 바이러스 오염과정



AI 감염 철새 사체를
뒹새가 먹음



농장에 떨어진 뒹새의
AI 감염 분변



관리자의 발/장비 오염

- 9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뒹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사료빈 관리
사료빈 주변 청소와 주기적인 소독 실시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사료빈 관리
사료빈 주변 청소와 주기적인 소독 실시

사료빈 주변 주기적 소독

뒹새 등에 의한 사료빈 주변 및 농장의 AI 바이러스 축사 오염 과정



사료빈 주변 및 농장 오염



오염물이 관리자에 의해 축사 유입



AI 발생

- 10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철저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정기적 구서작업 실시



축사 입구 그물망 설치



설치류 침입 방지용 헨스



배수구 그물망 설치

설치류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축사 오염 과정



설치류의 몸체 오염



오염물이 설치류에 의해 축사 유입



AI 발생

설치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1월)

- 88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 분변과 접촉한 쥐, 야생고양이, 텃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유입





11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매물·소각 등으로 처리

12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출입 후에는 장비 및 의복관리(세척, 소독, 폐기 등)를 철저히 시행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관리자 축사 출입시
내·외부 신발 정확히 분리 사용
축사 내·외부 신발 분리 철저

13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 사용



동과 동 사이 장비 공유 자제



장비 이동시 소독

신발, 축산도구 등으로 인한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1월)

88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신발, 축산도구 및 장비 등에 분변이 붙어 축사내 유입



- 14**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발판소독조 오염 시 즉시 교체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방역교육 실시





2

(원)종계, 산란계

- 예방접종팀 및 인공수정사는 농장 간 이동이 잦고 닭을 직접 접촉하므로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 농장 출입 전후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별 전용 신발·의복·장비를 준비하여 착용

*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방접종팀의 신상정보 파악



농장 진입 전 방역복 환복



백신접종팀·인공수정사 소독 철저

3

중추, 토종닭, 육계

- 1 육계는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농장에 진입하는 사람과 차량 및 체중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 및 체중측정 허용
- 2 토종닭은 출하일령에 임박하여 실시하는 '상머리 치기' 작업 시 출하 차량은 타농장과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과 운전자, 차량내부에 대해 철저히 소독 후 농장에 진입
- 3 중추 및 토종닭은 분양 및 재래시장 등 판매 시 판매기록 유지 철저



닭 농장 시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ww.mafra.go.kr

오리 농장 시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오리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1. 공통사항 _ 01

2. 종오리 농장 _ 08

3. 육용오리 농장 _ 09



1

공통사항

1 가금 사육자는 AI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2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 주요 임상증상 : 침울, 졸음, 폐사, 산란율 저하



| 폐사 및 졸음 증상



| 안면부의 부종 및 눈물흘림

3 의심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 4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출입구 봉쇄



출입구 봉쇄

- 5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공통사항 (300m² 이하 농가제외)〉

- 가축사육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고압분무기 구비
-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300m² 이상 1,000m² 미만 농가〉 :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구비

〈1,000m² 이상 규모 농가〉

- 차량 출입구에 차량용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설치

6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차량소독 실시



| 차량소독 실시

7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관리자 및 외출 후 농장 출입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축사 전용 의복으로 환복 등 기본 수칙 준수



| 농장 출입 전후 소독



|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

8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축사 내부 소독



| 축사 외부 소독



- 9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1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1 사료빈 주변 주기적으로 소독

텃새 등에 의한 사료빈 주변 및 농장의 AI 바이러스 축사 오염 과정



사료빈 주변 및 농장 오염



오염물이 관리자에 의해 축사 유입



AI 발생



- 10**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철저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정기적 구서작업 실시



축사 입구 그물망 설치



설치류 침입 방지용 헨스



배수구 그물망 설치

설치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사례 (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1월)

- ☒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 분변과 접촉한 쥐, 야생고양이, 텃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유입



- 11**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매몰·소각 등으로 처리



- 12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 사용



동과 동 사이 장비 공유 자체



동과 동 사이 장비 공유 자체

왕겨살포차 등 장비에 의한 AI바이러스 오염 과정



AI오염 축사의 왕겨살포 작업



축사 출입구 오염



다른 축사도 AI 발생

- 13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출입 후에는 장비 및 의복관리(세척, 소독, 폐기 등)를 철저히 시행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축사 내 · 외부 신발 분리 철저

신발, 축산도구 등으로 인한 발생사례 (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14.1월)

- ☞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 신발, 축산도구 및 장비 등에 분변이 붙어 축사내 유입

- 14**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발판소독조 오염 시 즉시 교체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방역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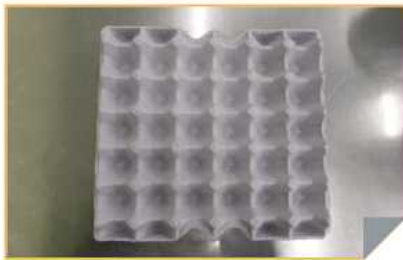




2

종오리 농장

- 1 종란을 이동시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재활용 금지), 종란 저장고에 대한 훈증 소독을 철저히 하여 종란에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조치



| 일회용 종이 난좌 사용



| 종란 저장고 내 청결 유지

플라스틱 난좌의 위험성

- ☞ 전북 00지역 종오리 농가의 플라스틱 난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 2 종란 수거 시에는 종오리장을 중복으로 방문해서는 안되며, 부화장 방문 후 타 종오리 농장 방문 금지

오염된 종란 운반차량(사람) 방문에 의한 발생 사례 (142월)

- ☞ 축산시설(전북)을 방문한 종란 운반차량이 오염되어 종오리 농장에 출입하여 해당 농장에 바이러스 전파

- 3 새끼오리를 분양한 차량은 종란을 수거해 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
(새끼오리 분양차량과 종란수거차량 별도 운영)



- 4 산란율, 폐사수, 음수량 및 사료섭취량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질병을 의심하여 신고하고 종란납품이나 타농장·부화장 방문 금지
- 5 육추사에서 성압사로 오리를 이동할 경우 가급적 어리장을 사용하고, 어리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축사간 이동통로를 소독한 후 이동
- 6 부화장에 종란을 납품한 후 농장으로 되돌아 와서 농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

3 육용오리 농장

-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사람과 차량 및 체중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 및 체중측정 허용





오리 농장 시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차량별 S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1. 사료차량	1
2. 분뇨차량	6
3. 어리장차량	10
4. 왕겨차량	14
5. 알 운반 차량	18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차량에 의한 AI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량 바퀴 주변
AI 오염 유기물



운전석의
AI오염 유기물



농장내에 AI오염
유기물 유입



축사에 AI 발생

1 사료차량

AI 발생 위험지역 전용 사료 운반차량에 의한 AI 전파 사례(14.3월)

전남 나주 육용오리 발생농장(14.2.20)의 관리지역내 전용 사료 운반차량이 방문한 7개 농장 모두 발생

* 동 위험지역내 다른 사료차량이 방문한 농장은 미 발생



운행전 확인 사항

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GPS 장착



GPS 작동 확인



차량별 시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 시간 등 통보

농장으로 출발

- 1 공장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1차 소독)
- 2 “거점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 발급(2차 소독)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 실시 (3차 소독)



1 차량 소독 실시



1 차량 소독 실시

- 4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차량 내부 소독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대인소독



소독 기록부 작성

- 6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장 출문

-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2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 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



1 일회용 방역물품 밀봉·폐기



2 휴대용 분무기 사용 소독



사료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사료차량 외부 세척



세척·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차량 내부 소독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분무 소독



대인소독기 소독



2 분노차량

분노운반 차량 소독 미실시 차량 처벌 규정



⊗ 분노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운행전 확인 사항

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 GPS 장착



|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 시간 등 통보

농장으로 출발

- 1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1차 소독)
- 2 “거점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 발급(2차 소독)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 실시(3차 소독)



1 차량 소독 실시



1 차량 소독 실시

- 4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1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1 휴대용 소독약으로 소독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6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장 출문

-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2 차량 운행중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분뇨차량에 의한 AI 바이러스 농장 및 축사 오염



AI 오염 유기물 농장 유입



관리자에 묻어 축사 유입



AI 발생

분뇨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분뇨차량 외부 세척



세척·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차량 내부 소독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대인소독기 통과



소독 기록 작성



3 어리장 차량

운행전 확인 사항

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 GPS 장착



|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 시간 등 통보

농장으로 출발

- 1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1차 소독)
- 2 “거점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 발급(2차 소독)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 실시(3차 소독)



차량 소독 실시



차량 소독 실시

- 4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휴대용 소독약으로 소독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6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장 출문

-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2 차량의 적재함에서 깃털, 분변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생축 운반 시 분변 등의 낙하 방지를 위해 가림시설 설치

어리장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의 유기물 제거 후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어리장차량 외부 세척



세척·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②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은 간이소독기 등 사용하여 소독 실시



| 차량 내부 소독



| 차량 내부 소독

③ 어리장 세척 · 소독요령 설명



| 어리장 탑재 상태



| 어리장 세척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 분무 소독



| 대인소독기 소독



4 왕겨 차량

운행전 확인 사항

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GPS 장착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 시간 등 통보

왕겨 공급·관리 요령

- ① 왕겨 포대 재활용 금지
- ② 왕겨 저장고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③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는 1회 운영 후 세차 및 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농장으로 출발

- 1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1차 소독)
- 2 “거점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 발급(2차 소독)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 실시(3차 소독)



차량, 장비, 주사가 등도 바이러스 전파 원인
| 차량 소독 실시



차량 내부 소독 관리
차량은 소독 및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한 고무발판 사용
| 차량 내부/발판 소독

- 4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축산농가 출입시
출입전 소독과 깨끗한 의복 및 신발 착용
|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차량 내부 소독 관리
차량 내부 소독은 충분히 실시
| 휴대용 소독약으로 소독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 6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장 출문

-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2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 장비를 통해 소독 실시



| 일회용 방역물품 밀봉·폐기



| 휴대용 분무기 사용 소독



왕겨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밭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왕겨차량 외부 세척



세척·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차량 내부 소독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분무 소독



대인소독기 소독



5 알 운반 차량

운행전 확인 사항

1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작동여부 확인



| GPS 장착



| GPS 작동 확인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 처벌규정

-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차량내 방역물품 점검

-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 상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등

3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 시간 등 통보

4 일회용 난좌 사용을 권장, 그러지 못할 경우 깨끗이 세척·소독한 난좌 사용



| 일회용 난좌 사용



| 일회용 난좌는 청결하게 보관

5 1일 1회 이상 차량 내부의 알 운반 기구를 세척 → 소독 → 건조 실시



알 운반 기구 세척·소독



알 운반 기구 세척·소독

농장으로 출발

- 1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기록(1차 소독)
- 2 “거점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 발급(2차 소독)

농장 도착

- 1 농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문 시 방문지 관리인(농장주 등)의 허락 후 출입
- 2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종사자와 접촉하지 않음
-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 실시(3차 소독)



차량 소독 실시



차량 소독 실시

- 4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한 후 차량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



하차 시 방역복 및 장화 착용



휴대용 소독약으로 소독



차량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5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



대인소독기 통과



소독 기록 작성

6 농장 방문시 농장에서 질병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장 출문

-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 2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차량외부 소독, 차량내부는 개인용 소독기 사용



일회용 방역물품 밀봉·폐기



휴대용 분무기 사용 소독

알 운반 차량 세척·소독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 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후 주변에 떨어진 흙이나 유기물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수거하여 처리



알 운반 차량 외부 세척



세척·소독 후 흙, 유기물 제거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차량 내부 소독



차량 내부/발판 소독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 소독 또는 출입자 소독기에서 소독



분무 소독



대인소독기 소독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시설별 AI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시설별 AI 표준행동요령

Standard behavioral know-how



1. 사료공장	1
2. 도축장	4
3. 부화장	9
4.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	12
5. 왕겨생산업체(RPC)	15
6. 계란집하장	16



1 사료공장

- 1 사료공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2 사료공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체교육 실시(분기별)
- 3 사료공장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매일)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미작동)시 출입금지 조치 및 관할 시 · 군에 통보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규정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해당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4 공장을 출입하는 사료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의 '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에 따라 관리





〈 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

단 계	소독관리 요령	
공장 입차	차량	공장 입문시 고압스팀(열탕)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 실시
공장 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 점검
	개인	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
농장 도착	차량 개인	① 농장 출입 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
농장 출문	차량 개인	①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실시
준수 사항 (복장 등)	기타	①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새 방역용품을 지급 받음 ② 농장 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음 ③ 긴급상황 발생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하며,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에 부득이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음

* 단, 입고차량은 농장에 입출입이 없으므로 상기 농장도착/농장출문 절차에는 제외 됨

〈 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



Ⅰ 공장출입소독



Ⅰ 차량소독



Ⅰ 차량 2차소독



Ⅰ 차량 2차소독



Ⅰ 개인방역덧신



Ⅰ 개인방역덧신



Ⅰ 차량내부 소독



Ⅰ 차량내부 소독



Ⅰ 공장내부 소독



Ⅰ 공장내부 소독



Ⅰ 공장내부 소독



Ⅰ 공장내부 소독



2 도축장

- 1 도축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2 도축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체교육 실시
- 3 도축장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미작동)시 출입금지 조치 및 관할 시·군에 통보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규정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해당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가금 운반차량 관리

-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 허용
-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 기록 확인
- 검사관(검사원 포함)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하고, 가금류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 계류 중인 가금류의 폐사율을 점검하여 의심증상이 있을 시 도축을 중지하고 관할 시·도에 정밀검사 요청
- 하차 즉시 차량을 세척·소독(바닥·하체·바퀴 등 차량 전체)하되, 검역본부 권장 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가금류 운반차량 세척·소독 실시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 실시
-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소독 또는 출입자소독기에서 소독
- ⑤ 소독 실시 후 분뇨차량 운전자는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 기록·관리

5 일반 출입차량 관리

-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
-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소독
-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특히, 손·신발 소독)



| 어리 차량 소독



| 차량 내부 소독



6 계류장·도축시설 주변소독

- 작업 전·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 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 가금류 운반차량과 어리장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되 차량과 어리장에 오염된 유기물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며, 운전자 및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도 반드시 실시

7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에 따라 관리



| 도축시설 주변 소독



| 어리장 소독



| 계류장 소독



| 도압장 내부 소독

〈 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

단 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 · 도축장 입차	차량	도축장 입문시 고압스팀(열탕)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
	사람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발판 소독조에 신발을 2~3초간 소독
업체 · 도축장 출차	차량	①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어리장을 모두 분리하여 고압세척,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분변 등 오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분무 소독 실시 ② 출고차량은 세차실 입구에 정차한 후 소독기로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하고 어리장내 소독·세척상태 확인 ③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 점검
	사람	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
농장 · 도착	차량 · 사람	①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
농장 · 출발	차량 · 사람	①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실시
준수 · 사항 (복장 등)	기타	①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즉시 교환 ②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음 ③ AI 발생지역 방역대내(위험지역·경계지역) 도축장 가축 출하시, 운전자는 가축방역관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



8 오리도축장

- 다수업체의 임도축을 하는 도압장의 경우 화물차에 상차하는 어리장이 타 업체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
- 오리 운반차량의 농장 중복방문 금지
 - * 농장을 중복하여 방문할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짐
- 오리운반차량은 오리농장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닭 등 오리 이외의 가금 이동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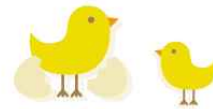


3 부화장

1 부화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2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 통제

- 모든 출입자는 방문기록 유지
(방문일시, 방문 목적, 방문전 경유지, 방문후 행선지, 연락처 등 명기)
-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 유지
-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울타리 상태 점검
- 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 방충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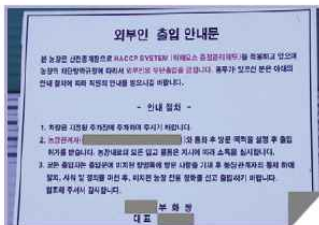
출입구 통제



차량 외부 소독



출입 통제



외부인 출입 안내문



외부인 방문 및 소독 기록



차량 내부 소독



3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

- 부화장 내부 전용신발과 의복을 착용하여 외부로부터의 교차오염 방지
- 차량 및 발판 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 마다 교환하고 소독조 내 오물 수시 제거
-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외부 세척 소독 철저
-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설치
- 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 종사자 외출 및 귀가시 손발세척
- 일회용 난좌 사용 권장
- 발육실, 발육기, 발생실, 발생기, 초생추 작업실, 부화실의 복도와 통로의 소독은 정해진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함.
- 발생실 주변에 쌓이는 병아리 털은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제거하고 소독 실시



| 손소독



| 전용신발 교체



| 위생복 착용



| 환 복



| 종란소독



| 종란실 내부 소독

4 종란관리

- 종란 운송차량이 하역장소에 도착하면 종란실 근무자가 종란을 종란실로 모두 옮길 때까지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하차 금지
- 난좌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고, 부득이 재활용 난좌를 사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며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
- 종오리 농장에서 종란을 수거할 경우 산란율이 저하된 농장의 종란은 수거하지 말 것
- 부화기 입란 전,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종란은 입란하지 않도록 하여 부화기 오염 방지



1 종란 훈증소독



1 종란실 내부 소독 및 청결상태 유지

5 병아리 분양 관리

- 일회용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농장에서 수거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 전에 철저히 소독·건조 하여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할 것
 - *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음
- 운반 트럭에 대하여 운반 전 후로 소독 실시
- 부화장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하루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6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 준수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피부 접촉 금지
- 포르말린제제는 사람·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



4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

- 1 업체종사자에 대해 발생국가 여행금지 권고,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홍보 및 교육
- 2 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홍보
-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및 소독준수사항 이행
- 4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시 방역조치사항 이행 및 출입기록부 기록 철저
- 5 축산차량등록제 이행(GPS 장착 및 운영) 철저
- 6 운영자는 농가출입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관리
- 7 정부 및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 8 가축분뇨 비료업체를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축분뇨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에 따라 관리



1 입구 차량 소독



1 운전자 대인 소독



1 출입기록부 작성



1 공장내부 소독

〈 가축분뇨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

단 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 입차	차량	공장 입문시 고압스팀(열탕)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 실시
업체 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 점검
	개인	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
농장 도착	차량 · 개인	①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
농장 출발	차량 · 개인	①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실시
준수 사항 (복장 등)	기타	①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담당자로부터 즉시 재 지급 받음 ②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 말것 ③ 발생지역 방역대에서 분뇨이동시, 운전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

* 가축분뇨차량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참고]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내 가축분뇨처리요령

1. 적용대상 :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 운영, 경계지역내 미 운영 지역

2. 세부처리요령

| 기본원칙 | 전용운반차량을 지정하여 타 지역 운행 금지, 이동 중 가금류 사육농가 우회(동일 동선유지), 경계지역 밖 출입차량은 3차례 이상 소독

| 사전준비 | 시장·군수는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내 가축분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처리계획을 검토하여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후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 처리 |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감독관을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 ① 해당 농가에서 시·군에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 요청
- ② 시·군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공동처리장에 작업 일자 및 처리물량 등 통보
- ③ 공동처리장은 전용차량을 지정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 세차 및 소독 실시, 소독필증 부착
- ④ 감독관은 분뇨운반 전용차량에 동승하여 공동처리장부터 농장까지 이동하고,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 상차 확인
- ⑤ 운반차량은 분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우고, 감독관은 반출농장부터 공동처리장까지 동승
- ⑥ 감독관은 공동처리장에 분뇨 하차 후,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 등 적정처리 확인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장별, 공동처리장별 가축분뇨 운반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치

- 전용차량 운행일지, 공동처리장 가축분뇨 처리대장 등 작성 및 비치하고,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관리

5 왕겨생산업체(RPC)

- 1 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홍보
- 2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따른 소독 준수사항 이행
- 3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시 방역조치사항 이행 및 출입기록부 기록 철저
- 4 축산차량등록제 이행(GPS 장착 및 운영) 철저
- 5 운영자는 농가출입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관리
- 6 정부 및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왕겨 공급 요령

- 왕겨 포대(툰백 등)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1회 운영 후 세차 및 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등 관리강화



입구 차량 소독



운전자 대인 소독



공장내부 소독



공장내부 소독

왕겨 운반차량(운반자)의 오염에 의한 전파사례(전북 소재 가금농장, '14.1~2월)



오염 농가를 방문한 왕겨차량이 방문한 농가 발생 → 발생농장 방문 왕겨운반이 다른농가의 내부까지 집입하여 전파 추정



6 계란집하장

- 1 업체종사자에 대해 발생국가 여행자제 권고,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홍보 및 교육
- 2 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인 및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 · 홍보
-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따른 소독 준수사항 이행
- 4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 · 장화 · 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시 방역조치사항 이행 및 출입기록부 기록 철저
- 5 축산차량등록제 이행(GPS 장착 및 운영) 철저
- 6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



1 입구 차량 소독



2 차량 내부 소독



3 대인 소독



4 대인 소독



시설별 SI 표준행동요령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붙임 2】

<철새·설치류 등 야생동물 차단방역요령>

1. 철새도래지 조치사항

- 1.1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철새의 월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한다.
- 시장·군수는 출입통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출입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인이 근무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철새가 놀라지 않게 하고 강둑 등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소독한다. 시장·군수는 방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평야지대에는 소독을 지양하되 가금류 농가가 주위에 있을 경우 농가 주위에는 소독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을 최대한 출입통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소독이 완료된 탐방로를 따라 걷고 철새의 사체, 분변 등 AI 오염 우려 물질과 신발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차량으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철새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 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한다.
 - 도보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 소독한다.
 - 되도록 1회용 비닐장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한 비닐장화는 현장을 벗어나기 전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도록 한다.
 - AI 감염이 의심되는 죽은 철새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1588-9060 또는 1588-4060를 이용하여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2. 야생철새 고병원성 AI 발생 시

2.1 (방역대 설정) 시장·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철새 사체 등 시료 수거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한다.

- 방역대(10km) 내에 있는 가금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 ‘13.10.7)”에 따른 방역을 실시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되도록 통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을 해야 한다.
 - 지자체는 각 축산농가에서 인체 소독이 가능한 휴대용 소형분무기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축산관련차량 등이 출입시에는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외관을 소독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여 신발매트를 포함하여 차 내부도 소독한다.
- 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농가의 소유 논·밭 등 경작지는 갈아엎어 철새 분변으로부터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2.2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축산농가는 언제든지 AI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사람 또는 차량의 축산농장 출입을 최대한 통제한다.
- 축산농가는 불가피하게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 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2.3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 축산농가는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 축산농가는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받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3.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조치사항

3.1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의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에 대한 방역조치에 준한다.

4. 철새 등 야생동물 접촉 유의사항

4.1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이상 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한다.

* 신고기관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4.2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4.3. AI 발생지역 및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는 중단한다.

5.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5.1 AI 오염 지역이나 오염의심 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1회용 비닐장화 등을 착용하고 오염 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5.2 사육하는 조류의 배설물이나 깔짚은 따로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6.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방지 조치

-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사료·사육자재·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을 방지한다.
- 쥐, 족제비류,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 계분벨트, 팬 공간, 담장 아래, 개울거리, 전기시설 등을 통한 야생동물이 출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한다.
- 급수용 물 등은 음용에 적합한 것, 소독한 것을 이용하고, 야생조류와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물은 가금에 급여하지 않는다.

7. 농가 준수사항

-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을 금지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여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 사육시설내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 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철저
- 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 농장의 구서작업 요령

1. 농장주위에 서식하는 쥐 때문에 유발되는 피해

1.1 직접적으로는 사료를 축내는 양이 상당하고 시설물 훼손과 누전에 의한 화재, 각종 병원체 전파 등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인 존재

1.2 사료의 손실

- 쥐는 자기 몸무게의 10~20%를 먹어 치우는 대식가로, 쥐 1,000마리의 사료 소비량은 하루에 40kg 정도이며, 연간 사료 손실량은 10톤이 넘는 양

1.3 질병 전파

- 쥐는 주로 밤에 활동하면서 분변, 오줌, 털, 타액, 혈액을 통해 병원체를 퍼뜨리며 바이러스, 세균, 콕시듐 등 대부분의 병원체를 옮긴다.
- 농장에서 쥐를 통제하지 않고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1.4 시설물 훼손

- 축사 화재 원인의 80% 이상은 전기시설로 인한 것이며, 쥐 등이 전선을 갉아 손상시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함

2. 쥐의 번식능력

2.1 쥐는 야행성으로 은밀히 서식하고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농장 내 정기적인 구서작업을 통해 개체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2.2 쥐는 1~3년간 생존하며 1년에 4~6복 출산하는데 복당 6~12마리를 생산하며, 3~4개월에 성성숙이 이루어져 암수 한 쌍이 연간 460마리까지 생산가능 함

2.3 농장에 주로 서식하는 쥐는 시궁쥐와 곰쥐이며, 낮에 가끔 보이는 정도이면 최대 1,000마리까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1> 국내에 서식하는 쥐의 특성

구분	시궁쥐, 곰쥐	생쥐	등줄쥐
임신기간	21~23일	18~21일	21~23일
산자수	6~12마리	4~12마리	4~9마리
출산횟수	3~6회/1년	5~6회	4~5회
생체중	200~400g	20~40g	35~55g

<표 2> 쥐의 서식 밀도 추정방법

관찰빈도	추정 마리수
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0~400마리
밤에 가끔 보임	100~500마리
낮에 가끔 보이며 밤에 자주 보임	400~1,000마리
낮에도 자주 보임	5,000마리 이상

3. 효과적인 구서작업

3.1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주위의 쓰레기 더미, 수풀 등 위생환경을 정비하고 축사의 틈새를 시멘트, 철망, 금속판 등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막아 줌

3.2 살서제의 활용

- 급성 살서제는 하수구, 도축장 같이 쥐약을 장기간 놓을 수 없는 장소에 일시에 구서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사람이나 가축에 위험이 따르며 해당 약제에 극히 민감하게 기피하므로 구서율이 50% 이하로 나타남
- 만성 살서제는 내부 출혈로 인해 쥐가 서서히 죽게 되며, 쥐가 살서제를 독극물로 인지하지 못하므로 섭식한 쥐나 동료 쥐들이 계속적으로 살서제를 섭취해 구서율이 90% 이상으로 높음
- 가루용법으로 사용시 : 뿌려만 두면 되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굳이 독먹이를 음식물로서 섭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료와 같은 먹물 거리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서를 수행할 수 있다. 쥐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면 콧수염과 경계모, 발바닥에 묻은 오물을 혀로 핥아서 몸을 청결히 하므로 체표에 묻은 쥐약을 먹게 된다.
- 독먹이 용법으로 사용시 : 가루 적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쥐약을 놓기 전에 섞을 먹이를 3~4일간 밀밥으로 놓아 미끼로 사용할 먹이에 미리 익숙해지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먹이에 약이 잘 묻지 않을 경우 식물성 기름 10ml 정도를 함께 섞으면 잘 묻는다.

3.3 미끼통의 활용

- 쥐가 잘 다니는 이동로나 쥐구멍 주위에 구서제를 뿌려 놓기만 해도 되지만 특히 옥외의 경우 미끼통안에 살서제를 놓으면 농장의 먼지나 습기로부터 신선도가 유지되고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소실되지 않는다.

3.4 정기적인 관리

-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구서작업을 하여 대량의 구서가 이루어진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한다.
- 농장내 서식하는 쥐를 퇴치하더라도 외부에서 쥐가 지속적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붙임 3】

<개방형 농장방역 요령>

- AI 발생시부터 종식시까지 실외방목 제한
- 철새도래기간에 야생조류 침입방지를 위해 그물망 설치
-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내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철저
- 정기적인 구서작업 실시
- 산란계장 바닥에 까는 왕겨, 벧집의 관리강화
-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을 금지

【붙임 4】

<기후별 농가방역 요령>

1. 겨울철 소독요령

1.1 겨울철 저온에서 소독실시

- 날씨가 추워 분사된 소독수가 얼어 소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을 때 소독효과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기구 및 소독조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축사 입구에 반드시 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미지근하게 데워서 사용한다.
- 축사통로는 주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 겨울철에는 아주 엄격한 출입통제와 더욱 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함

1.2 겨울철 소독기구 및 소독수(조) 관리

- 소독기구는 동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후 남아 있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호스,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 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한다.
- 정문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시설적 보완이 가능한 곳에서는 열선 등 보완장치를 하여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관리한다.
- 만약, 열선 등 보완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정문소독조가 얼었을 경우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하고 실내 보관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바퀴 등 외부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입구 소독조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옮겨 사용하되 미지근하게 물을 데워서 소독약을 희석하여 사용한다.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효농도 유지를 위해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보아서 수시 교체하며 일단 희석한 소독약은 남기지 말고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1.3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 효과 유지

- 일반적으로 추운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정문소독조 등은 열선 등 보온장치를 하여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4 겨울철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소독수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결 방지제

- 소독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체독성이나 환경독성이 없는 동결방지제는 국내외적으로 개발된 것이 없으므로, 소독제의 동결방지는 열선 등의 보온장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2. 우천시 소독요령

2.1 기상여건별 소독관리

- 비가 오기 전
 - 소독약품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생석회는 물기에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소독약의 효력 작용시간(10~30분), 희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가 오기 이전에 소독을 마칠 것
- 비가 올 때
 - 소독약이 빗물에 씻겨 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주위에 유실 방지턱과 웅덩이(집수조)를 만들어 유출을 사전 차단할 것
 - 우천시에는 축사내부를 중점적으로 소독할 것
- 비가 그친 후
 - 비가 개이면 축사안팎과 분뇨처리장 주변 소독을 실시할 것
 - 분뇨처리장내의 발효균이 사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차량소독조 및 신발소독관 등은 세척, 건조시켜 소독약을 투입할 것
- 축사의 지붕과 벽의 개폐식 환기, 채광장치를 열고, 가축을 축사 밖으로 이동하여 햇빛을 쬌도록 할 것
- 하수구, 배수구와 침수된 곳은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할 것
- 습기가 찬 분말소독약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말릴 것

2.2 소독약 사용

○ 사용방법

- 소독약(생석회 포함) 살포시 사용설명서에 따른 용법, 용량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할 것. 특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고압으로 살포하는 소독, 방제차량의 경우 희석배수 및 살포용량에 주의할 것
- 소독약 사용시 불의의 피해방지와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소독약은 사용시마다 조제해서 사용하고, 금속성기구(철, 아연 등)를 부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제 용기 등을 깨끗하게 물로 씻은 후 사용할 것
- 소독약품 중에는 서로 혼합을 피하여야 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동일한 소독대상물질에 여러 종류의 소독제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환경오염 방지

- 살포된 소독약이 하천, 상수원 등에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
- 가축분뇨 및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유입될 경우 소독약제 성분에 따라 발효, 정화처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토양내 소독약 잔류로 인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과다한 양을 사용하지 말 것

- 약제성분에 따라 살포 후 중화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환경관리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 조취를 취하
거나 잔류된 토사를 걷어 매립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중독방지 등 안전관리
 - 생석회 등 분말로 살포하는 소독약은 살포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소독약의 살포 및 분무중에는 반드시 비닐 또는 고무옷,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소독약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비강, 기관지
등)로 흡입되지 않도록 할 것
 - 만일 소독약제가 피부에 닿거나 소독작업이 끝난 뒤에는 손, 발,
얼굴 등을 물이나 비눗물로 충분히 씻을 것

【붙임 5】

<가축분뇨·알·어리장 차량 방역 소독관리 요령>

가축분뇨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단 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입차	차량	공장 입문시 고압스팀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업체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를 점검한다.
	개인	1)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농장도착	차량 / 개인	1)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를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출발	차량 / 개인	1)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 2)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복장등)	기타	1)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재 지급 받는다. 2)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는다. 3) 긴급상황 발생시(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하며, 예찰지역 및 야생조수류예찰지역에 부득이 하게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 가축분뇨차량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알·어리장 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단 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도 축장 입차	차량	집하장·도축장 입문시 고압스팀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사람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발판 소독조에 신발을 2~3초간 소독한다.
업체·도 축장 출차	차량	1) 어리장 차량의 경우 플라스틱 개별 모듈을 모두 분리하여 고압 세척하거나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분변 등 오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분무 소독을 실시한다. 2) 출고차량은 세차실 입구에 정차한 후 소독기로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물이 맺힐 정도로 소독하고 어리장내 소독·세척상태를 확인한다. 3)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를 점검한다.
	사람	1)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농장도착	차량/ 사람	1)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를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출발	차량/ 사람	1) 농장 출문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 2) 농장 출문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복장등)	기타	1)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시 즉시 교환한다. 2)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는다. 3) 긴급상황 발생시(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하며, 예찰지역 및 야생조수류예찰지역에 부득이 하게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어리장 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플라스틱 모듈 예시)

	
도축장 입차시 소독(차량)	개인소독(신발소독)
	
어리장차 모듈 탑재 상태	어리장 플라스틱 모듈(세척 후)

※ 어리장 차량 소독절차 예시(플라스틱 모듈 예시)

< 부록 IV.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각종 보고 서식 (예시) >

1. 기관별 일일보고 서식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시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 '00.0.00.(월) 00:00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 >

1. 신고 및 발생 현황 : 00개 시·군·구 00개소 발생

① 총괄

신 고 건 수			검 사 결 과				발생 건수
전일누계	금일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계	

② 금일 신고현황 : 00 건

○

③ 검사내역

○ 양성(누계) : 건

-

○ 음성 : 건

-

○ 검사 중

-

2. 주요 조치사항

< 살처분 현황 >

구 분	대상물량(A)	살처분 실적		잔여물량 (A-B)
		금일	누계(B)	
00 지역				
계				

①

○

3. 향후 조치사항

①

○

[닭고기 등 축산물 일일가격·수급동향]

(단위 : 원/kg, 원/10개)

품 목	전년동월 ('00.0월)	전 월 ('00.0월)	AI발생일 (0월0일)	3일 전	2일 전	1일 전	전일대 비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 기타 서식 >

[발생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천수)

구 분		발생 건수	살 처 분 현 황		주요 조치현황
			농가수	마리수	
00도	00구				살처분 완료(0.00일) 및 이동통제중
	00시				보호지역 자체 살처분 조치(0.00)
	00군				보호지역 살처분 완료(0.00)
00개 시·군·구		00	00	000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세부현황]

구분	보호·예찰지역유지	보호→예찰지역전환	이동제한 해제
00 지역		00군((0.00일)	
00 지역	00군((0.00일)		00군((0.00일)
계	0개소	0개소	0개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사항 일일보고

보고일자 : 년 월 일(00:00)

1. 신고 및 검사 결과

신고(조사) 건수			검사결과				발생 건수
전일누계	금일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누계	

☐ 세부내용

일련 번호	신고 (의뢰) 일자	구분	축주명 (농가주소)	축종	중간검사결과		최종검사결과		향후 검사계획	비고
					일자	결과	일자	결과		
										검사중

2. 정밀검사 진행 상황

☐ 정밀검사 검사 현황

○ 총 000농가, 00000시료 - 검사완료(000), 검사중(00)

구 분		시료접수(농가수)			검사결과(농가수)			검사중
		전일누계	금일	총계	전일누계	금일	총계	
의사환축								
병성감정								
역학관련								
방역해제								
재입식전분변검사								
오리 확대검사								
중오리								
육용 오리검사	향체							
	향원							
합계								

3. 주요 조치사항

☐

4. 역학조사 주요사항

○

5. 향후 추진계획

☐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00시도)

1. AI 발생 상황 (발생 시도)

☐ 우리도 상황 : 00시군에서 00월00일 발생

(6.16일 18:00 현재)

구 분	신 고	양 성	음 성	검사중	비 고
누 계					•
금일	-	-	-	-	

※ 살처분 및 폐기현황 : (가금) 00호 000,000수, (계란) 00개소 00,000천개

☐ 금일 신고·검사 :

○

2. 주요 방역조치사항

☐ 농가 예찰실적

가금사육 농가수	구분	예찰실시 농가수					예찰결과 이상 농가수
		계	닭	오리	메추리	기타	
	금일						
	누계						

※ 예찰결과 이상농가 세부내역 :

☐

○

3. 기 타

○

4. 향후 추진계획

○

[시·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 (00시군)

(년 월 일)

1. 가금 사육농가 신고상황(신규 : 건, 누계 : 건) (발생 시군)

신고 일시	축주명	소재지	축종	사육수수	폐사수수	비고(신고접수처)

2. 주요 방역조치사항

☐ 농가 예찰실적

가금사육 농가수	구분	예찰실시 농가수					예찰결과 이상 농가수
		계	닭	오리	메추리	기타	
	금일						
	누계						

※ 예찰결과 이상농가 세부내역 :

☐ AI발생농장 역학관련농장 예찰실적

축종	성명	주소	사육 수수	산란율			폐사수수 (폐사율)			소독 여부	담당자
				평소	오전	오후	평소	오전	오후		

3. 기타조치 및 특이사항

○

※ 소독약품 공급내역, 문자메시지 등 지도 홍보실적 등 AI 발생과 관련하여 평소와 다르게 추진한 방역실적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4. 향후 추진계획

○

[시·도/시·군 (기타 서식)]

☐ 살처분 : 00개시군 0000호, 0000수 (승인 0000, 자체 0000)

지역	구분		닭		오리		기타조류		합계		계란 등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 지역	발생농장	살처분대상										
		실적										
	관리지역	살처분대상										
		실적										
	△△지역	살처분대상										
		실적										
	소계	살처분대상										
		실적										

☐ 감수성 동물 이동통제내역

지역	구분		닭		오리		기타조류		돼지		합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 지역	발생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소계											

☐ 이동통제 초소 설치운영

구분	계		보호지역		예찰지역		특이사항
	개소	인력	개소	인력	개소	인력	
○○지역							
○○지역							

☐ 살처분 인력 투입현황

구분	계		공무원		축산단체지원		계육업체지원		고용인력		기타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지역												
○○지역												

☐ 방역장비 투입현황

구분	계		소독차량		이동소독기		매몰장비		청소차량		기타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지역												
○○지역												

[illegible]

☐ 예찰지역 가금(계란) 출하 승인서

제 호										예찰지역 가금(계란) 출하 승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벼슬·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정밀검사결과(오리)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출하예정 도 축 장 (구 매 자)					운송차량 번 호								
	축 종					품종					운송인 성 명 (구매자)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오리) 결과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간 인-----절 취 선-----간 인-----

제 호										예찰지역 가금(계란) 출하 승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벼슬·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정밀검사결과(오리)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출하예정 도 축 장 (구 매 자)					운송차량 번 호								
	축 종					품종					운송인 성 명 (구매자)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오리) 결과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2.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검사 보고 서식 (예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검사 현황

(00년 00월 20일 00:00 현재)

☐ 신고·검사현황

(단위 : 건)

신고건수			검사결과				비고
전일까지	금일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계	
00(△)	00(-)	00(△)	00(△)	00(-)	00(-)	00(△)	

* (△)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체 건수에 미포함

☐ 가축별 신고 및 검사결과

축종	신고			검사결과				비고
	전일까지	금일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계	
닭								
오리								
계								

☐ 신고 세부농장

구분	신고 일시	축주명	주소(최초발생농장간 거리)	축종	사육 두수	폐사 두수	검사 결과	검사 일자	비고
1									
2									
3									
4									

< 부 록 V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1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5항 및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195호, 20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4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2. "환축"이라 함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라 함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협의회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라 함은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고양이·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

1. 닭·칠면조·메추리·오리(생물학적 분류체계에 따라 오리과에 해당되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돼지·개·고양이
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4. 1호 내지 3호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의 생산물
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다음 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및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닭·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8조(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등) ① 의심축을 발견한 소유자 등 또는 진단한 수의사는 법 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 의심축을 발견한 자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한 경우는 가축위생방역본부장이 동일한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정밀 검사 의뢰

7. 제13조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대상 동물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가축방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지사의 조치) 제8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

4.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5. 지방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6.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적용대상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제10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8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관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오염농가, 분뇨차량, 사료차량 등 다양한 오염 제공원에 대한 시료를 확보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제1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발생지의 축산업 형태·지형적 여건·야생조류 서식실태·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협의회에 부의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
4.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의사환축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후의 의사환축에 대하여는 최종 병성감정 결과를 통보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는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

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4조(병성감정 등) ①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검사장비·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5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3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 및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 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정부 방역대책·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등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발생지 관할 시·도지사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

3.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

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 방역을 실시

4.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18조에 따른다.

④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⑤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7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 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3.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 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후에 차량의 내·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 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4.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5. 살처분 대상가축, 보호지역·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돼지·개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6. 1호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독 등 조치) ①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
 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 ②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야생조류 등 조류 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30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배합사료·조사료·깎짚·왕겨 등 :소각 또는 매몰(단,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제20조(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3. 가금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출하 허용. 다만, 이동제한전 생산된 보호지역 닭의 종란은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허용
6. 사료·깎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산란계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
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협의회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도 지사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리는 반출·입 금지. 다만, 출하 7일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 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허용하며,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2.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다만, 오리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 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근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출하를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장의 경우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하고, 이동제한 해제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병아리 반출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을 허용하고, 닭의 식용란은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을 허용

6. 깔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사료의 경우 소독실시후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적용대상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내 공동처리장(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

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후 이동허용.

9. 사료공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④ 예찰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외의 적용대상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축사의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의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5.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 ⑤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간,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닭은 7일간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14일간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방안을 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①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25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6조(종식후속대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 마리수 산란율 등의 상황을 주 2회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 : 바이러스 검사, 오리 :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가축의 재사육) 제17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된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포함한다) : 경계지역에 대

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21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2. 오염지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3.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제28조(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 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3-165호, 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 규정에 따른다.
 -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 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감염시켰을때 정맥내 병원성 지수가 1.2보다 높거나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 나. 분리된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HA 유전자의 유전자분절부위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기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경우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시·군별로 1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 2.2 개인별로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 3.1 의심축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투입요청자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 3.3 방역본부장은 의사환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사환축 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 4.1.1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사환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첨 1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설치·운영한다.
-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 및 축사 내·외부 바닥에 소석회(생석회)를 살포한다.
-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1.6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축의 사육현황조사, 21일 이내 출입한 모든 차량(가축, 사료, 분변 등) 및 사람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4.2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1차 소독이 종료된 후 철수한다.
-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투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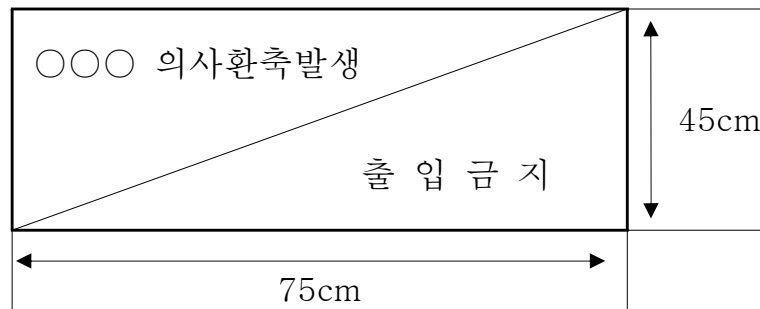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 6.1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취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별첨 1)

출입금지 표지판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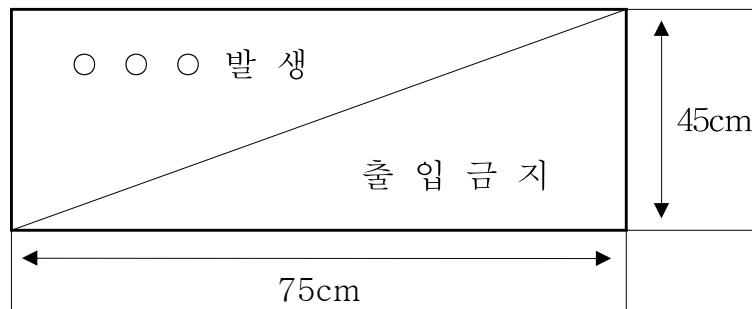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11조관련)

집 행 용 구	수 량
분변채취용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10개
프라스틱 백(90x90cm), 아이스팩 포함	6개
프라스틱 백(50x25cm)	6개
고무장화	1짝
고무장갑	1짝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6짝
보호용 위생 작업복	2벌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보호용 안경(고글)	
1회용 주사기 10ml	20개
1회용 주사기 5ml, 1회용 주사기 3ml (10개)	20개
멸균 면봉, 50 ml 코니칼 튜브 (10개)	20개

[별표 4]

출입금지 표지판(제16조관련)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18조제4항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 또는 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 기간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부화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화장에 대한 종란, 부화중인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

- 1) 동 기간 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하고,
- 2) 오리 병아리는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당해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보관 중인 종란이 있는 경우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종란은 폐기하지 않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병아리 출하를 제한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쳐 병아리 반출 가능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출입구 및 이동통로를 달리하는 시설에 부화·보관 중이며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체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닭의 경우 임상검사 필요시 혈청·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측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운반차량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

화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방문 또는 출입한 다른 농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닭) 또는 혈청검사(오리 등)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유통 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성된 알(식용란)의 수집·보관 장소 등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은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나. 식용란수집판매장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 유통가능

6. 발생농장의 환측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 운반·식용란운반·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토록 조치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출하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출하 금지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
-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이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가금
- 가축방역관이 도축·출하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폐기

-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 처분·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7]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AI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제28조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이어야 하며, 시험가축의 마리수는 축사당 최소 5수 이상으로 한다.
- 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입식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식시험의 방법

- 가.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 2회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3주 경과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1. 정밀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는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ml 이상)이며, 분변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 채혈한 동일개체의 분변 swab 20개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혈청송부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농장명 :
 - 축주명 :
 - 농장주소 :
 - 연락처 :
 - 계군명 :
 - 가금종류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가금류(메추리 등)
 - 채혈년월일
 - 채혈시 주령
 -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함수

1. 위험도 함수 = F(지형적여건, 역학적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기타 고려사항)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강, 호수, 저수지 등)의 존재 여부와 철새 및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

1. 신고접수일 : _____	접수시간 : 오전 _____ 오후 _____
2. 신고자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 _____ (직업) _____	
3. 발생농가의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_____ (휴대전화) : _____	
4. 신고사항	
축종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사육수수 :	주령 :
발생수수 :	폐사수수(최근 5일간) :
산란율 감소여부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	

시 료 채 취 내 역 서

- ☐ 농장(도축장)명 :
- ☐ 농장(도축장)소재지 : (전화 :)
- 대표자 :
- ☐ 축 종 :
- ☐ 사육규모 : 사육동수 :
- 사육사별(동별) 수수 및 품종
- ☐ 시료채취 내용 :
- 시료채취자 소속 및 성명
- 채취일시

사육사(동)	사육수수 및 주령	시료채취 내역			비고
		혈액	분변(swab)	폐사체	

- ☐ 기타 특이사항(병력 및 임상증상, 채취용도)

< 부록 VI. 방역기관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39-012	044 FAX	201-2377~8/ 868-0469	전국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번지(안양6동 480)	430-757	031 FAX	463-4587~ 4590 463-4585	전국

□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 지역
			DDD	번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번지	427-070	02 FAX	570-3435 -3436 570-3442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810	051 FAX	331-5012 338-8266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1	706-090	053 FAX	760-1301 1303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251	032 FAX	440-5641 440-8863	인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25-1 (본촌동 379-1)	502-240	062 FAX	613-7652 7653 613-7649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042 FAX	870-3490 -3495 870-349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689-813	052 FAX	229-5243 229-5249	울산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 지역
				DDD	번 호	
축 경산 위 기생 연 도구 소 (5)	본 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441-460	031 FAX	8008-6270 8008-6247	수원·안양·부천· 안산·과천·시흥· 군포·의왕·김포· 성남·오산·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 이천시 진리동 371-4	467-060	031 FAX	8008-6366 8008-6365 636-3676	하남·여주·광주· 이천·양평
	남부지소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274-10	456-820	031 FAX	8008-6359 8008-6355 651-1614	용인·평택·안성
	제2가축 위생 연구소 본소	경기 양주시 고읍동 340-1	482-020	031 FAX	8008-6437 8008-6432 820-0204	의정부·동두천· 양주·연천·고양· 파주
	제2가축 위생 연구소 북부지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7-1	472-840	031 FAX	8008-6477 8008-6471 593-4012	남양주·구리· 가평·포천
가 강축 위 원생 시 도협 소 (5)	본 소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200-822	033 FAX	248-6625 248-6617	춘천·철원·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장현동 74-7	210-180	033 FAX	610-8705 610-8722	강릉·동해·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반곡동 1098-2	220-170	033 FAX	737-6781 737-6790	원주·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153	232-802	033 FAX	339-8855 339-8866	영월·평창·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3 FAX	634-8532 634-8543	인제·고성· 속초·양양
축 충산 청위 북생 도연 구 소 (4)	본 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420	363-931	043 FAX	220-6261~4 220-6271~4 220-6269	청주·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3 FAX	220-6321~4 220-6319	충주·음성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80	043 FAX	220-6330~1 220-6339	보은·옥천·영동· 단양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390-090	043 FAX	220-6350~1 220-6359	제천·단양
가 충축 청위 남생 도연 구 소 (6)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350-821	041 FAX	635-7021 635-7967	보령·청양·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 FAX	635-7131 548-2954	천안·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32-5	314-861	041 FAX	635-7101 881-0129	공주·계룡·금산· 연기·계룡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3	041 FAX	635-7162 357-5850	예산·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8	041 FAX	635-7191 635-7975	논산·부여·서천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635-7221 675-4348	서산·태안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 지역
				DDD	번 호	
축전산 라위 북생 도연 구 소 (4)	본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4	560-220	063 FAX	290-5361 290-5381 290-5411	전주·완주·무주· 진안·장수
	남부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3 FAX	290-6571 290-6598	남원·임실·순창
	서부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0-814	063 FAX	290-6544 290-6568	정읍·고창·부안
	북부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3 FAX	290-6512 290-6538	군산·익산·김제
축전산 라위 남생 도사 업 소 (3)	축산위생 사업소 본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198-10	527 -822	061 FAX	430-2142 434-9130	나주·화순·장흥· 강진·해남·영암· 완도·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 -080	061 FAX	759-4110 751-1045	순천·여수·광양· 보성·구례·곡성· 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523-1	513 -822	061 FAX	350-2110 350-2190	목포·담양·무안· 함평·영광·장성· 신안
가 축 상위 북생 도시 협 소 (4)	본 소	대구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2 326-0013	구미·칠곡·군위· 성주·고령·경산· 영천·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2	760-803	054 FAX	850-3285 -3289	안동·영주·의성· 청송·영양·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054 FAX	748-6624 748-6685	경주·포항·영덕· 울진·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답동 476-1	742-320	054 FAX	530-4122 532-4966	김천·상주·문경· 예천
축 경산 상진 남흥 도연 구 소 (4)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985	055 FAX	254-3022 254-3019	진주·사천· 산청·하동· 함양·함안
	중부지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17-8	621-833	055 FAX	254-3212 254-3229	창원·마산·진해· 김해·양산·밀양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07-1	678-801	055 FAX	254-3312 254-3329	합천·거창·의령· 창녕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통영대로 107	650-817	055 FAX	254-3352 254-3369	통영·거제· 고성·남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초전읍 와흘리 782	695-963	064 FAX	710-8524 710-8529	제주